

2021 장사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제1편 장사정책 총괄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3
1. 일반현황	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4
3. 주요 추진계획	5
제2장 장사정책 추진	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	10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11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12
6. 비용의 보조	14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15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1장 매장	33
1. 매장의 정의	33
2. 매장의 시기	33
3. 매장의 장소	34
4. 매장의 방법	34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35
6. 매장신고	36
제2장 분묘	38
1. 분묘의 정의	38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38
3. 분묘의 설치기간	40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41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42
제3장 공설묘지	44
1. 묘지일반	44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45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45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46
제4장 사설묘지	47
1. 사설묘지 일반	47
2. 개인묘지	48
3. 가족묘지	52
4. 종중·문중묘지	55
5. 법인묘지	58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65
제5장 개장	66
1. 개장의 정의 및 방법	66
2. 개장신고	66
3. 개장허가	69
4. 유형별 개장절차	70

제3편**화장과 화장시설**

제1장 화장	77
1. 화장(시설)의 정의	77
2. 화장의 시기	77
3. 화장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78
4. 화장의 방법	78
5. 화장신고	79

제2장 공설 화장시설	82
1.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82
2.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기준	82
3. 공설 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83
제3장 사설 화장시설	84
1.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	84
2. 사설 화장시설 설치기준	86
3.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87
4.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87
5. 사설 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88
6. 사설 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90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1장 봉안	93
1. 봉안(시설)의 정의	93
제2장 공설 봉안시설	94
1. 공설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94
2. 공설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94
3. 공설 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95
제3장 사설 봉안시설	96
1. 사설 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96
2.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	96
3.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	100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105
5. 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05
6. 사설 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06
7. 사설 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109
8. 사설 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110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	113
1. 자연장의 정의	113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114
제2장 공설자연장지	115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115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116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117
제3장 사설자연장지	118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	118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119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125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132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32
6.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33
7.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136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137

제6편 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141
1. 장례식장의 정의	141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141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42
제2장 사설장례식장	143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143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143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	146
4. 가격표의 게시·등록	152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153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155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164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165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69
10.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70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173
1. 묘적부 및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173
2.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173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74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174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76
제3장 행정처분 등	177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77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78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79
4. 과징금 처분	184
5. 과태료 부과	186
6. 벌칙	192
7. 이행강제금	193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제1장 개요	197
1. 목적	197
2. 법적 근거	197
3. 적용대상	197
4. 용어 정의	198
제2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향 및 절차	199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201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 절차	201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절차	202
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203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205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	206
제5장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 등 장례지원	208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221
2. e하늘 포털시스템	223
3. 화장관리시스템	234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238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244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263
7. 민원지원시스템	266
8.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269
9. 장사업무 통계(화장 및 장사시설)	275
10. 기타	284

제10편 행정사항

제1장 행정사항	291
1. 감사 및 지도감독	291
2. 장사업무 보완사항	291
3. 장사업무 통계보고	295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303
1. 목적	303
2. 추진 방침	303
3. 2021년 국고보조사업	304
4.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309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320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329
1. 목적	329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안내	329

제11편 부록

제1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333
1. 목적	333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333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334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335
제2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336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336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338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340
4. 타당성 검토 강화	344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연고자)	제1조(목적)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 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제7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3조(시신의약품처리기준)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중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 사항)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 기준)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22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제8조(묘적부)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제10조(묘지·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변경 신고)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중중 ·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 목장림 조성)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등)		제15조(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p> <p>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p>	<p>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p>	<p>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p>
<p>제5장 장례식장영업</p> <p>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p> <p>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p> <p>제29조의2(장례지도사)</p> <p>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p> <p>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6(청문)</p> <p>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p> <p>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p>	<p>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p>	<p>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 신고)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p> <p>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p> <p>제21조(행정처분 등)</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장례식장영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청문)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2조(장례식장영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5조(과징금 처분)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 절차)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제7장 벌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정 1961.12. 5. 법률 제 799호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 2069호 일부개정 1973. 3.13. 법률 제 2605호 일부개정 1981. 3.16. 법률 제 3389호 전부개정 2000. 1.12. 법률 제 6158호 일부개정 2002. 1.19. 법률 제 6615호 전부개정 2007. 5.25. 법률 제 8489호 일부개정 2008. 3.28. 법률 제 9030호 일부개정 2011. 8. 4. 법률 제11008호 일부개정 2012. 2. 1. 법률 제11253호 일부개정 2015. 1.28. 법률 제13108호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60호 일부개정 2017.12.19. 법률 제15269호 일부개정 2019. 4.23. 법률 제16376호 일부개정 2020. 4. 7. 법률 제17215호	제 정 1969. 4.17. 대통령령 제 3886호 일부개정 1977. 9.14. 대통령령 제 8693호 일부개정 1981. 4.25. 대통령령 제10299호 전부개정 2001. 1.27. 대통령령 제17109호 일부개정 2002. 4.20. 대통령령 제17586호 전부개정 2008. 5.26. 대통령령 제20791호 일부개정 2012. 7.31. 대통령령 제23996호 일부개정 2013. 6.17. 대통령령 제24613호 일부개정 2015. 7.20. 대통령령 제26418호 일부개정 2016. 1.28. 대통령령 제26937호 일부개정 2016. 8.29. 대통령령 제27468호 일부개정 2018. 6.19. 대통령령 제28981호 일부개정 2019. 6. 4. 대통령령 제2980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	제 정 1962. 5.12. 보건사회부령 제 79호 일부개정 1962. 7.24. 보건사회부령 제 86호 일부개정 1963. 7.31. 보건사회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1966. 8.29. 보건사회부령 제181호 전부개정 1969. 7.15. 보건사회부령 제298호 전부개정 1969.12. 6. 보건사회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1981. 6. 1. 보건사회부령 제674호 전부개정 2001. 3.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일부개정 2002. 5. 6.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전부개정 2008. 5.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 일부개정 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5. 7.20. 보건복지부령 제334호 일부개정 2016. 1.29.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16. 8.30. 보건복지부령 제433호 일부개정 2018. 6.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2019.12.27. 보건복지부령 제692호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p. i ~ v)	<신 설>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p.3)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 명) : 7,171('17년 실적치)↔10,511('25)↔15,237('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사망자 수(천 명) : 299('18년 실적치)↔323('20)↔372('25)↔422('30)↔479('35)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 명) : 7,817('19년 실적치)↔10,511('25)↔15,237('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사망자 수(천 명) : 295('19년 실적치)↔372('25)↔422('30)↔479('35)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p.4)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8년 기준 86.8%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9년 기준 88.4%
장사시설 현황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12개소로 공설 142개소, 사설 270개소(법인, 종교단체) ◦ '18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29개소로 공설 59개소, 사설 70개소(법인, 종교단체) ◦ '18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502개소로 공설 337개소, 사설 165개소(법인)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23개소로 공설 143개소, 사설 280개소(법인, 종교단체) ◦ '19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44개소로 공설 63개소, 사설 81개소(법인, 종교단체) ◦ '19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74개소로 공설 307개소, 사설 167개소(법인) ◦ '19년 말 기준 전국의 장례식장은 총 1,107개소로 공설 72개소, 사설 1,035개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p.24~30)	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30.]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6.19.] [대통령령 제28981호, 2018.6.19., 일부개정] 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6.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 2018.6.20., 일부개정] 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6.12.] [법률 제15901호, 2018.12.11., 일부개정]	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30.]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시행('15. 12. 29.) ◦ '16. 1. 1. 시행 ◦ 8개월 후 시행('16. 8. 30.) <삭 제> <삭 제> 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일부개정]

구 분	2020년	2021년
	<p>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4.23.] [법률 제16376호, 2019.4.23., 일부개정]</p> <p>(2) 주요내용</p> <p>터.~퍼. 〈신 설〉</p>	<p>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p>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시행('19. 4. 23.) • 3개월 후 시행('19. 7. 24.) • 6개월 후 시행('19. 10. 24.) <p>처.~커.</p> <p>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p> <p>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p> <p>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5호, 2020. 4. 7., 일부개정]</p> <p>(1) 개정이유</p>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시행('20. 4. 7.) • 3개월 후 시행('20. 7. 8.)
<p>분묘의 점유면적 등 (p.38~39)</p>	<p>□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p>□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p> <p>〈신 설〉</p>	<p>□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 <p>□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p> <p>[시설물의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상석, 석물 사진
<p>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p.49, 52, 55, 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p.47)과 동일
<p>개장신고 (p.67)</p>	<p>다. 신고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에게 신고 	<p>다. 신고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구 분	2020년	2021년
<p>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p.95)</p>	<p>가. 공설봉안묘(탑·담) <신 설></p>	<p>가. 공설봉안묘(탑·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봉안탑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p>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p.101~103)</p>	<p>나. 사설봉안묘(탑, 담)</p> <p>(1)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p>다. 사설봉안탑(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p>나. 사설봉안묘</p> <p>(1)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법 제18조) • 봉안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시행령 제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은 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p>다. 사설봉안탑(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봉안묘 1기당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은 제외

구 분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 이하여야 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함</u>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 이하여야 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함(법 제18조)</u> • 봉안탑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시행령 제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은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표지 설치 사례 (p.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표지 사진 	<변 경>
시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134)	<p>나. 가격표의 게시·등록 (1)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p>나. 가격표의 게시·등록 (1)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p.155~159)	<p>가. 교육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영업자 및 영업 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p>라. 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등록 <p><신 설></p> <p>바. 교육주관</p> <p>(1)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 제출 양식]</p> <p>사. 교육실시</p> <p>(1) 교육실시기관 [교육실시기관 목록]</p>	<p>가. 교육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영업자(예정자 포함) 및 종사자의 준법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p>라. 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등록 - 시·군·구 담당자는 관할 장례식장에 매년 교육 대상자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반드시 안내 <p>바. 교육주관</p> <p>(1) 교육계획 수립</p> <p><변 경></p> <p>사. 교육실시</p> <p>(1) 교육실시기관</p> <p><변 경></p>

구 분	2020년	2021년
<p>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p.165~167)</p>	<p>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 운영</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구축·운영으로 재해·재난 사망자의 효율적 지원체계 확보 · 국가적 재해·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품위)을 유지한 장례지원 <p>(5) 지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절차 · (대상 장례식장 추천)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기존 지정장례식장의 경우 시·군·구가 행정처분 등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추천 · 신규 지정의 경우 시·군·구가 지정요건에 적합한 장례식장 추천 <p>※ 시·군·구별 2개소 이상 추천 가능,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가지정 음압입원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우선 추천</p> <p>(6)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및 장소 : 3월~11월까지 지자체 강당 등 활용 • 교육시간 및 내용 : 4시간, 재해·재난·감염사태 사망자 발생 시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의견을 반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특화교육 <p>※ 재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교과목(심폐소생술, 장사법규·행정, 지정장례식장 네트워크 구축체계 및 유형별 장례지원 절차, 시신위생 및 시설 안전관리, 재난심리상담 및 장례예절(직업윤리 포함) 등)으로 구성</p>	<p>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 운영</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구축·운영으로 재해·재난·감염병 등 사망자의 효율적인 장례 지원체계 확보 · 국가적 재해·재난·감염병 등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품위)을 유지한 장례지원 <p>(5) 지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절차 · (대상 장례식장 추천)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군·구가 행정처분 등 특이사항이 없고 지정요건에 적합한 장례식장 추천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우선 추천</p> <p>(6)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및 장소 : 당해 연도, 지자체 강당 등 활용 • 교육시간 및 내용 : 4시간, 재해·재난·감염병 등 사망자 발생 시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의견을 반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특화교육 <p>※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교육과목(심폐소생술, 장사법규·행정, 지정장례식장 네트워크 구축체계 및 유형별 장례지원 절차, 시신위생 및 시설안전관리, 재난 심리상담 및 장례예절(직업윤리 포함) 등)으로 구성</p>
<p>과징금 처분 (p.184~186)</p>	<p>〈신 설〉</p>	<p>가.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

구 분	2020년	2021년
	<p>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등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p>라. 과징금의 징수절차</p>	<p>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 포함)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포함)을 부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등은 법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 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시장등은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 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의 인적 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p>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 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등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p>마. 과징금의 징수절차</p>
<p>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p.1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p>벌칙 (p.192~193)</p>	<p>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u>〈신 설〉</u></p>	<p>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p>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p.1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구 분	2020년	2021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p.203)	가. 변사자의 경우 :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 〈신 설〉	가. 변사자의 경우 :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 ※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이란 시신 발생(발견) 장소를 말함												
장사정보 시스템의 구성도 (p.222)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스템</th> <th>주요기능</th> </tr> </thead> <tbody> <tr> <td>e하늘 포털시스템</td> <td>〈신 설〉</td> </tr> <tr> <td>e하늘 모바일</td> <td>〈신 설〉</td> </tr> </tbody> </table>	시스템	주요기능	e하늘 포털시스템	〈신 설〉	e하늘 모바일	〈신 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스템</th> <th>주요기능</th> </tr> </thead> <tbody> <tr> <td>e하늘 포털시스템</td> <td>•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td> </tr> <tr> <td>e하늘 모바일</td> <td>•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td> </tr> </tbody> </table>	시스템	주요기능	e하늘 포털시스템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e하늘 모바일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주요기능													
e하늘 포털시스템	〈신 설〉													
e하늘 모바일	〈신 설〉													
시스템	주요기능													
e하늘 포털시스템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e하늘 모바일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e하늘 포털 시스템 (p.223~227)	가. 시스템 구성 [체계도] 다.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예시화면] 라.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인터넷 화장예약 신청 절차(일반)] 〈신 설〉	가. 시스템 구성 〈변 경〉 다.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변 경〉 라.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변 경〉 [인터넷 화장예약 신청 절차(개장유골/죽은 태아)]												
실명인증 불가자의 화장예약 절차 참고사항 (p.229~230)	나. 개장유골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화장시간을 가급적 오후 시간으로 배정 아.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자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1) 대상 - 사고 또는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로 화장 시설 대표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개장유골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화장시간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배정 아.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자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1) 대상 - 감염병, 사고 또는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로 화장시설 대표가 인정하는 경우												
화장관리시스템 (p.235~236)	다. 화장시설 준비사항 (2) 시설기준 및 예약차수, 예약일정 관리 • 운영차수 기준에 따른 일별 예약 가능한 차수의 시간대 설정 〈신 설〉 마. 화장접수 관리 절차 (2) 자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시설 ※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다. 화장시설 준비사항 (2) 시설기준 및 예약차수, 예약일정 관리 • 운영차수 기준에 따른 일별 예약 가능한 차수의 시간대 설정 ※ 일반시신은 5일, 개장유골/죽은 태아는 15일 전 예약 가능 ※ 개장유골/죽은 태아의 경우, 대구, 울산, 공주, 청주, 영주, 문경, 김해, 제주 화장 시설은 1개월 전 예약 가능 마. 화장접수 관리 절차 (2) 자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시설 ※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구 분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세종, 광주, 울산, 용인, 구미, 정읍, 청주 • 화장접수 시 주의사항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세종, 광주, 울산, 용인, 구미, 정읍, 청주, 원주, 남해 • 화장접수 시 주의사항 - 일반시신의 경우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를 반드시 확인
장사행정 지원시스템 (p.246)	<p>다.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p> <p>(1)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접속환경 및 인증기능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업무망) 	<p>다.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p> <p>(1)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접속환경 및 인증기능 개선</p> <p><삭 제></p>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p.270~274)	<p>다.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및 공고 게시</p> <p>(1)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p> <p>[예시화면]</p> <p>② 인적사항 및 사망자정보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준일자(연월일), 국적구분(내국인/외국인/미상), (이하 생략) <p>※ 처리기준일자(연월일) : 처리기준일자는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기준일자로서 화장, 매장 등 장례처리 일자를 입력함</p> <p>(2)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조회/수정</p> <p>[예시화면]</p> <p>②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검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조건(자료관리일자, 사망자명, 사망일자, 공고번호, 공고기간) <p><신 설></p> <p><신 설></p>	<p>다.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및 공고 게시</p> <p>(1)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p> <p><변 경></p> <p>② 인적사항 및 사망자정보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화장일자, 국적구분(내국인/외국인/미상), (이하 생략) <p>※ 매·화장일자 :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기준 일자로서 화장, 매장 등 장례처리 일자를 입력함</p> <p>(2)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조회/수정</p> <p><변 경></p> <p>②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검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조건(매·화장일자, 사망자명, 사망일자, 공고번호, 공고기간) <p>(4)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조회</p> <p>(5)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현황</p>
장사업무 통계 (p.275~283)	<p>다. 장사업무 담당자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연도(2019년)를 지정하여 해당 시·군·구의 현재 장사업무 담당자정보(부서, 성명, 연락처 등) 등록 <p>[예시화면]</p> <p>라. 화장시설 실적자료(화장실태 조사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시설 실적 등록(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절차 - 화장대상(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별 2019 화장실태 조사표 Upload 엑셀자료를 참조하여 실적자료 등록(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p>다. 장사업무 담당자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연도(2020년)를 지정하여 해당 시·군·구의 현재(2021년 등록시점) 장사업무 담당자 정보(부서, 성명, 연락처 등) 등록 <p><변 경></p> <p>라. 화장시설 실적자료(화장실태 조사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시설 실적 등록(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절차 - 화장대상(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별 2020 화장실태 조사표 Upload 엑셀자료를 참조하여 실적자료 등록(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구 분	2020년	2021년																		
	<p>용인, 서남권, 창원상복, 구미, 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주의사항 <p>마. 장사시설 실태조사 자료(장사시설 실태조사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실태조사 등록 절차 [예시화면] • 시설별 메뉴의 특이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시설 구분</th> <th style="width: 45%;">메뉴명</th> <th style="width: 40%;">특이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봉안 시설</td> <td>공설봉안당 관리 운영 작성</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 설〉</td> </tr> <tr> <td>법인봉안당 관리 운영 작성</td> </tr> <tr> <td>종교단체봉안당 관리운영 작성</td> </tr> <tr> <td>기타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td> </tr> </tbody> </table>	시설 구분	메뉴명	특이사항	봉안 시설	공설봉안당 관리 운영 작성	〈신 설〉	법인봉안당 관리 운영 작성	종교단체봉안당 관리운영 작성	기타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p>용인, 서남권, 창원상복, 구미, 합안, 원주, 남해 등)</p> <p>〈변 경〉</p> <p>마. 장사시설 실태조사 자료(장사시설 실태조사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실태조사 등록 절차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메뉴의 특이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시설 구분</th> <th style="width: 45%;">메뉴명</th> <th style="width: 40%;">특이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봉안 시설</td> <td>공설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td> </tr> <tr> <td>법인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td> </tr> <tr> <td>종교단체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td> </tr> <tr> <td>개인, 가족, 종종·문중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td> </tr> </tbody> </table>	시설 구분	메뉴명	특이사항	봉안 시설	공설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	법인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종교단체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	개인, 가족, 종종·문중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시설 구분	메뉴명	특이사항																		
봉안 시설	공설봉안당 관리 운영 작성	〈신 설〉																		
	법인봉안당 관리 운영 작성																			
	종교단체봉안당 관리운영 작성																			
	기타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시설 구분	메뉴명	특이사항																		
봉안 시설	공설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																		
	법인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종교단체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																			
	개인, 가족, 종종·문중봉안시설 관리 운영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주의사항 - 봉안시설의 경우, 공설, 법인, 종교단체 봉안 당만 별도 시트에 작성하고 나머지 봉안시설은 1개의 시트에 설치주체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 시트별 주의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시트 번호</th> <th style="width: 20%;">시트명</th> <th style="width: 70%;">주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시신 화장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교란에 대형 화장로 수 기재 </td> </tr> </tbody> </table>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1	화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시신 화장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교란에 대형 화장로 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주의사항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트별 주의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시트 번호</th> <th style="width: 20%;">시트명</th> <th style="width: 70%;">주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 시신 화장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나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교란에 관련 사항 기재 </td> </tr> </tbody> </table>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1	화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 시신 화장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나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교란에 관련 사항 기재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1	화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시신 화장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교란에 대형 화장로 수 기재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1	화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 시신 화장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나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교란에 관련 사항 기재 																		

구 분	2020년		2021년	
	7	<p>공설 봉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봉안당 현황만 기재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기준을 기재함. 단, 눈높이단 기준 	7	<p>공설 봉안시설</p>
	8	<p>법인 봉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봉안당 현황만 기재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기준을 기재함. 단, 눈높이단 기준 	8	<p>법인 봉안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기준 기재 (눈높이단 기준)
	9	<p>종교단체 봉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만 기재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기준을 기재함. 단, 눈높이단 기준 	9	<p>종교단체 봉안시설</p>
	10	<p>기타 봉안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봉안당, 법인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외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대상 시군구별, 이용구분별, 봉안시설 구분별로 집계만 작성 이용구분(운영주체) : 공설, 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 가족, 개인으로 구분 봉안시설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으로 구분 비고 : 공설, 법인, 종교단체 시설인 경우 시설명 기재 	10	<p>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삭 제〉 운영주체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중 선택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삭 제〉
	11	<p>공설 자연장지 (수목장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 “자연장” 또는 “수목장림” 중 한 가지 유형 기입 ※ 자연장은 인위적으로 만든 수목, 화초, 잔디 주변에 조성하는 장지이고,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11	<p>공설 자연장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중 선택 ※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구 분	2020년	2021년
	<p>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장치</p> <p>12 사설 자연장지 (수목장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자연장” 또는 “수목장림” 중 한 가지 유형 기입 ※ 자연장은 인위적으로 만든 수목, 화초, 잔디 주변에 조성하는 장치이고,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장치 · 조성주체 : 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 가족, 개인 등 구분 	<p>12 사설 자연장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중 선택 ※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조성주체 : 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 가족, 개인 중 선택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p.286)	2. 장사행정지원정보 6) <u>집단묘지</u> 설치관리	2. 장사행정지원정보 6) <u>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u> 설치관리
행정사항 (p.291)	<신 설> 1. 장사업무 보완사항 2. 장사업무 통계보고	1. 감사 및 지도감독 2. 장사업무 보완사항 3. 장사업무 통계보고
장사업무 통계보고 (p.295~302)	가.~차. <신 설>	<변 경> 카. 공설장사시설 운영개선 내용 및 주요예산내역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p.329~330)	1. 목적 · 법적 근거 : 장사법 제4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안내 · 대상 : 노인 및 중장년 여론 주도층(회당 최소 인원 80명) * '20년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계획 안내(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업운영부-57(2020.02.05.))	1. 목적 <삭 제>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안내 · 대상 : 전국민 <삭 제>

구 분	2020년	2021년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교육 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교육 안내</th> </tr> </thead> <tbody> <tr> <td>현장교육</td> <td>· 미 개최 지자체 67곳 · 화장률 저조 지자체 40곳</td> </tr> <tr> <td>교육영상 제공</td> <td>· 현장교육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td> </tr> </tbody> </table>	교육 구분	교육 안내	현장교육	· 미 개최 지자체 67곳 · 화장률 저조 지자체 40곳	교육영상 제공	· 현장교육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교육 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교육 안내</th> </tr> </thead> <tbody> <tr> <td>현장교육 (대면 교육)</td> <td>· 예산에 따라 교육 인원 및 횟수 조정</td> </tr> <tr> <td>교육영상 제공 (비대면 교육)</td> <td>· 대면 교육 개최가 어려운 지자체에 제공(신청 필수)</td> </tr> </tbody> </table>	교육 구분	교육 안내	현장교육 (대면 교육)	· 예산에 따라 교육 인원 및 횟수 조정	교육영상 제공 (비대면 교육)	· 대면 교육 개최가 어려운 지자체에 제공(신청 필수)
교육 구분	교육 안내													
현장교육	· 미 개최 지자체 67곳 · 화장률 저조 지자체 40곳													
교육영상 제공	· 현장교육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교육 구분	교육 안내													
현장교육 (대면 교육)	· 예산에 따라 교육 인원 및 횟수 조정													
교육영상 제공 (비대면 교육)	· 대면 교육 개최가 어려운 지자체에 제공(신청 필수)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http://www.kfcpi.or.kr) · 법적 근거 : 장사법 제33조의4제1항제5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업운영부(전화 02-6930-9321, 팩스 02-6930-9393) ◦ 교육계획(일정) 수립 및 신청 · '20. 2. 28.(금)까지 제출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 시·군·구 · 법적 근거 : 장사법 제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주관 : 장사지원센터 · 장사지원센터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수행 기능(장사법 제33조의4제1항제5호) ◦ 방법 : 시·군·구가 교육 인원, 장소를 지정하여 장사지원센터로 교육 요청 * 장사지원센터에서 대관료, 여행자 보험, 기념품, 교재, 중식 등 제공 * 생활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여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협조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석 불가 · 문의 : 장사지원센터 사업운영부(전화 02-6930-9322, 팩스 02-6930-9393) ◦ 교육계획(일정) 수립 및 신청 · '21. 2. 26.(금)까지 제출 요함 												

CHAPTER

제 1 편

장사정책 총괄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제2장 장사정책 추진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일반현황

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 명) : [7,817\('19년 실적치\)](#) ⇨ 10,511('25) ⇨ 15,237('3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3. 28.](#) 갱신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세)

남 : 80.3('20) ⇨ 81.5('25) ⇨ 82.6('30) ⇨ 83.6('35)

여 : 86.1('20) ⇨ 86.9('25) ⇨ 87.7('30) ⇨ 88.4('35)

※ 사망자 수(천 명) : [295\('19년 실적치\)](#) ⇨ 372('25) ⇨ 422('30) ⇨ 479('3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3. 28.](#) 갱신

나. 국민 의식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 변화에 영향

- 국가·사회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장사문화 및 제도의 변화
- 국토 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친환경적인 장법에 대한 관심
- 가족 구성의 양적·질적 변화와 개인화의 영향으로 묘지 조성·관리 한계
- 장사수요에 상응하여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다.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 선택 이유 : 성묘 가능, 집안의 전통, 화장 반감, 묘지 확보 등
- 화장 선택 이유 : 관리 용이, 위생적, 고인의 유언, 절차 간편, 묘지 미확보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9년 기준 88.4%**
 ※ '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75~'85년 4.2%↑ '85~'95년 5.4%↑ '95~'05년 30.6%↑)

라. 장사시설 현황

- '19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60개소(공설 59개소), 화장로 358로
- '19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23개소**로 공설 **143개소**, 사설 **280개소**(법인, 종교단체)
- '19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44개소**로 공설 **63개소**, 사설 **81개소**(법인, 종교단체)
- '19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74개소**로 공설 **307개소**, 사설 **167개소**(법인)
- '19년 말 기준 전국의 장례식장은 총 **1,107개소**로 공설 **72개소**, 사설 **1,035개소**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가.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법적 실효성 제고
- 현행 장사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의 제도 개선 추진

나.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개선

- 화장시설 설치촉진 및 현대화, 화장가능 시설·지역 확대 등 화장장려를 위하여 제도기반의 개선 및 정비
-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 사망자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 설치 관련정보의 관리 공유체계 구축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18~'22)에 대비하여 불법·무연분묘 정비 방안 개발

다.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국민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장사문화 개선 및 인식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사문화 인식 개선 홍보·교육
- 광고 및 관련 이벤트의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적 장사문화 홍보 및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3 주요 추진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 지자체 간 공동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간 장사업무 협력 체계 구축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 및 접근성 증대
- 노후 화장로를 신형 화장로로 교체하여 화장서비스 편의성 제고
-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 공설묘지 재개발

나.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화장시설의 관내·관외 요금 격차 해소
 - ※ 관내·관외 요금 격차는 원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 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서비스 증대
 - ※ 화장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이용 방안 모색

다. 장례서비스 개선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 제고를 위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실시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 실시

라.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 장례절차 및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 장사시설 신축 시 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 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통한 시설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호화·사치 장례 근절 및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 추진

제2장 장사정책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장사법 제4조제2항)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가.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사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 포함 노력

-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 99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 화장시설 설치

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4항)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가.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법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자체 지역수급계획 수립(법 제5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

-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 ※ 시·도지사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자체 지역수급계획 수립 절차

- ①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 시달
- ③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보건복지부)
 - 지자체에서 수립된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
 - ※ 관할 구역 내 읍·면·동 간 갈등은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관할 구역 내 시·군·구 간 갈등은 관할 시·도에서 담당하고, 시·도 간 갈등 및 타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함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각 시·도 또는 시·군·구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 ⑤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 확정
- ⑥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 ⑦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
 -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의 추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비용의 보조에 반영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법 제11조, 제28조)

가. 묘지의 일제 조사(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나. 무연분묘의 처리(법 제28조)

(1) 개장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장 절차 및 방법

(가) 공고(시행규칙 제19조)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함(이하 동일)
 - ※ 중앙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이하 동일)
 -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란,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말함(이하 동일)

(나) 무연분묘의 처리(시행령 제24조)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5년(2020. 1. 7. 시행)
-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 5년 (2020. 1. 7. 시행)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 인적사항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 시신의 발생상황 :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 연락처

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쪽방 거주자 등의 사망 시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처리를 거부·기피한다고 시장등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준해 처리(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p.195~217 참조))

행려환자 또는 복지시설 보호자의 사망 시 처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사목에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고자(행정기관)가 있는 행려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처리는 사망하기 전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처리는 사망하기 전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복지조치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함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법 제34조)

가.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 지정대상

-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나. 보존묘지등의 지정

(1)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

(가) 지정절차(시행령 제35조)

-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
-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

(나) 관보 게재 및 지정서 교부(시행령 제3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존묘지 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
-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 교부

(다) 지정기준(시행규칙 제23조)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2) 시·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도보존묘지등”)**(가) 지정절차(시행령 제36조)**

-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 묘지등의 지정을 신청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
- 시·도지사가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

(나) 공보 게재 및 지정서 교부(시행령 제36조)

- 시·도지사는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
- 시·도지사는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 지정서 교부

(다) 지정기준

- 시·도의 조례로 규정

다. 보존묘지등의 지정 시 특례

- 법 제18조 규정의 분묘의 점유면적 등의 제한 및 법 제19조 규정의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정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 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함

라. 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시행령 제37조)

(1) 지정 해제 및 범위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2) 지정서 반납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6 비용의 보조(법 제36조)

- 국가는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가.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62. 1. 1.] [법률 제799호, 1961. 12. 5., 제정]

(1) 주요내용

- 매장 또는 화장은 사망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함
-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경우)·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시신의 매장이나 화장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신현존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매장이나 화장할 하도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시·군은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나 시신의 운반업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설치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묘지·화장장등의 관리인은 매장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신고증을 수리하지 않으면 매장이나 화장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나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묘지, 화장장, 매장및화장취체규칙(1912, 조선총독부령 제123호)을 폐지함

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68. 12. 31.](#)] [법률 제2069호, 1968. 12. 3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의 제명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함
- 매장· 화장 및 개장의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함
- 시설묘지등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구역을 명문화함
-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규정을 개정함

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77. 11. 1.](#)] [법률 제2605호, [1973. 3.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묘지제도의 개선으로 국토의 활용면적을 확대하여 국토의 산업화를 기하고 묘지 및 분묘신고에 따르는 묘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를, 합장의 경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묘적부제도를 법제화하고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제에 의하여 연고자 없는 분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와 시설묘지·시설 화장장 및 시설납골당의 설치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벌금형의 벌칙을 강화함

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81. 5. 17.](#)] [법률 제3389호, [1981. 3. 16.](#), 일부개정]**(1) 개정이유**

납골묘지 제도를 도입하여 화장의 확대를 유도·촉구함과 동시에 묘지면적 및 묘지내의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설묘지등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매장은 땅에 묻는 경우만을 뜻하였으나 땅에 납골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납골묘지제를 신설함
-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함
-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묘지면적·시설물 크기 등의 기준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지사가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1)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보건사회부 ⇄ 보건복지부)
-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사.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3.](#)] [법률 제6158호, [2000. 1. 12.](#), 전부개정]**(1) 개정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불법묘지 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묘지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까지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
-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당해 묘지의 이전·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2. 4. 20.](#)] [법률 제6615호, [2002. 1. 19.](#), 일부개정]**(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사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개정

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본문 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개정

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전부개정]**(1) 개정이유**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연장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
-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
-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
- 법률의 한글화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 5. 26.](#)]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불복절차를 행정쟁송이 아닌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 불복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개정

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41호, 2011. 5. 30., 타법개정]

(1) 개정이유

「국가장법」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개정

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8호, 2011. 8.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장례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장례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장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는 민간단체에서 장례 관련 자격검정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남발 및 전문성·신뢰성 부족 등으로 양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장례지도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도입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 및 신고절차
-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3호, 2012. 2.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시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요보호 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공설화장시설 지역주민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종·문증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대상]	
법 률 명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대상자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13호, [2013. 6. 17.](#), 일부개정]**(1) 개정이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가족자연 장지에 한정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구 분	조성불가지역	조성가능지역(완화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일부개정]**(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
- 그 밖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즉시 시행('15. 1. 28.)
 -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제24조, 제29조)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제5조, 제13조)

- 1년 후 시행('16. 1. 29.)
 - ① 법인 장사시설 등에 가격표 반환에 관한 사항 표시의무 신설(제24조제2항)
 - ② 장사시설 폐지 시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시신·유골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 의무 부과(제26조제2항·제3항)
 - ③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가격표 게시·등록, 종사자 교육 의무 신설(제29조)
 - ④ 장사정보시스템 및 장사지원센터 구축근거 신설(제33조의2, 제33조의4)

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30.](#)]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목장립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립 및 중중·문중수목장립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 공설장사시설도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즉시 시행\('15. 12. 29.\)](#)

- ①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한 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제19조\)](#)
 - ② [\(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함](#)
- ['16. 1. 1. 시행](#)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는 수급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

● 8개월 후 시행('16. 8. 30.)

- ①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제13조제5항)
- ②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4조제5항·제6항)
- ③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 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 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제16조)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 ⑤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3) 부칙 주요내용

- **(의제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16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함
- (공설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설장례식장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함
-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일부개정]**(1) 개정이유**

장사시설 이용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한 과다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방지 목적

(2) 주요내용

- 즉시 시행('17. 12. 1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29조의4제2호)
- 6개월 후 시행('18. 6. 20.)
 -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제1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9조)
 - ②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31조, 제32조, 제42조)

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일부개정]**(1) 개정이유**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제35조제1항)

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1)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즉시 시행('19. 4. 23.)

- ①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 ②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함(제29조의4제4호)

● 3개월 후 시행('19. 7. 24.)

- ① 매장 및 개장의 신고, 개인묘지 설치 신고,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개인자연장지 등의 조성 신고, 사설묘지 등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장례식장영업 신고, 장례지도사 교육 기관 설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8조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3제2항 신설)
- ②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 ③ 시장 등이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장사시설의 안전 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함(제37조제1항)

● 6개월 후 시행('19. 10. 24.)

- ① 질병의 감염·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3호)
- ②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제29조의4제5호)

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 2020. 1. 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의 매장 또는 봉안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줄이고, 종전에는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분묘 형태를 변경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전에는 가족묘지, 종종·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
 -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영 제9조제1항)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 일제조사에 의한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영 제 24조제1항)
-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사항 완화
 -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서 제외(영 제12조제3호)
- 가족묘지의 변경 허가사항 완화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 삭제(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정비(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7.] [보건복지부령 제692호, 2019. 12. 27., 일부개정]**(1) 개정이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학습교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별표 3 제2호가목)
 -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의 개수를 각각 4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줄임
- 행정처분기준 완화[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에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함
 -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완화함

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35조제4항 및 제43조제6항)

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1) 개정이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29조의4제4호)

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5호, 2020. 4. 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례 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등은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즉시 시행('20. 4. 7.)

-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제35조제5항 신설)

● 3개월 후 시행('20. 7. 8.)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제29조의2제6항·제7항 신설)

② 다른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0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CHAPTER

제 2 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1장 매장

제2장 분묘

제3장 공설묘지

제4장 사설묘지

제5장 개장

제1장 매장

1 매장의 정의(법 제2조)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2 매장의 시기(법 제6조)

-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5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매장의 장소(법 제7조)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매장의 방법(법 제9조)

-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시행령 제7조)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질병의 감염·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음
-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
 -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시 시설기준
 - 시신약품처리실 :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 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구비
 - 약품보관실 : 환기시설 설치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약품처리로 인하여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시 준수사항
 -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신을 훼손하여서는 안 됨
 -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
 -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
-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관리·운영부의 기록·작성 및 보존·비치
 -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운영부를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비치
- 위반시 벌칙 등 (법 제40조,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매장신고(법 제8조)

-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수리가 필요한 신고)
 - ※ 사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사후신고제로 운영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매장신고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매장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사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서 작성 내용을 확인 - 매장 및 화장의 시기를 반드시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매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여부 확인 필요)	처리기관
↓		
결 재	매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매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매장신고인에게 매장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 위반시 벌칙 등 (법 제4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시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제2장 분묘

1 분묘의 정의(법 제2조)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봉분 또는 비석 등의 시설물이 있어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되거나 사실상 분묘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영향이 있을 경우, 분묘로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분묘의 점유면적 등(법 제18조·시행령 제23조)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이하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비석에만 적용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시설물의 형태]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3 분묘의 설치기간(법 제19조)

가. 적용대상 분묘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 제외)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음

나.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주기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기본적인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신청 횟수는 단축 불가

라.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법 제19조·시행규칙 제13조)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사법 일부개정으로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15. 12. 29, 법률 제13660호). 단, 분묘 설치기간은 묘지 사용 계약기간과는 별개이므로 묘지 사용 계약은 15년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가능함

가.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1) 연장신청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 신청기관

구 분	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장등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2)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3)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내용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등에게 통보

(4) 연장신청 사항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 기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경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

가. 적용대상 분묘

- 2001. 1.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나.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을 하여야 함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 통보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 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연고자가 아닌 설치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통보를 하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 후 개장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 봉안기간은 5년(2020. 1. 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공고를 하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 봉안기간은 5년(2020. 1. 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제3장 공설묘지

1 묘지일반(법 제2조, 법 제21조, 법 제40조)

가. 묘지의 정의

-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다.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1) 원칙

-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¹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개인묘지 등은 적용 제외)

(2) 예외(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라.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매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1조 별표 1)

-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하여야 함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매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골분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말함(이하 동일)
 - ① 사망자의 인적사항
 - 성명 및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내 체류지, 재외국민은 실제 거주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 ②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4장 사설묘지

1 사설묘지 일반(법 제14조·시행령 별표 2, 법 제26조)

가. 사설묘지의 종류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나. 사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분분**, **평분**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분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곡·차폐시설 등으로 묘지예정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등임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은 한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 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단, 20호는 일종의 기준이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님)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 묘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다. 시설묘지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묘지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에는 시신·유골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신·유골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시신·유골을 다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하여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
 - 화장한 유골은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공고 등 사후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2 개인묘지(법 제14조)(시설물 설치기준 시행령 제23조)

“개인묘지”라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가. 면적

- 30㎡ 이하
-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30㎡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의 경우도 동일
- 개인묘지 내 분묘의 점유면적은 30㎡ 이하로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나.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m²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다. 개인묘지의 설치기준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
- 그 외 사항은 [시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p.47\)](#)과 동일

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시행규칙 제5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1) 설치신고 : 사후(事後)신고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등에 신고
- 구비서류
 - ① 평면도
 - ②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③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 개인묘지 설치신고 처리 시에는 묘지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분묘의 설치기준과 점유면적,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
 - 개인묘지는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묘지 설치 가능지역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묘지를 방지하는 방법임
 - 타법령에 의한 전용허가(농지, 산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토록 민원인에게 안내
- 기존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 묘지 설치신고 의무
 - 기존의 묘지(분묘)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 소정의 설치면적 범위 내에서는 부부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묘지(분묘)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하여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점유면적 또한 부부합장 여부와 관계없이 30m²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 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 (신고)허가 후 분묘를 설치 하여야 함

(2) 설치변경신고 : 사후신고

- 설치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설치변경신고 사유 (시행령 제12조)
 -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2020. 1. 7. 시행)

[분묘의 형태]



- 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② 봉분의 윗부분은 평면으로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하
- ③ 봉분이 없는 형태로 지면과 같은 높이로 조성, 비석 역시 평면으로 설치

- 구비서류 : 변경도면 첨부

(3) 처리기간 : 7일

(4)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묘지, 사망자,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3 가족묘지(법 제14조)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로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 면적 : 100㎡ 이하

(1) 가족묘지 내 분묘의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나.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다. 가족묘지의 설치기준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설치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p.47\)](#)과 동일

라.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시행규칙 제6조)

(1) 설치허가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설치허가 신청
-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① 평면도
 - ②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③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2) 설치변경허가

- 설치변경허가 신청 사유 (시행령 제13조)
 - 가족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변경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족묘지 변경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변경허가사항 이행 확인 후 가족묘지 변경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4 종중·문중묘지(법 제14조)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함
-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가. 종중·문중묘지의 면적 등

(1) 면적 : 1,000㎡ 이하

(2) 종중·문중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3)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나.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기준

-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이하로 설치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p.47\)](#)과 동일

다. 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시행규칙 제6조)

(1) 설치허가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설치허가 신청
-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①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실측도
 - ③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④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2) 설치변경허가

- 설치변경허가 신청 사유 (시행령 제13조)
 - 종중·문중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설치변경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종중·문중묘지 변경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 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변경허가사항 이행 확인 후 종중·문중묘지 변경허가증 교부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5 법인묘지(법 제14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가. 법인묘지의 면적 등

- (1) 면적 : 10만㎡ 이상
- (2) 법인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3)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나.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함
-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시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p.47\)](#)과 동일

다.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시행규칙 제6조)

(1) 설치허가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설치허가 신청
-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법인묘지 설치허가신청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①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②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③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⑥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2) 설치변경허가

- 설치변경허가 신청 사유 (시행령 제13조)
 -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설치변경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법인묘지 변경허가신청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법인묘지 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변경허가사항 이행 확인 후 법인묘지 변경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라.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법 제14조)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매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 관리 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반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법인묘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1)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신고내용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등 총 비용을 조성된 묘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m²당 사용료에 분양된 전용면적을 곱하여 계산
- 관리비 : 묘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
 - 잔디 조성비, 별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라 함은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의 이용요금 및 잔디조성비, 별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항목별 시설 설치비용 등을 말함
 - 그 항목별 산출근거는 원가계산 및 물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공인된 기관에 의한 원가계산서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여 그 요금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2019. 12. 27. 시행)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법인묘지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재해에 대비하여 법인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 관리금 적립내용
 -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법인묘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법인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 법인묘지 안의 묘지·봉안시설 설치신고

- 해당 법인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구비서류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만 징수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가. 민원처리기간 : 10일(가족, 종중·문중묘지), 30일(법인묘지)

나.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묘지,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묘지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청사항 이행 통지	허가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묘지 설치(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허가신청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허 가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제5장 개장

1 개장의 정의 및 방법(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7조제3호)

가. 개장의 정의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나.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종전의 분묘가 있던 구덩이(광중, 壙中)는 파묻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개장신고(법 제8조)

가.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나.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반드시 연고자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 ※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용인시이면 용인시가 현존지가 되며, 이를 수원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가 개장지가 됨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묘지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신고
- 공설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장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라.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마. 처리기간 : 2일

바. 처리절차

구분	내용	주체
신고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제적등본 등)	처리기관
↓		
확인	개장신고 사항 확인	처리기관
↓		
검토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재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리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사. 위반시 벌칙 등 (법 제4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시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아. 불법묘지(분묘) 설치자·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 불법묘지(분묘) 설치자·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 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
-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종전의 위법사항 해소를 위하여 종전의 법령 위반사항을 고발 하거나 소급하여 묘지 설치신고 위반 또는 매장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3 개장허가(법 제27조)

가. 허가유형 : 사전허가제

나. 허가신청 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다.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라.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

마. 구비서류

- ① 기존 분묘의 사진
-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바. 처리기간 : 3일

사.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거나,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청서 작성	사망자 및 개장허가신청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개장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로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	처리기관
↓		
확 인	개장허가 신청사항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개장허가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개장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개장허가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4 유형별 개장절차

가.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2조)

- 사전신고 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4조)

(1)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 후 개장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 봉안기간은 5년(2020. 1. 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8조)

(1)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개장
 - 협의가 완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등이 개장 신고 후 개장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해당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인정
-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 경우, ②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별도 특약 없이 타인에게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여야 함(95다29086, 판결 등 다수 참조)
-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을 통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
 - ※ 단,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제한됨(법 제27조제3항)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시·도 및 시·군·구는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 개장공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란(분묘 개장공고 전용메뉴)을 만들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자에게 공고문 안 작성 지도 및 공고방법 안내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허가 신청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함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함
- 개장절차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봉안기간 등 당초 허가 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 개장허가증의 교부
 - 시장등은 허가신청 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단,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묘지 등의 설치 제한(제17조) 구역 위반 및 설치기준(제14조)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정 필요

라.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9조)

(1) 개정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공고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정 사유, 개정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3) 무연분묘의 처리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 개정 후 봉안의 기간은 5년이며,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CHAPTER

제 3 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1장 화장

제2장 공설화장시설

제3장 사설화장시설

제1장 화장

1 화장(시설)의 정의(법 제2조·시행령 제2조)

가. 화장(火葬)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장사방법
- 시신,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하지 아니함

나. 화장시설(火葬施設)

-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함
-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2 화장의 시기(법 제6조·시행령 제5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가.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화장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법 제7조·시행령 제6조)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할 수 있는 경우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화장의 방법(법 제9조·시행령 제7조)

가.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하며, 입관하지 아니한 시신도 화장 가능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화장신고 (법 제8조제2항)**가.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
※ 장사법상의 각종 신고는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나.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다.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라.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마. 처리기간 : 즉시

바.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 고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화장의 시기를 반드시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사. 위반시 벌칙 등 (법 제4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화장신고의 종류

(1) 시신의 화장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시장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읍·면·동장의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화장신고 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범죄의 원인이 있는 시신을 화장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임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아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할 수 없는 사유와 사망원인·사유 등에 대한 경찰 또는 이웃사람의 상세한 증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
- 읍·면·동장은 화장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보건소등에 이러한 사망의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작성협조 요구 등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여부 등을 행할 수 있음

추락사고 후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여부

- 변사자(자살, 범죄사 포함)의 화장시 변사체검시방해죄(형법 제163조)에 해당될 소지
- 변사자(변사 의심 시신)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하여야 하며 검시 필증 발급 이후에만 시신 처리 가능(염습 등 일체의 행위 금지)
- 변사자(변사 의심 시신)의 화장신고 시 경찰에 신고(원칙적으로 유족 신고사항)하고, 경찰은 검찰에 지휘 요청(사진촬영, 진술확보 등 조치)

(2)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
- 시장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자. 화장장려금 신청 안내

-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망신고를 받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함

제2장 공설 화장시설

1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화장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화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화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1조 별표 1)

- 화장로 시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화장로 시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공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화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장 사설 화장시설

1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법 제15조, 제26조)

가. 정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을 말함

나. 설치신고 : 사전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 화장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①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②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③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④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 신고절차
 - 설치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다. 변경신고 : 사전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 변경신고 사유
 -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화장로의 변경사항
-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변경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변경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라. 처리기간 : 30일

마.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화장시설,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희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희(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청사항 이행 통지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바.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사설화장시설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 사설화장시설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에는 유골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유골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등 사후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2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시행령 별표 3)

-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 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화장로 시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화장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5조)

가.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화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가.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화장시설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나. 화장 상황의 보고

-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연도별 화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다.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사설 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가.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신고내용
 - 사용료 : 사설 화장시설의 이용 요금
 - 관리비 : 사설 화장시설의 관리 비용
 -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가격표의 게시·등록

- 시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거래명세서의 발급

- 시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거래명세서에는 시설화장시설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019. 12. 27. 시행)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시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가. 사망자정보 등록

- 시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CHAPTER

제 4 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1장 봉안

제2장 공설봉안시설

제3장 사설봉안시설

제1장 봉안

1 봉안(시설)의 정의(법 제2조)

가. 봉안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장사방법

나. 봉안시설

-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①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②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③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④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2장 공설봉안시설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봉안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1조 별표 1, [법 제18조·시행령 제23조](#))

가. 공설봉안묘(탑·담)

- 사원·묘지· 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 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m² 이하로 함
- 봉안묘·봉안탑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시설물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m²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나. 공설봉안당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공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봉안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장 사설봉안시설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법 제15조)

가.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함

나. 사설봉안시설의 용도별 종류

- 봉안당 : 가족봉안당, 종중·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 봉안묘(탑·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종중·문중봉안묘, 종교단체봉안묘, 법인봉안묘

2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법 제15조, 제26조)

가. 설치신고

- (1) 유형 : 사전신고제 (수리가 필요한 신고)
- (2) 의무자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
- (3) 신고기관 : 관할 시장등
- (4) 변경신고 사항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 (5) 구비서류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가) 가족, 종·문중, 종교단체 봉안당

-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 종중·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 평면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마) 법인봉안묘(탑·담)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사설봉안당

- 처리기간 : 30일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봉안당(봉안시설),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치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치(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고사항 이행 통지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다. 시설봉안묘(탑, 담)

- 처리기간 : 10일(개인, 가족, 종중·문중), 30일(종교단체, 법인)
- 시설봉안당 처리절차 준용

라.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사설봉안시설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 사설봉안시설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에는 유골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유골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등 사후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시행령 제18조 별표 3)

가. 사설봉안당

(1) 공통사항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 하여야 함
-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2)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함
- 연면적은 100㎡ 이하하여야 함
- 사원·묘지· 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 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하여야 함
※ 단, 최초신고 접수 시 5천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신도수를 감안한 규모로 신고를 수리하여 부실 경영으로 인한 연고자 피해를 방지
-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공공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

-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나. 시설봉안묘

(1) 공통사항

- 사원·묘지· 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법 제18조)

● 봉안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시행령 제23조)

- 시설물은 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2)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3)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4)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5)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 시설봉안탑(담)

-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봉안묘 1기당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은 제외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m² 이하여야 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8조)
- 봉안탑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시행령 제23조)
 - 시설물은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m²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라. 봉안시설 설치신고 시 유의사항

(1) 장사시설 설치·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의 의미

※ 봉안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장지·수목장림에도 동일하게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단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 요소인 성당·교회·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목사·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

(2) 봉안당의 건축허가(신고) 관련

- 장사법에는 “봉안당”을 건축물인 봉안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 봉안당은 설치 전 신고 토록 규정하고 있어 봉안당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장사법에 따른 봉안당의 설치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는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시설 봉안당의 설치신고 시 건축물이라 하여 설치신고 전 반드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3)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설치예정지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묘지 설치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마.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봉안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5조)

가.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봉안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시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가.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봉안시설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시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나. 봉안 상황의 보고

-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연도별 봉안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다.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가.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1) 신고내용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라 함은 봉안시설의 이용요금 및 관리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항목별 시설설치비용 등을 말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가격표의 게시·등록

(1)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2)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거래명세서의 발급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봉안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거래명세서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 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019. 12. 27. 시행)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재해에 대비하여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가. 관리금 적립대상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봉안시설
-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봉안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봉안시설

나. 관리금 적립내용

-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시설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다.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
-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시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라.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마.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사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가.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나. 사망자정보 등록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CHAPTER

제 5 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

제2장 공설자연장지

제3장 사설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

1 자연장의 정의(법 제2조)

가.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구분	대상	장소	시설물
매장	시신 또는 유골	묘지	분묘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표지, 편의시설

-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수목형태 자연장”,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 “화초형태 자연장”,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 “잔디형태 자연장”으로 부를 수 있음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연못장”은 자연장이 아님

나. 자연장지

-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공설자연장지 :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다. 수목장림

-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자연장의 형태]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0조·시행령 제8조)

가.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됨
-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나.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용기의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다.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 (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장 공설자연장지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를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음
-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공설자연장지(수목장림)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함
 - 고시사항 : 명칭, 행정구역·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가. 공설자연장지 조성기준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cm²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나. 공설수목장림 조성기준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 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음
-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200cm² 이하여야 함
-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장 사설자연장지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법 제16조)

가.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나.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립)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립)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립)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립)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다. 수목형태의 자연장지와 수목장립의 구분

구분	장소	관련근거
수목형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의 조성대상지가 산림이 아닌 지역	
수목장립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의 조성대상지가 산림인 지역	장사법 제2조제14호

* 산림이란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를 산림이라고 함
다만, 1)농지, 2)초지, 3)주택지, 4)도로, 5)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과 6)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7)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

2 시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시행령 별표 4, 5)

가.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에 한함)

나.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cm²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제4편

분양과 분양시설



-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200cm²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로 함
 - 표지의 면적은 1구당 200cm²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장된 구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 표지는 자연장지 내 조경물, 기존의 벽면, 공동분향단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음
- 표지는 수목·화초 등에 매달거나 땅에 세우는 등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 표지를 대신하여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계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음

자연장지의 지목 변경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7호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장지 조성 시 지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따라 “묘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연장지의 지목이 “묘지”라 하여 묘지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다.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시행령 제22조)

구 분	조성불가지역		조성가능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라. 시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구 분		개인	가족	중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30㎡ 미만	100㎡ 미만	2,000㎡ 이하	40,000㎡ 이하	50,000㎡ 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급경사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참조하고,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을 준용하여 재해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규모 내에서 판단)				
편의시설		종교단체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미터 이상),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해당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또는 2천 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자연장지에는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진입로(폭 5미터 이상),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당 시설이 갖추어진 구역 또는 지역 등(기존의 사원 경내,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해방지시설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는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종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용함)				

마. 시설수목장림의 조성기준

구 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 미만	2,000㎡ 이하	40,000㎡ 이하	50,000㎡ 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200cm ² 이하			
	설치방법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수목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 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음				
재해방지시설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침사지 또는 물저장고는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종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용함)				

바. 수목장림(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 한함)의 운영·관리

(1)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 무단 굴취·채집 및 벌목행위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 그밖에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금지된 행위로서 사전에 공지한 사항

(2) 추모목의 식재 및 골분의 안치

- 추모목 용도로 인공식재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추모목의 생장을 고려하여 추모목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된 추모목은 뿌리내림 등 산림환경 적응을 고려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추모목으로 사용함
- 골분의 안치 위치는 추모목의 뿌리 위치, 추모목간 거리, 인접 골분 안치장소와의 거리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자연장함
- 골분을 안치한 후에는 반드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메우기를 실시하여 표토가 침식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치된 골분 주변에는 표지석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3) 수목장림의 숲가꾸기

- 운영관리자는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증진 등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충족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숲아베기·가지치기는 5~10년 단위로 하고, 덩굴제거·풀베기는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단위로 작업함
- 숲가꾸기에서 발생된 산물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목장림 밖으로 반출하거나 칩 등으로 활용함

(4) 수목장림의 재해 관리

- 운영관리자는 수목장림의 추모목 등을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로부터 건강하게 보호·유지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는 추모목의 보전이라는 특수 기능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산불예방 인력 배치 및 진화장비 구비, 방문자 실화 예방 등 산불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면과 계류부의 안정을 위한 예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함
- 병해충의 발생상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수목장림의 숲 특성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5) 수목장립 시설물 등 안전관리

- 운영관리자는 수목장립의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는 수목장립 내 제한행위 및 산불예방, 산림훼손 금지 등을 포함한 이용규칙에 대한 안내문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수목장립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낙석, 산사태,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구역에는 경고판 및 사고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 지원

- 운영관리자는 숲가꾸기 및 산림재해 예방·방지 등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전문가(산림 공무원, 산림기술자 등)의 기술자문과 관할 산림부서에 사업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산사태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내용

산림재해 종류	지원기관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산사태	관할 산림부서	사방사업	- 산지사방 :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 야계사방 :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산림병해충	관할 산림부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수목피해의 조사·진단 - 피해목의 방제사업 및 제거목 처리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법 제16조, 제26조)

가.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1) 조성(변경)신고 : 사후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 신고의무자 :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신고기한 :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관할 시장등
- 변경신고 사항
 -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자연장지,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타법(산지관리법 등)상의 신고의무 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이전명령 등의 행정처분
-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자연장지를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나.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

(1) 조성(변경)신고 : 사전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 구비서류
 -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 ① 가족자연장지
 - 평면도
 -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②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변경신고 사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 ※ 조성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는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자연장지,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자연장지를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다.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2조)

(1) 조성(변경)허가 : 사전허가

- 구비서류
 - ※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 ① 종교단체자연장지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② 법인자연장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수익허가서 포함) 또는 대부계약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변경허가 사항
 -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 처리기간 : 30일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청서 작성	자연장지, 조성자, 관리자, 신청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		
접 수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조성 제한지역 및 조성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연장지 조성과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조성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청사항 이행통지	허가 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허가신청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허 가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2) 위반시 벌칙 등 (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 (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라.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의 종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마. 사설자연장지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에는 골분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골분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
 - 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등 사후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6조)

가.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가.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자연장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나. 자연장 상황의 보고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연도별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다.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가.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가격표의 게시·등록

(1)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2)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팟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거래명세서의 발급

- 시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해당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거래명세서에는 시설자연장지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 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2019. 12. 27. 시행)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자연장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가. 관리금 적립내용

- 시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시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나.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시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시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시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관할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다.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라.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가.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나. 사망자정보 등록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

CHAPTER

제 6 편

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제2장 사설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1 장례식장의 정의(법 제28조의2, 제29조)

-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
- “공설장례식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
- “사설장례식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법 제28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③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공설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6조의4 및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름(p.146~147 참조)
-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장례의식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2장 사설장례식장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법 제29조)

- “장례식장영업자”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을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가. 영업신고

- (1) 신고의무자 : 공설장례식장 아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2) 신고기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
- (3) 구비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4) 처리기간 : 30일

나. 변경신고

- (1) 신고의무자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
- (2) 신고기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3) 변경신고 사항

-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 장례식장영업자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처리기간 : 10일

다.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확 인	장례식장 영업신고 사항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사항 적합여부 검토 -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발급(출력) 교부 및 장사지원센터로 영업(변경)신고 내역 통보(FAX 02-6930-9393)	처리기관

라.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례식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 (법 제28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의2)

가. 용어 정의

- 안치실 :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설비(이하 “안치 냉장고”)를 갖춘 시설
- 염습실 :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하거나, 시신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하는 수시(收屍)를 행하는 시설
- 시신약품처리실 : 시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 방부용 약품으로 처리하는 시설
- 참관실 : 염습시 유족이 참관하는 시설
- 발인실 : 유족이 입관한 고인을 운구하여 장지로 떠날 때 종교의식 등을 하는 시설
- 빈소 : 유족이 사용하는 분향실과 접객실을 합한 시설
- 분향실 : 유족이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유골 등을 모셔 놓은 시설
- 접객실 : 유족이 문상객에게 음식 등을 대접하기 위한 시설
- 유족휴식실 : 유족이 24시간 거주하며 휴식할 수 있는 시설

나. 장례식장 시설·설비의 구분

-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 장례식장 부대시설에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이 포함되므로 자연녹지지역 등 음식점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 내 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시행규칙 제20조의2)

(1) 장례식장영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시설 구성		시설 관련 기준 등
	필수	선택	
시신처리 시설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치실 : 감염병 사망시신 보관을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별도 2개 이상, 정전 대비 발전기 감염 방지 조치 필수
문상·조문 시설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장,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 조리·판매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하여 예비용 빈소 별도 설치 접객실,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처리시설과 별도 분리 ※ (권고사항) 시신 전용 승강기로는 사신만 운구
장례식장 관리 시설	사무실, 직원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직원휴게실에 샤워 설비 구비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 전기, 건축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준수

※ 감염병 예비용 빈소 등은 별도로 설치하되, 평상시에 사용 가능

(2)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위의 설비 외에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함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이 아닌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제6편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문상·조문 시설을 이용할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접객실에는 입식식탁 또는 높은 식탁을, 분향실에는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용품을 구비하도록 권장

[장애인의 장례식장 이용 불편 사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봄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참고)

● 보장위험 및 보상한도

- (보장위험)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보상한도)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보험 가입 시기

- 장례식장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라.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영업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시정 명령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장례식장 관련 타 법 주요내용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참조)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참조)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부대사업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함 (「의료법」 제49조 참조)
 - 장례식장의 건축물 용도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인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병원)”,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장례식장)” 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8호가목 참조)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 상업지역(일반·근린상업), 공업지역(일반·준공업),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
- ※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2 참조

[별지 1]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참고			점검자 :	/ 점검일 : . . .
소재지		전화번호		
장례식장 명칭		영업자명		
영역	채광시설 ()	조명시설 ()	소음방지용 내·외장제 ()	방습설비 ()
	방충설비 ()	환기설비 ()	냉·난방설비 ()	청소도구 ()
	폐기물처리 ()	소독·살균설비 ()	진공청소기 유무 ()	집진용·집수용 분리 ()
시신보관시설	안치실 ()	안치냉장고 (대)	감염병용 안치냉장고 (1인용 대)	비상용 전기 ()
	※ 비상용 발전기는 외부 전기 공급 설비가 있을 경우 제외			
	염습실 ()	내부식성 염습대 (대)	별도의 상하수도 시설 구비 ()	
	시신약품처리실 ()	혈액,약품 등 별도 처리 설비 ()		
	안치실·염습실 (시신약품처리실이 있을 경우 점검 시 포함)	바내수탁 ()	바내화탁 ()	방충망 등 침입방지 ()
	폐기물 구분 보관 시설 ()	별도 환기 시설 ()	별도 폐수 시설 ()	개인 위생구 ()
선택	참관실 ()	발인실 ()	기타 시신약품처리실 ()	
문상시설	빈소 (개)	제단 ()	환기시설 ()	감염병용 예비빈소 (개)
	접객실 (개)	식탁 ()	시신보관시설과 분리 여부 ()	
	화장실 ()			
선택	유족휴식실 ()	문상객실 ()	매점 ()	기타
	급수대	취사시설 ()	취사시설과 시신보관시설 분리 여부 ()	
관리시설	사무실 ()	상담 칸막이 ()	가격표 게시 ()	화장예약용 컴퓨터 ()
	직원휴게실 ()	샤워설비 ()		
선택	상담실 ()	장례용품실 ()	기타	
비상재해시설	소방	소화용기구 ()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	
	가스설비	도시가스 안전설비 ()		액화석유가스설비 ()
		※ 가스 설비는 있을 경우에만 점검		
	전기설비	전기 안전설비 ()		
건축물	건축물 이상 유무 ()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9조제4항, 제29조제5항, 시행규칙 제20조의3)

가. 임대료 산정기준

- 오전(정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연습실은 1회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

나. 가격표의 게시·등록(시행규칙 별표 1의2)

(1)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2) 가격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함

(3)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 하여야 함

다.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

라. 장례용품의 사용강요·강매행위 금지

- 장례식장 내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됨

마.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연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법 제29조제6항, 시행규칙 제20조의4)**가.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 함께 제출 가능함.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나. 신고의무자 : 장례식장영업자

다. 신고기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라. 구비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함(2019. 12. 27. 시행)

마. 처리기간 : 즉시

바.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폐업신고 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세무서로 송부	처리기관
↓		
확 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사항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 및 장사지원센터(FAX 02-6930-9393)에 장례식장영업 폐업 통보	처리기관

사. 위반시 벌칙(법 제42조)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29조제7항, 시행규칙 제20조의5)

가. 교육 필요성

- 장례식장영업자(예정자 포함) 및 종사자의 준법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나. 교육 대상자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 종사자는 장례지도사 등 6개월 이상 근로한 상시종사자를 말함
 -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 및 파견계약 등을 통한 장례식장 종사자 포함
 - 단, 식당, 매점, 주차장 근무자, 미화원은 제외
 -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p.166~167) 참조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다. 당해 연도 교육 면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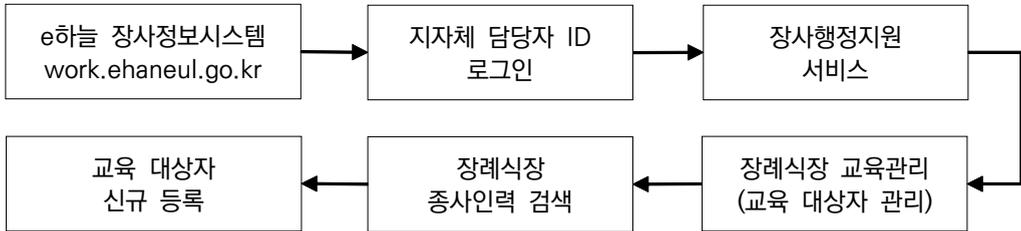
-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대학과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

- ※ 장사정보시스템의 장례식장 교육 대상자 관리(p.259~260) 참조
- 교육 대상자 등록
 - 시·군·구 담당자는 관할 장례식장에 매년 교육 대상자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반드시 안내
 - 장례식장은 교육대상 종사인력의 이름, 입사연월일, 생년월일, 성별, 교육 유형(영업자, 장례종사자, 기타종사자), 교육대상 구분(교육대상, 교육면제), 연락처, 재직여부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 담당자는 장례식장에서 등록한 종사인력 정보를 검색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교육 대상자를 등록(1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 당해 연도 교육 면제자의 경우 이수구분을 ‘교육면제’로 선택하고 면제사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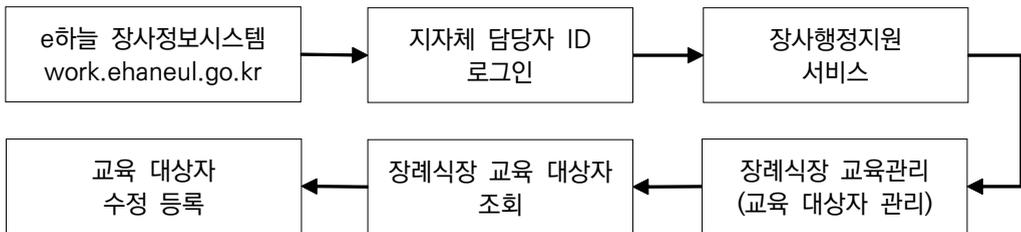
[교육 대상자 등록 절차]



● 교육 대상자 변경

- 교육 대상자의 교육유형(영업자, 장례종사자, 기타종사자), [교육대상 구분\(교육대상, 교육 면제\)](#), 연락처, 재직여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 등록

[교육 대상자 변경 절차]



마.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20조의5)
 -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장례식장의 관리 및 운영,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상담, 상장례 문화, 그 밖에 직업윤리 등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매년 4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17년부터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

구분		교육시간
영업자·영업 예정자		4시간
종사자	장례지도사*	4시간
	기타**	3시간

* 장례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시신을 다루는 장례식장 종사자도 해당

** 행정직 등 기타 종사자

바. 교육주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1) 교육계획 수립

- 시장등은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시·도 단위로 실시 가능)
- 교육계획은 교육실시기관별 정기교육을 활용하여 수립
 - 시장등은 원거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장례관련 대학)에 요청하여 출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 교육실시기관(장례관련 대학)에서 출장교육 불가 시, 시장등은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원격지 출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음

[교육계획 제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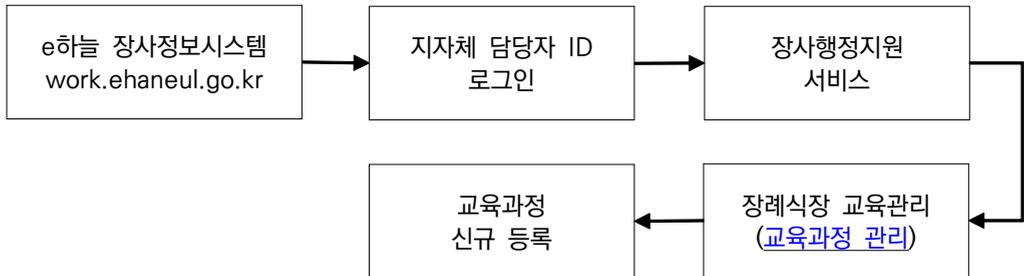
시·도	시·군·구	교육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예정 시간	교육 장소
			영업자	종사자		
ex)서울	종로구	장사지원센터	5	20	4시간	서울시청 대강당

(2) 교육관리

- 시장등은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대상자 소집 통보, 교육이수여부 확인 및 교육이수증 발급,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교육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함
- 시장등은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증을 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 교육 면제자 명단
 - 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자 명단, 이수필증 등)

- 시장등은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장사정보시스템의 장례식장 교육과정 관리(p.260~261) 참조

[교육과정 등록 절차]



(3) 교육결과 보고

- 시장등은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 제출 시 당해 연도 교육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교육결과 제출 양식]

구분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이수자 수	교육 미이수자 수	행정처분·과태료 건수	행정처분·과태료 예정건수	기타
합계						
영업자						
종사자	소계					
	시신처리자 (장례지도사 등)					
	기타					
영업 예정자						

※ 행정처분·과태료 건수는 구분하여 각각 기재

사. 교육실시

(1) 교육실시기관

- 장사지원센터
- 7명 이상의 교수요원과 교육장을 확보한 장례관련 대학(장례지도학과 또는 평생교육원)
 - 교수요원은 장례지도학과 교수, 상장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험이 풍부한 장례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구분	교육실시기관
영업자(예정자), 원격지 종사자	장사지원센터 교육사업과 02-6930-9325
종사자	<p>[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02-2290-1453)</p> <p>[부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051-330-7418)</p> <p>[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062-380-2210)</p> <p>[대전]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042-670-9621)</p> <p>[경기]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031-740-7133)</p> <p>[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033-649-7192)</p> <p>[경북] 서라벌대학교 장례서비스경영과 (054-770-3736)</p> <p>[경남] 창원문성대학교 장례복지과 (055-279-5103)</p>

(2) 교육과정 편성

- 교육실시기관은 되도록 월 1회 이상 정기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필요시 시·군·구와 협의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수강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시간당 1만원의 수강료를 수납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실시기관은 시행주기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을 연초에 확정하여 해당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야 함

(3) 교육 실시 및 결과관리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일시, 장소 등을 확정된 후 해당 시·군·구 및 장례식장에 교육비, 접수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장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야 하고, 해당일 교육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확인대장’에 매시간 서명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는 필요시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영수증’을 교육실시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이수필증’을 발급하고, 이수자 명단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교육관리에 등록하여야 함

아.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장례식장영업자)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육 미이수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지 1] 교육 이수필증(교육실시기관 발급용)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교육 이수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근 무 처 명			
교 육 유 형	<input type="checkbox"/> 영업자 교육	종사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장례지도사, <input type="checkbox"/> 행정직)	<input type="checkbox"/> 장례식장영업 준비자
교 육 이 수 시 간	시간	시간	시간
<p>위 상기인은 00.00.00일에 실시한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원장 (인)</p> <p>※ 교육이수 내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교육관리에 등록하였습니다.</p>			

[별지 2] 교육장 안내 양식

〈제00회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 일 시 :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등록 완료 요망
○ 교육장소 :	
○ 지참품 :	신분증 등
○ 약도(교육장 위치)	

[별지 3] 수강료 영수증

수강료 영수증

연 번		금액 (₩	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교육과목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원장 (인)

(절취선)

수강료 영수증

연 번		금액 (₩	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교육과목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원장 (인)

[별지 4] 교육 참석자 확인대장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참석자

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할시도	근무처명	담당부서	근무연한	장례지도사 유무 (○, ×)	서명
1									
2									
3									
4									
5									
6									
7									
8									
9									
10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법 제29조제8항)

가. 거래명세서의 발급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019. 12. 27. 시행)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법 제33조의 4)

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 운영

(1) 목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구축·운영으로 재해·재난·감염병 등 사망자의 효율적인 장례 지원체계 확보
 - 국가적 재해·재난·감염병 등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품위)을 유지한 장례지원

(2) 장례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자연·사회·해외),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3) 지정요건

- 빈소 4개, 안치 냉장고 6개 이상(농어촌은 빈소 3개, 안치 냉장고 5개 이상)
-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거나 감염성 시신을 밀봉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2명 이상(농어촌은 1명 이상)
- 장례지원에 필요한 물품(시신 이동용 들것, 시신 밀봉용품 등)
 - ※ 재해·재난 장례지원 경험(봉사의식) 및 지역 협조체계 역량 등 참고

(4) 지정장례식장의 주요역할

- 사망자 시신 현장수습
- 관, 수세포 등 장례용품 제공
-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 빈소 우선 제공
- 연고지로 시신 운구 또는 무연고자 화장·봉안

(5) 지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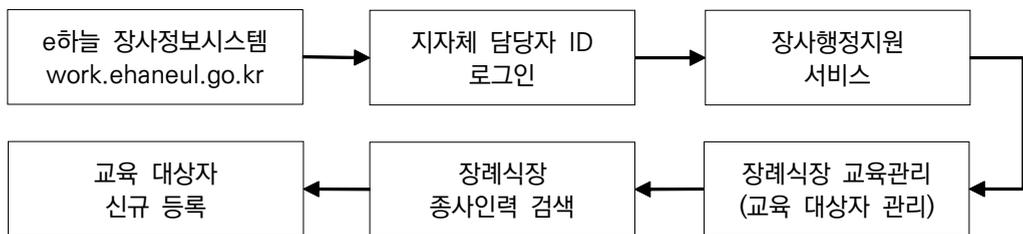
- 기본방향 : 시·군·구별로 1개소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2개소 이상도 가능
- 지정절차
 - (계획 수립·시행) 보건복지부
 - (대상 장례식장 추천)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군·구가 행정처분 등 특이사항이 없고 지정요건에 적합한 장례식장 추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우선 추천
 - ※ 장사지원센터와 한국장례협회에서 홍보 및 추천 협조
 - (심사/지정)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
 - 재지정의 경우 시·군·구가 행정처분 등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추천하였으므로 심사 없이 지정
 - (지정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장사지원센터에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패 제작·배포
- 지정기간 : 2년
 - 2년간 운영 후 재지정
 - ※ 지정기간 중 비협조, 법령 위반, 행정처분 등 발생 시 지정취소 및 지정패 회수

(6)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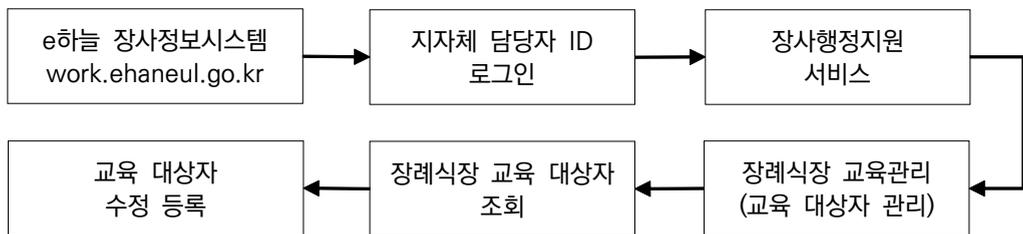
- 교육대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행정·관리직 포함)
 - ※ 식당, 매점, 미화원, 주차장 근무자 등은 제외
 - 동 교육 이수 시 장사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실시기관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 교육기간 및 장소 : 당해 연도, 지자체 강당 등 활용
 - ※ 교육 효율 및 영업차질 등을 고려, 15개 권역(세종제주 제외)별 2회 이상씩 집합교육(교육비 면제)

- 교육시간 및 내용 : 4시간, **재해·재난·감염병 등** 사망자 발생 시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의견을 반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특화교육
 - ※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교육과목**(심폐소생술, 장사법규·행정, 지정장례식장 네트워크 구축체계 및 유형별 장례지원 절차, 시신위생 및 시설안전관리, 재난심리상담 및 장례예절(직업윤리 포함) 등)으로 구성
- 교육관리
 - 장례식장은 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사항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별 담당자 확인
 - 장사지원센터는 교육결과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교육이수증 출력

[교육 대상자 등록 절차]



[교육 대상자 변경 절차]



나. 재해·재난 장례지원반 운영

(1) 목적

-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품위)과 예우를 갖춘 장례지원
 - ※ 유족에 대해 장례절차 및 용품, 화장예약 및 시설이용 지원 등으로 유족의 각종 부담 경감
 -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과 연계한 효율적 장례지원 도모, 지원역량 확보

(2) 운영기관 : 장사지원센터

- ※ 출동대기조 편성·운영(2인 1조, 24시간, 장례지도사 포함), 유형별 장례지원 매뉴얼 제작·운영

(3) 역할 및 기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요청 시 현장 출동, 초기대응 및 신원확인 지원 등
 - ※ 시신 수습·운구, 염습 등에 존엄을 확보한 신원확인 및 장례지원(장례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상황보고·전파(사망자 발생·처리 현황, 등 장사시설 확보(연계))
 - ※ 장례지원 물품 확보, 현장 추모식 및 입관, 운구 등 지원, 장례관련 각종 기관·단체 및 용품 공급 업체 등에 대한 연락체계 유지, 장례관련 자원봉사자 관리(배치 및 역할 부여, 현황 및 실적관리 등)
- 화장예약 및 각종 장사시설 이용 지원
 - ※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장예약(관리), 현장 인근 장사시설 이용현황 모니터링, 화장시설 등에 대한 야간가동 및 이용 협조(협의), 장사(장사시설 이용) 절차, 시설·용품·가격 등 장사시설 이용전반 관련 정보 지원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 지정패 제작·배포, 교육교재 제작·배포(재난 관련 법률, 대처방법, 지원체계) 등
 - ※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안치시설·운구차량 등 지원 요청, 투입된 시설(장비)·인력현황 관리(모니터링) 및 보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로 개인보호장구 제공 요청 등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가.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나.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다. 위반시 벌칙(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서식] 공정위 송부 공문 서식

○○○○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2조(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또는 제35조(과징금 처분) 및 제42조(과태료)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 전에 귀 위원회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귀 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사 중인 사안이라면 조사 중인 상황과 사후조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가. 사망자정보 등록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의식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CHAPTER

제 7 편

장사시설 공동관리사항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제3장 행정처분 등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1 묘적부 및 매장· 화장· 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작성하여 보관
-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때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2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한 때
-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증명서를 교부한 때
-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증을 교부한 때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 시설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 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까지의 구역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립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목장립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 ※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금지 장사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를 설치·조성할 수 없음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가. 수목장림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공동묘지, 화장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 가능
 -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다. 나항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 위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 가능(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관련)

제3장 행정처분 등

1 시설모지 설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은 시설장사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가. 행정처분 대상

-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시설모지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행정처분대장의 작성·비치

-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함

다. 청문

- 법 제3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행정처분 대상

(1) 시정명령

(가) 대상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단, 게시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 해당 위반사실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기간: 10일 이내

(2) 영업정지

- 대상 :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간 : 6개월 이내

(3) 장례식장의 폐쇄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나. 행정처분대장의 작성·비치

-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함

다. 청문

- 법 제32조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별표 5)

가.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음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함.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3) (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2)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함
- (4)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음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음

부칙 <제580호, 2018. 6. 20.>

- 제3조(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나. 개별기준 (2) 장례식장 영업자 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나. 개별기준 (2) 장례식장 영업자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개별기준

(1)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개수명령 (설치·관리인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 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 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 제2호				
가)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설치한 때		시설폐쇄	-	-	-
나)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 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관리인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 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 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한 때	법 제31조 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 화장 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 화장 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 제3호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 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 자연 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 자연 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 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2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4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장례식장영업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 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 하여 금품을 받거나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폐쇄	-	-	-

※ 행정처분 중 시설폐쇄는 해당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영업장 출입 방해 시설물 설치, 현판 설치 등)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규정임

4 과징금 처분(법 제35조)

시장등은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가. 일반사항

- 법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 포함)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포함)을 부과할 수 없음
- 시장등은 법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함
- 시장등은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인적 사항
 -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시행령 별표 6)

(1) 일반기준

-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 전년도에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창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함

(2) 과징금 기준

등 급	연간매출액(단위 : 원)	1일 과징금(단위 : 원)
1	1억 이하	23,000
2	1억 초과 ~ 2억 이하	68,000
3	2억 초과 ~ 3억 이하	110,000
4	3억 초과 ~ 4억 이하	150,000
5	4억 초과 ~ 5억 이하	190,000
6	5억 초과 ~ 7억 이하	250,000
7	7억 초과 ~ 10억 이하	330,000
8	10억 초과 ~ 15억 이하	410,000
9	15억 초과 ~ 20억 이하	500,000
10	20억 초과 ~ 25억 이하	600,000
11	25억 초과 ~ 30억 이하	700,000
12	30억 초과 ~ 40억 이하	820,000
13	40억 초과 ~ 50억 이하	950,000
14	50억 초과	1,100,000

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시행령 제39조)

-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함
-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함
-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함
-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음

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시장등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마. 과징금의 징수절차

-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5 과태료 부과(법 제42조,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포함)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

-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자
-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단,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제외)
-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연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법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단, 「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제외)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㉒ ㉑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㉑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함
- ㉓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사시설	감경 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40

- 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라.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2	150	200	25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바.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200	250	300
사.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차. 시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150	200	250
타.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	150	200	250
파.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	200	250	300
하.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4	150	200	250
거.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너.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	200	250	300
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150	200	250
러.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150	200	250
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150	200	250
버.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150	200	250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200	250	300
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150	200	250
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150	200	250
커.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	150	200	250
터.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200	250	300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제기 기간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함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징제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6 벌칙(법 제39조, 제40조)

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 법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시설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법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법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 법 제31조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 개수명령· 시설의 폐쇄· 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양벌규정(법 제41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7 이행강제금(법 제43조)

시장등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 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한 자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연고자

나. 부과 절차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통보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 기관·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함
-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 이의제기 기간
 -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방법 안내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CHAPTER

제 8 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제1장 개요

제2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향 및 절차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

제5장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 등 장례지원

제1장 개요

1 목적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나. 관계법령 등

- 의료법
- 외국인 보호규칙(법무부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해양경찰청 훈령)

3 적용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4 용어 정의

- ‘무연고 시신’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을 말한다.
 - ‘연고자’는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신을 말한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불가피한 이유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신처리 위임서’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란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법제처 법령해석 11-0551), 장사법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별초하는 자가 포함된다(법제처 법령해석 12-0058).

제2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향 및 절차

가. 기본방향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장사법 제12조)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존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를 따른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는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다만,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장사법

-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제1항)

• 의료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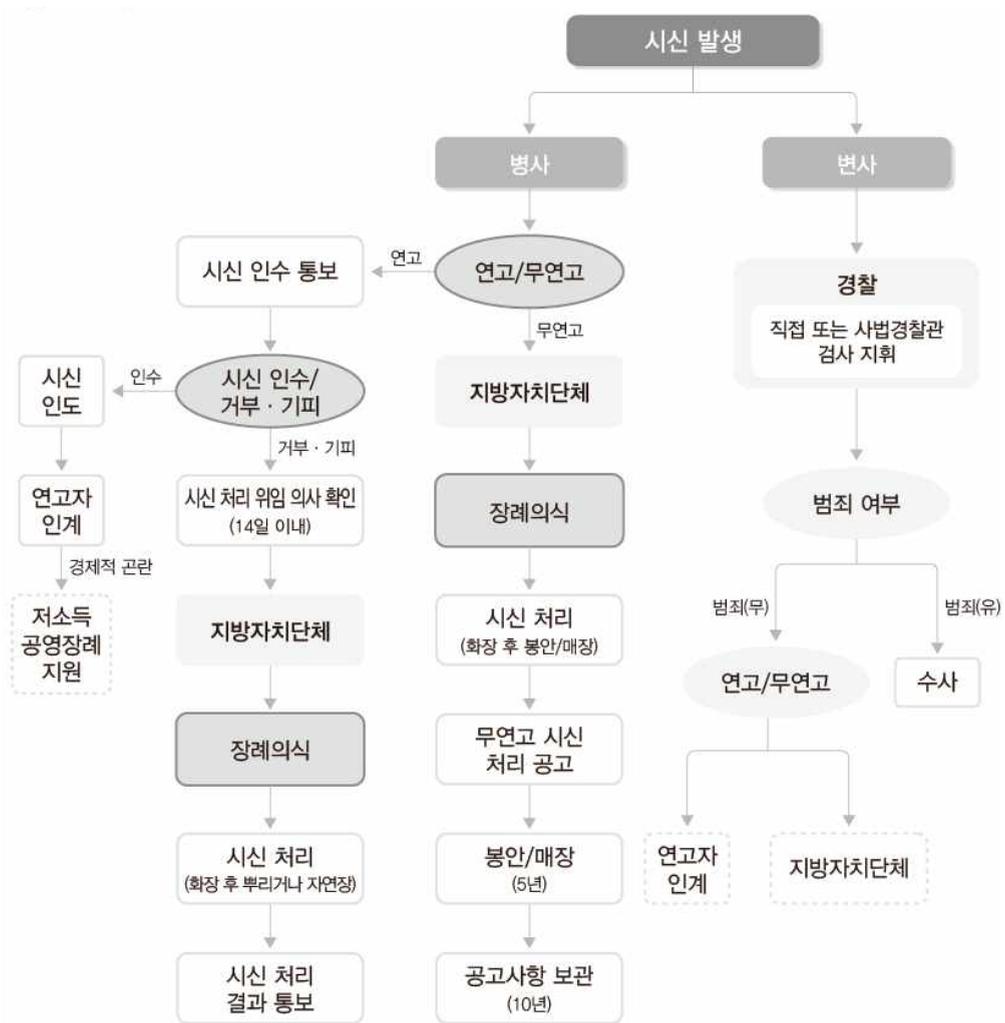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다. 처리절차

- 시장등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연고자 존재 여부를 재확인한다.
-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한다.
-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지방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업무흐름도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 절차

-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5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하여(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함)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때에는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이 하나 이상 포함
 -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 (유의사항) 무연고 시신 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시장 등은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절차

-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의 의사 및 상황을 파악하여 사례에 맞춰 장사절차를 지원한다.
 - ①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 조례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해당 지자체 관내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자연장지가 없는 경우 기존 장사방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고자가 장례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마을 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않아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 * 시신인수 통보 시 장사방식(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①과 같이 처리한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장등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 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시장등이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연고자의 연락두절, 주소지 불명 등으로 연고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가. 변사지의 경우 :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 (범죄수사규칙 제37조제1항)

※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이란 시신 발생(발견) 장소를 말함

※ 단, 수사기관이 시신 인도 요청 전까지의 시신 안치료는 수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선고2007가단81420 참조)

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장제급여’ 참조)

※ 사망한 지역이 관외인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사망자의 이송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사망한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시신처리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가 병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36쪽 참조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려환자 사망 시 조치요령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수급자 책정 시군구와 병원 소재지 시군구 간 망자 처리를 서로 미룸으로 인해 한 달 간 망자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 발생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려환자로 책정된 수급자 사망 시 1차적으로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신병인수를 거부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함 ※ 연고자도 없고 수급자 등 정부보호를 받던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망자 발생 병원 소재지 시·군·구가 장례를 치름 • 보장기관인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담당부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제 등 사망처리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로 통보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망자가 병원에 장기간 안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병원에서 질환, 노환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변사(사고사 추정)가 아니므로 경찰이 처리할 사항이 아님 *** 행려환자가 사망, 퇴원, 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

라. 독거노인(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기관이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중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참조)

마.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무연고 시신 등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등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청장등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⑥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 등을 위하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 무연고 시신 처리 산정비용은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을 포함한다.
- 시장등은 투명하고 적정한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연습·입관 등의 처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장례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장례 대행업체(장례식장 등)를 선정하여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무연고 시신 처리 대행업자는 시신 처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신사진, 연습(수의착용)사진, 입관사진과 매·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한 처리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대장을 반기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지사는 무연고 시신 처리 보고(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무연고 시신 처리 보고 시(장사정보시스템 등록 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처리 실적을 포함하며, 지자체별로 무연고 시신과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을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당부

-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직권으로 사망처리),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제88조의2)
-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제12조의2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시신 처리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상속재산의 처리는 민법에 따라 처리된다.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

가. 기본방향

-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

라. 지원내용(예시)

- 장례식장 빈소 또는 제례실을 마련하되, 공설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공설장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및 관내 장례식장 등과 협약을 추진한다.
-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자원(추모의식 주관자, 상주, 행사인력 등)은 역할*별로 확보하고, 관내 종교기관, 복지기관, (노인)자원봉사나 지역 내 주민자치협의회, 통반장 등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여 당번제 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장례의식 준비, 시신 운구, 장례의식 시행, 조문객 응대, 현장 정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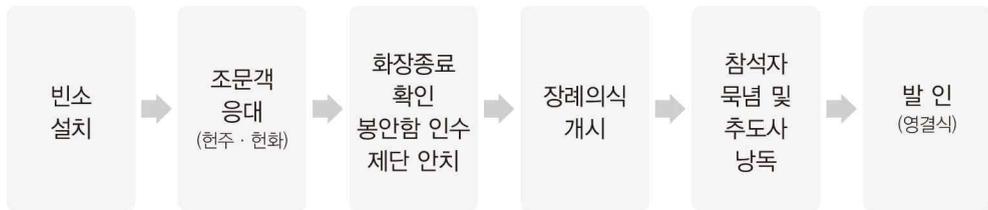
- 근조바구니, 위패, 제사상, 병풍, 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적 자원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기부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한다.
- 장례 일수 및 장례 진행 세부 절차 등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유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참고 1]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모형 : 저소득 장례지원



- ① 빈소설치 : 입관 30분 전 유족들 도착하여 위패와 근조바구니를 이용해 영좌 설치(유교 = 제사상, 기독교·천주교 = 성경책, 고상 등)
- ② 주문 및 추모메시지 작성 : 영좌 설치 후 조문객 주문 및 추모메시지 작성
- ③ 염습참관 : 유족 염습 및 입관식 참관
- ④ 추모의식 : 고인 및 유족의 종교의식 또는 추모의식 진행
- ⑤ 식 사 : 고인을 추모하며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식사
- ⑥ 발 인 : 영결식 등 마무리

[참고 2] 서울시 무연고사 장례의식 모형



※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 각 종교별 장례방식에 따른 진행

제5장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 등 장례지원

가. 기본방향

- 가족개념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발생 등 사회적 변화 반영
- 사망자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결정권 보장
-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구체적 예시

- 사실혼* 관계
 -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로,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객관적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 친자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
-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관계(조카, 며느리 등)
-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로 지정
- 기타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친구, 이웃, 같은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다. 유형 및 능력 범위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연고자) : 장사법상 연고자로서의 관리·의무 지님
- 장례주관자 : 장례의식 진행,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 결정, 사후 장례결과 지자체 보고 등 장례절차에 한함(무연고시신 통계에 포함)

라.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사실혼	실제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주민등록 세대분리 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상호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결혼식 사진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동 명의의 자산 취득 및 공동 지출 등 경제적 공동체
사실상 동거, 지속적 돌봄 등	정기적 생활비 등 사적이전 입금내역, 병원비·간병비 등 지급 내역, 지속적으로 사망자 돌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적자료	친족관계 등 증빙서류, 공증문서 및 유언장 등
사실관계 소명자료 및 확인서 등	평소 교류내역(편지, 사진, 통화내역 등), 음·면·동장 및 통·이장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마. 처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비고
연고자(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작성·관계증빙 서류 제출 - 방문, 메일, 우편 등 	서식 5, 6
↓		
확인조사, 내부 심의 및 결정(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연고자 유무 확인, 연고자의 시신 인수 의사 확인 신청서 및 관계 증빙서류 등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내부 심의 등을 통해 연고자(장례주관자) 결정 통보 	
↓		
장례 수행(신청자) 및 장례 지원(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의 생전 의사 존중하여 장례절차 진행 사망신고 등 행정적 지원,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 예산 범위 내 장례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사후 보고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화장 및 안치 증빙서류 등 구비)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사용내역 제출 	
↓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대장에 신고내용 기재하고, 10년 보관 	서식 7

[별지 제1호서식]

시신처리 위임서

1. 사망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본 적 :

2. 연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망자와의 관계 :
- 국 적 :

3. 무연고 시신처리 위임사유

○

4. 위임내용

- 시신의 처리(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

5. 위임을 받은 자

- _____시장·군수·구청장

20 . . .

연고자 : _____(인 또는 서명)

※ 증명서류: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사진

구분	사 진
전신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치)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뒤쪽)

● 시·군·구명

구 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노인									미 상 및 기 타 *	총계			
													65세~69세			70세 이상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미상	합계
계																										
①																										
②																										
③																										

※ 분류 : ① 연고자 없음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미상 및 기타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별지 제4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 시·도명

시군구명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노인									미상 및 기타*	총계					
													65세~69세			70세 이상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미상
계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 미상 및 기타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별지 제6호서식] <신설>

사실혼 관계 확인서		
①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 사망자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본인은 배우자 _____ 와 _____ 년부터 ____ 년째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혼인 관계이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사실상 혼인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④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⑤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사실혼임을 증명하는 확인자(자녀, 친족, 필요시 아·통·반장) 2인의 인적사항 및 자필 한글정자 서명 반드시 기재

●●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

CHAPTER

제 9 편

장사정보시스템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2. e하늘 포털시스템
3. 화장관리시스템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7. 민원지원시스템
8.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9. 장사업무 통계(화장 및 장사시설)
10. 기타

1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 주요기능(장사법 제33조의2 제2항)

1.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근거 마련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가. 장사정보시스템의 목적

(1) 화장예약 창구 단일화

-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화장 예약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
- 단일화된 화장예약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화장할 수 있는 화장예약 서비스 제공

(2) 장사문화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장사법령 및 제도, 장사문화의 소개와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화장시설의 예약현황, 장사시설 사용료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다양한 장사 관련 종합 정보 제공

(3)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장사행정 처리

- 장사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 효율성 강화
- 매·개장 및 장사시설 설치 신고·허가, 무연고 시신 처리 등 장사행정 처리

(4) 사망자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국고누수 방지

- 사망자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정보연계로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나.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시스템	주요기능
e하늘 포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화장예약 서비스 제공 장사문화 전반(장사시설 정보, 장례용품 및 가격 정보, 장례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등록 관리 장사시설 정보(시설정보·용품가격·이용료 정보 등) 및 사망자정보 등록 기능 제공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게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화장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예약 및 화장접수 관리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전담하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은 e하늘과 예약 및 화장자료 연계 처리)
e하늘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화장예약 서비스 제공 위치기반 장사서비스 제공(나의 주변 장사시설 찾기) 장사시설 정보 및 용품가격정보 제공 부고·조의 문자 보내기 서비스 제공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운영관리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설치 인·허가 처리 및 매·개·화장 신고 관리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관리(관리·운영부, 관리금 등)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관리 기능 제공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관리
사망자정보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시설 등을 통해 취득한 사망자정보 관리 ※ 장사시설의 사망자정보 제공으로 복지급여 업무 활용(현재 10개 기관)
민원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 다빈도 민원업무 사례 등록 관리 민원사례 검색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사망자의 사망 시점부터 장례식장 이용, 화장(봉안, 자연장) 및 매장 등 전 단계에 걸쳐 사망자정보를 수집 및 활용

- 사망자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자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에만 제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2 e하늘 포털시스템

가. 시스템 구성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이용 편의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사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 정보 제공
-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사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다.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 <http://www.ehaneul.go.kr>, <https://15774129.go.kr>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Haneul portal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of the Korea Forensic Culture & Policy Institute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화장예약 (Funeral Reservation):** A grid of six buttons for services such as '화장시설현황' (Funeral Facility Status), '화장예약신청' (Funeral Reservation Application), '화장예약확인' (Funeral Reservation Confirmation), '화장예약변경' (Funeral Reservation Modification), '화장예약취소' (Funeral Reservation Cancellation), and '실명인증신청' (Real-name Authentication Application). Below this grid are three search bars for '화장예약서비스 이용안내(동영상)', '화장지원금 알아보기', and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 장사시설안내 (Funeral Facility Introduction):** A vertical list of facility categories with icons and brief descriptions: '장례' (Funeral), '화장' (Funeral Home), '자연장' (Natural Burial), '봉안' (Burial), and '매장' (Burial). Each category includes a '바로가기' (Go) button.
- 장사정보마당 (Funeral Information Plaza):** A section with icons for '문상방법' (Condolence Method), '장례절차' (Funeral Process), and '장사정책' (Funeral Policy). Below this is a '장사시설종사인력교육' (Funeral Facility Staff Education) section with icons for '교육일정' (Education Schedule), '교육신청' (Education Application), and '확인증출력' (Confirmation Certificate Output).
- 이용안내 (Usage Guide):** A section with two video thumbnails: '화장예약안내' (Funeral Reservation Guide) and '서비스 이용안내' (Service Usage Guide).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footer with the logo of the Korea Forensic Culture & Policy Institute and several links: '알기쉬운 장례절차', '장례후조치(신고,유산 등)', '장례비 등 지원사항', and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조회'.

● <http://m.ehaneul.go.kr>, <https://m.15774129.go.kr>

The screenshot displays the mobile interface of the 'ehaneul' (e하늘) funeral information system.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menus and a header with the system's logo and name. Below this, the main content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화장예약서비스 (Wedding Dress Reservation Service):** This section contains six service icons:
 - 화장예약신청 (Wedding Dress Reservation): 일반시산·개장유골·죽은타아 예약 신청
 - 화장예약변경 (Wedding Dress Reservation Change): 시설 및 예약 일정 변경
 - 화장예약취소 (Wedding Dress Reservation Cancellation): 시설 및 예약 일정 취소
 - 화장예약확인 (Wedding Dress Reservation Confirmation): 화장예약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실명인증신청 (Real-name Authentication Application): 주민등록, 알소·0세아·미등록, 외국 인·기증시신 등 실명인증불가자 인증
 - 화장시설안내 (Funeral Home Guide): 시설이용료, 구비서류 등
- 가까운 장사시설 안내 (Nearby Funeral Home Guide):** This section includes a map showing the current location and nearby facilities. A legend identifies facility types: 장례식장 (Funeral Home), 화장시설 (Crematorium), 자연장지 (Natural Burial Site), 봉안시설 (Burial Facility), and 묘지 (Gravestone). A search bar labeled '전체장사시설검색' is also present.
- Regional Navigation:** A map of South Korea is shown with buttons for each region: 인천, 서울,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세종, 경북, 대전,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제주, and 전국 (All Korea).
- Search Functionality:** A search bar is labeled '세종' (Sejong). Below it, a list of search results is shown:
 - 세종시공설묘지 (Sejong City Public Cemetery)
 - 세종시은하수공원 (Sejong City Eonhae Water Park)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라.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1)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 신청인이 화장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청/변경/취소 진행
- 화장예약 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신청자가 책임(예약의 진정성 확보)
 - ※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하며,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 ※ 화장예약 시 사전 선점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의 화장예약을 위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후 예약 권장

[인터넷 화장예약 신청 절차(일반)]



[인터넷 화장예약 신청 절차(개장유골/죽은 태아)]



[인터넷 화장예약 확인 변경(취소) 처리 절차]

예약정보 입력	<p>▶ 예약정보 확인</p> <p>- 예약번호, 신청인의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로 예약정보 확인</p> <p>※ 예약번호 분실 시 '화장예약 확인' 메뉴에서 예약번호를 확인하거나 해당 화장시설로 문의</p>	유족 등
화장예약 변경/취소	<p>▶ 예약 변경</p> <p>- 예약 변경은 화장시설 및 예약일시만 선택 가능</p> <p>※ 사망자, 신청자 정보 변경 불가능</p> <p>▶ 예약 취소</p> <p>- 예약내용 확인 후 취소 가능</p>	e하늘
화장예약 변경/취소 완료	<p>- 화장예약 변경/취소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결과(변경/취소) SMS 수신</p>	유족 등

(2)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연고자 본인인증 확인
 - ※ 본인인증 방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3) '취소 후 대기'는 최소 1시간(전국 화장시설 공통)이고, 화장예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정

※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 또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예약 변경 및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랜덤수치 수시 조절

(4) 사망자의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실명인증 불가자의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화장예약 진행

- 실명인증 신청 대상 : 출생신고 전 사망자(주민등록번호 **미존재**), 신원 불명의 행려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거주지 불명), 신원확인 불가 외국인
 - ※ 외국인 등록번호/거소번호가 있으나 실명인증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문의 후 실명인증 신청 절차를 거쳐 화장예약 진행

[실명인증 불가자의 화장예약 절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인증 신청서 및 사망사실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망증명서 등) 제출(팩스 송부) ▶ 외국인의 경우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자국민확인서, 화장동의서 등) 요구 	유족 등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재 내용과 사망사실, 화장의사 여부 대조 확인 ▶ 신청자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사망사실 및 증명서류 작성여부, 발급여부 확인(유선통화, 녹취) 	장사지원센터
사망자정보 등록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및 신청자 관련 정보 확인 ▶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조치 	장사지원센터
사망자정보 승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및 신청자 관련 정보 승인처리 	장사지원센터
화장예약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게 화장예약이 가능한 대체번호를 SMS 전송 	장사지원센터
화장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정보를 기반으로 화장예약 신청(필요시 변경/취소) 	유족 등

■ 참고사항

가. 죽은 태아(사산아)의 화장예약 절차

- 죽은 태아(사산아)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아를 의미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화장 절차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원칙
 - ※ 임신 4개월 미만의 사태아는 적출물로 분류되어 소각 처리
- 죽은 태아(사산아)는 시신(일반)과 같이 1구 단위로 예약
- 예약 신청인은 부모가 원칙이나, 출산 병원장의 책임 하에 그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 담당자로 예약 가능
- 사망자명은 산모명+“사산”으로 입력

나. 개장유골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유족이나 개장대행업체 담당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예약 가능
- 일반 시신과 분리 관리
 - 별도의 차수로 가급적 시신(일반)과 분리하여 관리
- 화장시간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배정

다. 출생신고 이전 사망자(신생아)의 화장예약 절차

-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신생아는 실명인증이 되지 않으므로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 화장예약 신청 항목의 사망자명은 산모명+“아기”로 입력
 ※ 쌍생아의 경우는 산모명+“아기일”, 산모명+“아기이”로 입력

라. 무연고 사망자 등의 화장예약 절차

- 신원불상 무연고 사망자 : 담당자(지자체 공무원 포함)가 실명인증 신청 후 화장예약
-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 장례식장에서 사망자정보 등록 후 기관의 담당자가 화장예약

마. 외국인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1)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실명확인 가능 외국인
 -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은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 (2)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실명확인 불가 외국인
 - 체류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유가족의 장례방침과 사망자 국적 영사의 확인 등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리
 -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실명인증 신청 후 인터넷 화장예약 가능
 ※ 신청인은 실명인증과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이 가능한 국내 연고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 (3) 신원불상 또는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외국인 사망자가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자 국적 영사의 사망확인을 받아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 국적의 영사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바. 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외국에서 사망하여 국내로 운구된 한국인의 경우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사. 기 사망신고 된 사망자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기 사망신고 된 사망자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으므로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아.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자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1) 대상
 - **감염병, 사고** 또는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로 화장시설 대표가 인정하는 경우
 - 비영리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장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대책위원회 담당자가 예약을 신청 하는 경우
 - 그 외 화장시설 대표가 그에 준하는 사망자로 **인정하는** 경우
- (2) 사망 증명서류 제출 및 사망자정보의 확인 없이 처리 가능
 - 유족의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사망증명서류 제출 및 사망자정보 확인 없이 화장예약
 - 이 경우, 화장예약 접수 시 특이사항에 “재난·재해” 또는 “사고명”을 기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함
 ※ 단, 유족이 개별적으로 예약하거나 화장시설을 통하여 예약한 경우는 제외

마.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

(1)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에 맞게 품종(관, 수의 등)에 따른 취급품목을 구성할 수 있고, 취급 품목에 대한 판매여부(판매·미판매) 관리 가능
- 장례용품 정보 등록(품명, 가격, 규격, 재질, 원산지 등)
※ 가격 정보 등록 및 수정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가능

가격 정보 등록 예시 화면

시설선택 조회 검색기간 이력조회

○ 가격정보 입력

장례식장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시설소개
----------	-----	------	------

※ 가격은 1일, 1회 기준 가격으로 입력하고, 원산지는 세부내용에 입력합니다. 줄을 추가해서 가격정보를 입력하세요.

선택	분류	종류	품명	규격/재질/원산지 (mm, cm, m 등 기본단위 사용)	가격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관	오동나무	오동관 01	1850x450x336x18	
<input type="checkbox"/>	관	오동나무	오동관(특)	1950x510x336x18	
<input type="checkbox"/>	관	기타	기타	1950x510x336x32	

전체선택 전체해제 추가 삭제

저장
취소

(2)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및 표준 평균가격 정보 게시

가격 정보(평균가격 포함) 게시 예시 화면								
가격정보 미판매 보기 전체닫기 ^								
항목닫기 시설사용료								
품종	품명	임대내용	요금 (단위:원)	일수	관내 평균가격	전국 평균가격	판매 구분	선택
시설임대료 □								
빈소+접객실	장례식장 빈소 임대료(66㎡)	1일	276,000	1 ▼	798,750 (2개소)	558,758 (534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빈소+접객실	장례식장 빈소 임대료(116㎡)	1일	564,000	1 ▼	798,750 (2개소)	558,758 (534개소)		<input type="checkbox"/>
빈소+접객실	장례식장 빈소 임대료(132㎡)	1일	672,000	1 ▼	798,750 (2개소)	558,758 (534개소)		<input type="checkbox"/>
빈소+접객실	장례식장 빈소 임대료(특실)	1일	1,080,000	1 ▼	798,750 (2개소)	558,758 (534개소)		<input type="checkbox"/>
안치실이용료 □								
일반	안치료	1일	60,000	1 ▼	66,000 (2개소)	72,227 (866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기타	염습비	회(주간 입)	300,000	1 ▼	0 (0개소)	0 (0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 요금 합계 636,000 원						선택한 상품 상세보기 (3건) ^		

(3) 실속정보(지자체 장사관련 지원 사항 조회)

- 개·화장 장려금, 시설이용료 감면혜택, 기타 지원사항 등

지자체 장사관련 지원 사항 조회 화면						
지역선택		시도선택 ▼	시군구선택 ▼	구분	전체 ▼	검색
전체 274건, 현재 페이지 1/28				등록일순 ▼ 조회순		
번호	구분	지역	제목	시행일시	등록일	조회수
274	화장지원금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화장장려금	2013.01.04	2019.10.29	158
273	기타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공영장례지원(2019.10.01 시행)	2019.10.01	2019.07.18	343
272	화장지원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화장장려금(2019.10.01 시행)	2019.10.01	2019.07.18	775
271	기타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공영장례지원	2019.03.15	2019.05.22	280
270	기타지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공영장례지원	2019.04.26	2019.05.22	235
269	화장지원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화장장려금	2019.03.27	2019.04.05	462
268	화장지원금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장장려금(2019.07.01 시행)	2019.07.01	2019.03.18	1375
267	기타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2019.02.12	2019.02.18	384
266	시설이용감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장사시설 이용감면		2018.11.28	363
265	화장지원금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화장장려금(2019.01.01 시행)	2019.01.01	2018.11.20	1098

« < 1 2 3 4 5 6 7 8 9 10 > »

3 화장관리시스템

가. 시스템 구성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화장시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제고
- 화장시설 이용 결과의 사망자정보 관계기관 제공
- 업무처리 정보화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시스템 제공으로 비용 절감
- 지자체의 화장시설 사용료 정산체제 기반 마련
- 화장시설 이용체제 최적화를 통한 화장수요 충족률 제고

다. 화장시설 준비사항

(1) 화장예약 및 화장접수 기준(기본정보) 설정

- 시설별 화장예약 차수, 우선예약 종료시간, 사용료, 시설, 서식 기준 등 등록
-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시설별 인터넷 화장예약(e하늘 포털시스템) 적용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장사지원센터 1577-4129로 문의)
※ 인터넷 예약 시 사전 선점 방지를 위해 '취소 후 대기' 시간을 60분으로 설정(전체 시설 공통)

(2) 시설기준 및 예약차수, 예약일정 관리

- 화장시설 주소, 대표전화, 화장로 수, 인증절차 적용
- 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사산아)의 차수별 시간대 기준 설정
- 운영차수 기준에 따른 일별 예약 가능한 차수의 시간대 설정
※ 일반시신은 5일, 개장유골/죽은 태아는 15일 전 예약 가능
※ 개장유골/죽은 태아의 경우, 대구, 울산, 공주, 청주, 영주, 문경, 김해, 제주 화장시설은 1개월 전 예약 가능

(3) 사용료 기준정보 관리

- 유형별(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관내·외, 감면대상 여부 등 화장시설 요금 기준 설정

(4) 서식기준 관리

- 화장신고서, 화장증명서, 영수증에 기재될 안내 문구 설정

라. 화장예약 관리 절차

(1) 화장시설 예약정보 관리

-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화장예약 체계 정립을 위하여 화장시설의 자체예약 최소화
※ 윤달 기간, 개장유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시설 여건에 적합한 추가 예약절차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화장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e하늘 포털(www.ehaneul.go.kr)의 실명인증 신청 절차에 따라 예약 진행
※ 주소지가 동일한 다수의 무연고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화장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예약 진행 가능

마. 화장접수 관리 절차

(1) e하늘 화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시설

- “화장접수 관리”메뉴에서 화장예약을 선택하여 화장접수 처리
- 화장신고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출력
- 화장 시작, 종료의 화장결과 등록
- 화장접수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접수 내역과 비교

(2) 자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시설

- 화장관리시스템의 화장예약 정보가 자체 정보시스템의 자료구조에 적합하게 전환되어 적재되었는지 확인
- 자체 정보시스템에 화장접수 처리된 화장정보가 화장관리시스템으로 올바르게 연계되는지를 화장관리시스템의 화장접수 관리대장을 통해 익일 확인
 - ※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 서울(서울시립습화원, 서울추모공원),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세종, 광주, 울산, 용인, 구미, 정읍, [청주](#), [원주](#), [남해](#)

• 화장접수 시 주의사항

- 자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시신(일반) 화장접수 시 연계된 화장예약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서로 다른 사망자를 접수할 수 없음
 - ※ 예약정보와 상이한 사망자의 화장접수 사실이 발생하면 사실 확인 후 해명요구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예정
- [일반시신의 경우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를 반드시 확인](#)

참고사항

화장관리시스템 주요 관리 항목

구분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기준정보	시설기준	시설명, 소속기관, 주소, 대표전화번호, 신청자 실명인증 여부, 신청자 휴대폰 인증 여부, 예약변경 제한횟수, SMS 안내 여부, 당일예약 여부, 당일예약 가능시간, 우선예약 종료시간
	예약차수 및 일정	기준일자, 차수, 시간대, 최대 예약 수, 적정 예약 수, 관내 우선 예약 수, 예약대상, 예약가능 여부
	사용료	화장대상, 관내·외, 감면대상, 적용일자, 사용료
화장예약	화장예약	예약일자, 예약시간대, 예약대상, 사망자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자명, 신청자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시간(사망시각), 휴대폰 번호,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자와의 관계, 관내·외, 사망자 주소, 신청자 주소, 사망관리번호
	화장예약 취소	예약번호, 취소일자, 취소시간, 취소사유
화장접수	화장접수	화장일자, 화장예약번호, 화장대상, 감면대상, 관내·외, 유/분골 구분, 사망자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성별,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장소, 사망사유, 유골처리 구분, 사망자 주소, 신청자명,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사용료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가. 시스템 구성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정보화
-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즉시성 있는 정책자료 획득 기반 구축
- 매장(이장, 개장 포함)·봉안 등에 따른 시신·유골의 처리절차, 이동경로 등에 대한 이력 관리
-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업무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업무절차의 시스템화로 체계화된 민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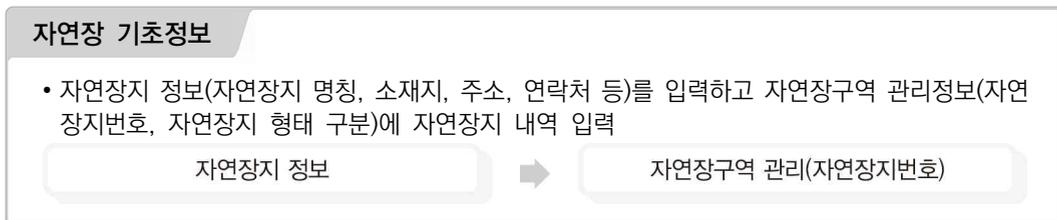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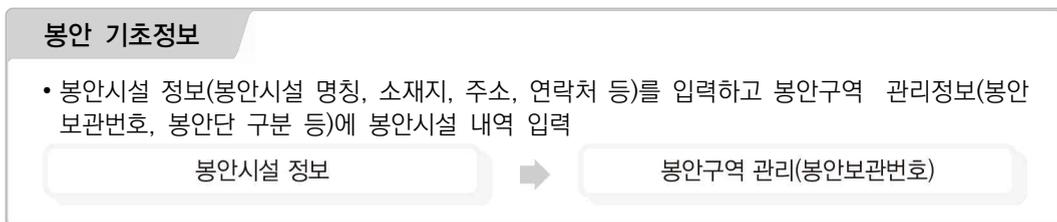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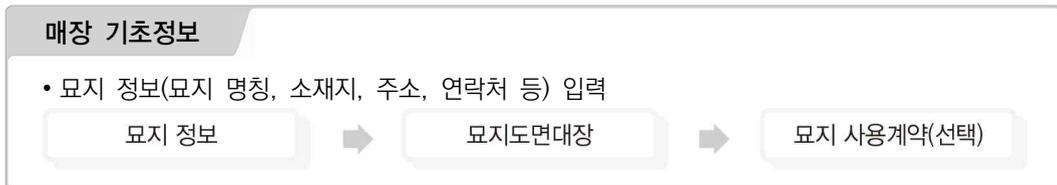
다. 시설운영관리업무 처리절차

(1) 기준정보 관리

- 시설운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준정보 등록
- 공통 기초정보는 공통사항이므로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입력하고, 매장, 봉안, 자연장 기초정보는 해당하는 시설만 입력



- 시설 유형별 추가정보와 요금정보를 입력
-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 환경설정정보)에서 신고서 및 증명서를 동시 출력할 경우에는 [서식 신고서 출력여부]를 체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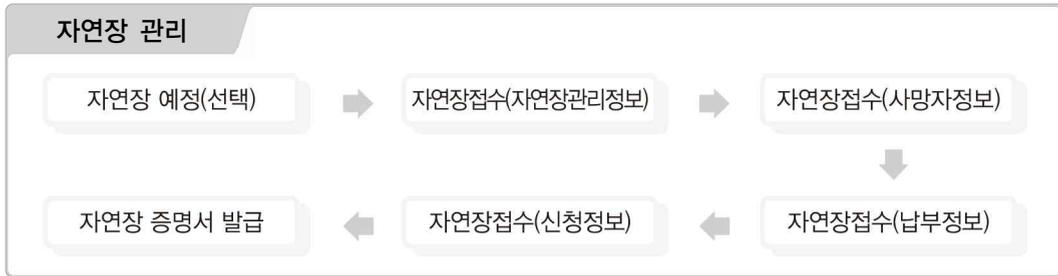
- 장사행정지원 연계 기능
 - 단위 시설에 매장 접수된 자료를 **관할행정기관**에서 매장신고를 위하여 연계 처리 하는 기능
 - 매장접수 처리를 하면 단위 시설의 매장접수 내용이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의 매장신고 등록에서 조회되어 매장신고 처리 가능
 - ※ 지자체 담당자는 시설의 매장접수 처리 건에 대하여 매월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매장신고 연계 처리
- 분묘 설치기간 연장 처리 시에는 매장접수 화면의 '기간연장'에 기간연장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
- 개장 처리 시에는 매장접수 화면의 '개장'에 개장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개장 증명서를 발급

(3) 봉안관리



- 봉안접수 및 유골반환 업무 처리
- 봉안접수 화면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신고서 및 증명서 발급
- 봉안시설 사용 연장을 할 경우에는 봉안접수 화면의 '재사용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내역을 등록하고 봉안시설사용허가증 발급
- 유골 반환을 할 경우에는 봉안접수 화면의 '반환'에 유골반환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유골 반환증명서 발급

(4) 자연장 관리



- 자연장접수 업무 처리
- [자연장 접수] 화면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 신청서 및 증명서를 발급

라. e하늘 포털 관리

- 시설 담당자는 e하늘 포털에 등록된 시설 정보와 가격 정보의 확인 및 변경 관리
- e하늘 포털의 “시설 정보 관리” 화면에서 시설 정보(시설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및 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 정보 등을 확인하고 변경사항 입력
- e하늘 포털에서 시설 정보를 변경하면 시설운영관리시스템의 시설 정보도 자동으로 변경 처리됨

마. 주요 관리 항목

(1) 기준정보 관리

업무 구분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공통	시설 정보	시설명칭,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등
	관리사무소 정보	관리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등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정보	관리사무소, 요금 종류, 사용료, 관리비 등
묘지	묘지 정보	관리사무소, 묘지명칭, 소재지,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등
봉안시설	봉안시설 정보	관리사무소, 봉안시설 명칭, 소재지, 설치일, 봉안시설 형태, 최초 허가기간, 연장기간, 연장횟수, 전화번호, 주소 등
	봉안구역 정보	봉안시설, 봉안구역, 봉안실 번호, 봉안단 번호, 봉안보관번호명, 봉안시설 형태 구분, 봉안단 구분 등
자연장지	자연장지 정보	관리사무소, 자연장지 명칭, 소재지, 조성일, 자연장지 형태 구분, 전화번호, 주소 등

(2) 매장 관리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매장관리정보	관리사무소, 묘지지역, 매장일자, 분묘 형태, 분묘면적, 시설사용 허가기간 등
사망자정보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 구분, 사망장소, 사망사유 등
납부정보	관내·외 구분, 감면대상 구분, 요금 구분, 사용료, 관리비 등
신청자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납부자정보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연고자정보	연고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분묘 설치기간 연장정보	신청자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고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설치기간 연장사유, 설치연장기간 등
개장정보	개장일자, 개장사유, 개장방법, 개장 신청자,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등

(3) 봉안 관리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봉안관리정보	관리사무소, 봉안시설명, 봉안일자, 봉안함 구분, 봉안보관번호, 화장시설, 화장일자, 시설사용 허가기간 등
사망자정보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 구분, 사망장소, 사망사유 등
납부정보	관내·외 구분, 감면대상 구분, 이용요금 구분, 사용료, 관리비 등
신청자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납부자정보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연고자정보	연고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재사용정보	재사용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사유, 주소, 연락처, 신고일, 사망자와의 관계 등
반환정보	반환일자, 반환사유, 반환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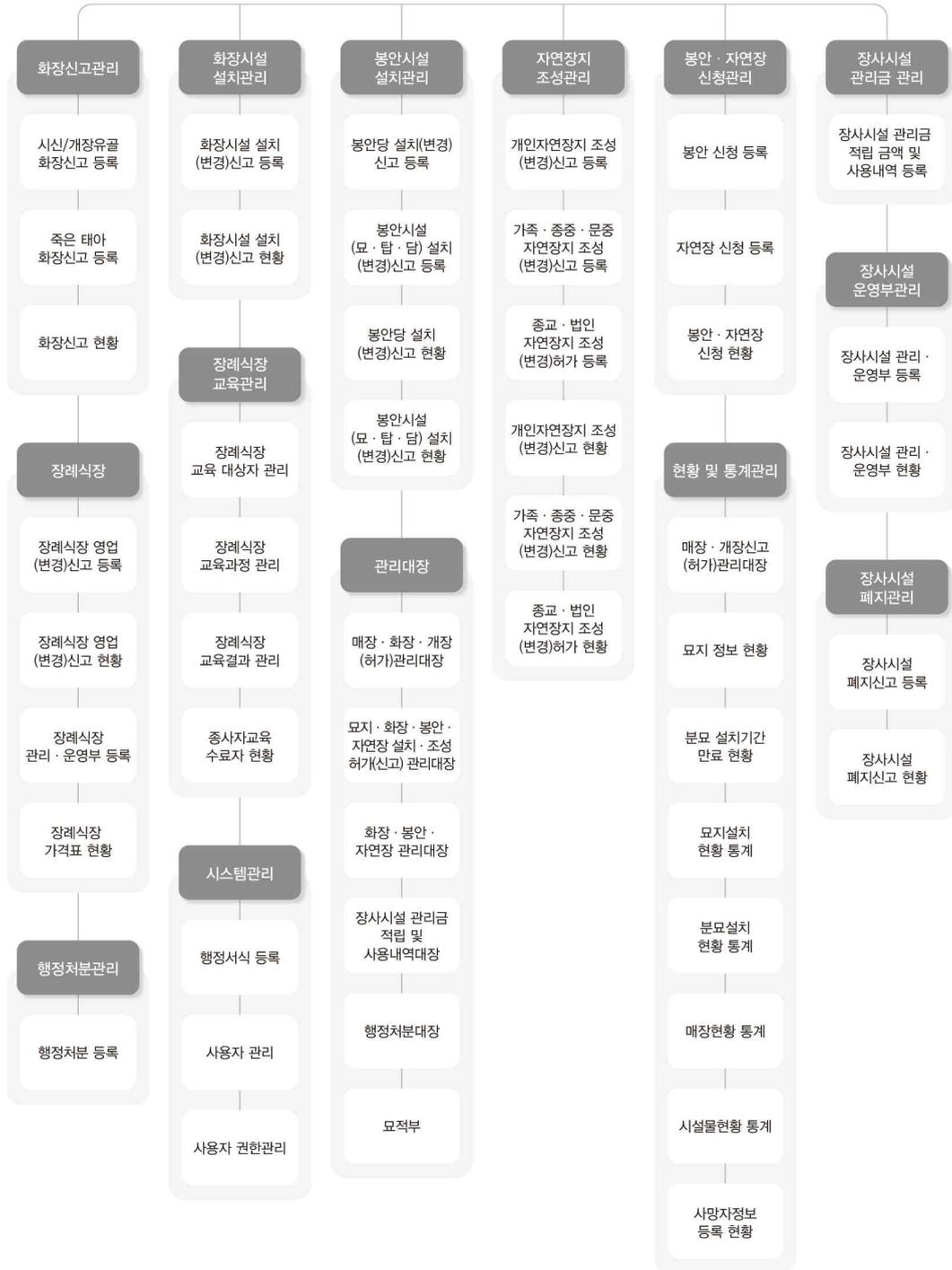
(4) 자연장 관리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자연장관리정보	관리사무소, 자연장지명, 자연장 일자, 자연장 형태 구분, 자연장지 관리번호, 화장 일자, 화장시설, 시설사용 허가기간 등
사망자정보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 구분, 사망장소, 사망사유 등
납부정보	관내·외 구분, 감면대상 구분, 이용요금 구분, 사용료, 관리비 등
신청자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납부자정보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연고자정보	연고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가. 시스템 구성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 인허가 및 매·화장 신고관리 및 장사시설 관리(관리·운영부, 관리금 등)를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 장사행정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다.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

(1)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접속환경 및 인증기능 개선

개선 내용

● 주요 개선 내용

-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와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업무망 서비스 및 본인인증 기능 개선
 -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접속환경 행정업무망 서비스 추가
 - 본인확인을 위한 문자인증 방식 추가

●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인터넷망)

- 프로그램 설치 : <http://work.15774129.go.kr>



※ 프로그램 자동 설치(바탕화면 바로가기 단축아이콘 생성됨)

- 바탕화면에 단축아이콘 생성 및 로그인



-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접속 시 문자인증, 휴대폰/신용카드/범용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2) 각 메뉴별 등록 방법

분묘 실태조사 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관할지역의 분묘 실태조사 시 묘지 정보 등록 및 관련 묘지 이미지 등록·관리

묘지 정보 등록



이미지 정보 등록



XY좌표 일괄 처리

㉓ 묘지 등록 방법

- 사망자, 연고자, 설치자, 관리자, 시설물 설치정보 입력(사망자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그 외 정보는 필요시 입력)
- 자료 조회를 위하여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묘지내역 조회

㉔ 묘지 이미지 등록

- 실태조사 관련 묘지 사진 또는 이미지 자료 등록(필요시 등록)
- 조회 조건을 지정하고 묘지 정보 조회

㉕ X, Y좌표 일괄 처리

- 분묘실태 조사정보를 바탕으로 분묘위치(X,Y) 등록(엑셀자료 일괄 등록 가능)

매장신고 관리

- 지자체(읍·면·동)에서 매장신고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매장신고 내용을 등록
- 개인묘지의 경우 접수 시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함께 하도록 안내하여 개인묘지 설치신고 절차에 의한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매장신고와 설치신고 등록
- 사설(가족·종중·문중·종교·법인)묘지는 개인묘지와는 달리 설치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매장신고 등록

개인묘지 설치신고 등록



매장신고 등록



매장신고증명서 발급

㉓ 개인묘지 설치신고 등록

- “매장신고등록” 화면의 “개인묘지 설치신고” 화면을 이용하여 등록
- 설치자, 관리자 등 설치정보를 입력 후 등록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출력

㉔ 매장신고 등록

- 매장 구분(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에 따라 신고내용 입력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대신 인우보증서(사망증명서)로 매장신고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선택하고 ‘사망진단서 번호’ 및 ‘발급기관명’의 입력은 생략
- 사망자정보 입력 시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사망자정보 확인’을 통해 등록된 정보(사망일자, 주소 등의 사망자정보) 확인
 - ※ 사망자정보는 장사시설(화장시설 등)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및 처리를 통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망자정보확인’을 통해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매장신고서를 근거로 사망자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처리됨
- 매장 구분이 “죽은 태아”인 경우 사산장소, 사산사유, 임신주수와 부(모)정보 입력
- 합장처리를 하려는 경우 ‘합장여부’를 체크한 후, 합장사유와 합장분묘를 선택 하여 합장 처리(합장할 매장정보가 없는 경우, 신규 등록 후 합장처리)
- 신고인 및 연고자의 정보를 입력 후 매장신고 등록

㉕ 매장 신고증명서 발급

- [시신·개장유골 매장신고서],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 증명서 발급

개인묘지 관리

-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개인묘지 설치신고 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변경신고 등록
- 신고 또는 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및 이미지 자료 등록(분묘 위치를 측정한 경우 측정정보 등록 가능)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등록



개인묘지 이미지 등록



개인묘지 위치조사 및
측정값 등록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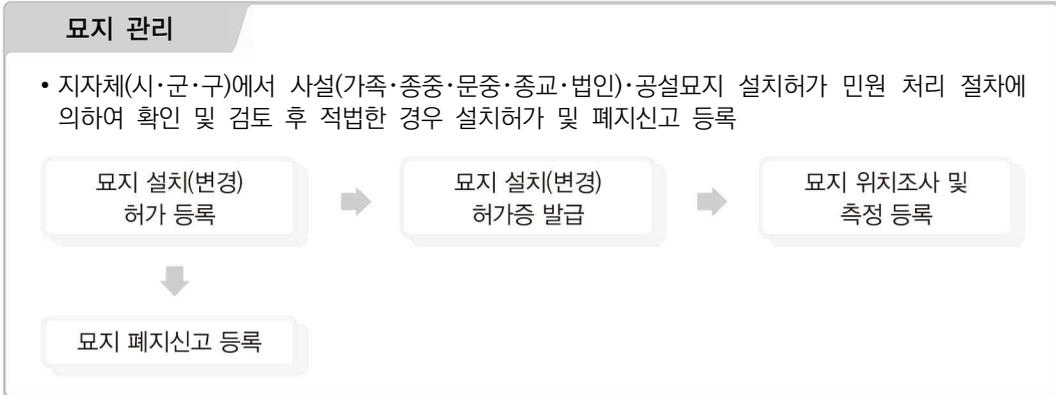
- 변경신고 등록 시 ‘매장정보 가져오기’에서 매장신고 정보를 검색한 후 매장관련 정보 입력
- 묘지, 설치자, 관리자 등 변경된 내용을 입력 후 신고 등록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출력
※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등록은 “매장신고관리” 처리방법에 따라 매장신고와 설치신고 등록

㉡ 개인묘지 이미지 등록

-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설치(변경)신고 정보 조회
-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묘지와 관련된 사진 및 이미지 자료 첨부

㉢ 개인묘지 위치조사 및 측정 등록

- ‘묘지현황조사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묘지현황조사표] 출력(분묘위치 조사 및 측정 업무에 출력된 조사표로 활용)
※ 측정정보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자료(지도, 약도 등)로 대체 가능, 이미지 자료는 “개인묘지 이미지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㉓ 묘지 설치허가 등록

- 분묘 형태와 설치 예정기수 등 묘지 정보 입력
-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 등 허가신청 내용을 입력 후 설치허가 등록

㉔ 묘지 변경허가 등록

-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허가 정보 조회
- 허가 구분을 “변경신고”로 지정하여 설치변경사항을 입력 후 변경허가 등록

㉕ 묘지 설치(변경)허가증 발급

-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변경)허가 정보 조회
- ‘묘지설치(변경)허가증’ 버튼을 클릭하여 [묘지설치(변경)허가증] 발급

㉖ 묘지 위치조사 및 측정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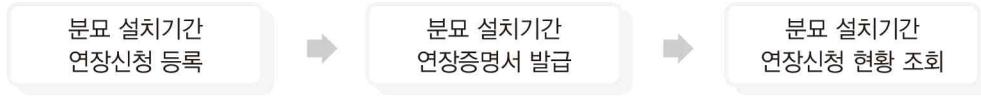
- 묘지 위치 측정정보 입력(필요에 따라 등록)
※ “위치 측정 등록”의 분묘위치 X좌표(위도), Y좌표(경도) 항목은 입력 생략 가능

㉗ 묘지 폐지신고 등록

-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허가 정보 조회
- 폐지일자, 사유 등 폐지내역을 입력 후 장사시설 폐지신고 등록

분묘 설치기간 연장 관리

- 지자체(읍·면·동)에서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후 적법한 경우 연장신청 등록을 하고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발급



- ㉓ 지자체(읍·면·동)에서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후 적법한 경우 연장신청 등록을 하고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발급

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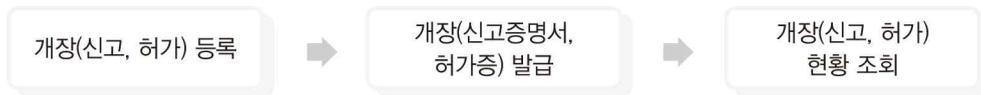
- ‘매장신고정보번호’ 조회를 통해 최초 신고된 분묘 정보를 선택하여 분묘정보 입력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클릭하여 연장증명서 발급
※ ‘연장정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연장신청 이력 조회 가능

㉕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현황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현황 조회를 위하여 신청일자, 시설 구분 등 조회 조건을 지정 후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현황 조회

개장 관리

- 지자체(읍·면·동)에서 개장신고(허가)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개장신고(허가)를 등록,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㉖ 개장(신고/허가) 등록

- ‘매장신고정보번호’에서 매장신고정보를 조회하여 최초 신고된 분묘 정보 선택
※ 기 등록된 매장신고 정보가 없는 경우 [매장신고가 없는 경우 체크 해제를 선택하고 분묘 정보 등록
- 신고/허가 신청정보를 입력 후 개장(신고/허가) 등록
- ‘개장신고/개장허가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㉗ 개장(신고/허가) 현황

- 개장(신고/허가) 등록된 자료 조회를 위하여 신청일자, 시설 구분 등 조회 조건을 지정 후 개장(신고/허가)현황 조회

화장신고 관리

- 지자체(읍·면·동)에서 시신·개장유골, 죽은 태아의 화장신고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정보를 등록하고, 입력된 정보를 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신고 현황 조회



㉓ 시신·개장유골 화장신고 등록

- 사망자정보 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망자정보 확인’을 통해 “화장신고 등록” 화면에서 사망일자, 주소 등의 사망자정보 항목 확인
- 사망자 및 신고인 정보 등 화장신고 정보 등록
- ‘시신·유골화장신고서’ 및 ‘화장 증명서’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 ※ ‘화장접수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화장시설에서 접수 처리된 자료 선택 후 화장 접수된 사망자 및 신고인 정보 입력 가능

㉔ 죽은 태아 화장신고 등록

- ‘신규’ 버튼 클릭 후 죽은 태아 화장신고 등록
- 죽은 태아 및 부(모), 신고인 정보 입력 후 화장신고 등록
-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 및 ‘화장 증명서’를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㉕ 화장신고 현황

- 화장신고 등록된 자료 조회를 위하여 신고일자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화장신고 현황 조회

화장시설 설치 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설치(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정보 등록
- 신고 또는 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등록 가능



- 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설치자, 관리인, 신고인 정보 및 설치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화장시설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 화장시설의 사진첨부 필요 시 [사진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방안시설 설치 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방안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설치(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정보 등록
- 신고 또는 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등록 가능



㉓ 방안당 설치(변경)신고 등록

- 방안당 설치(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설치자, 관리인, 신고인 정보 및 설치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방안시설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방안당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방안당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㉔ 방안시설(방안묘·방안탑·방안담) 설치(변경)신고 등록

- 방안시설(방안묘·방안탑·방안담) 설치(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설치자, 관리인, 신고인 정보 및 설치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방안시설(방안묘·방안탑·방안담)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방안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방안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자연장지 조성 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조성(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정보 등록
- 신고 또는 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 등록 가능



㉓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등록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사망자,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조성변경사항 등의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개인자연장지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㉔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등록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 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조성변경사항 등의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 발급

㉕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등록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등록하는 경우, '허가 구분'(조성허가, 변경허가,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조성변경사항 등의 정보 등록
- 기 허가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의 허가내역 조회
- 허가처리 완료 시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증] 발급

㉖ 장사시설 조성(변경)신고/허가 등록 현황 조회

봉안·자연장 신청관리

- 지자체(읍·면·동)에서 봉안·자연장지 신청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봉안 증명서 및 자연장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봉안 및 자연장 신청정보를 등록, 관리

봉안·자연장 신청정보 등록



봉안·자연장 증명서 발급

㉓ 봉안 신청정보 등록

- 봉안신청 등록 시 사망자 및 신고인 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봉안시설 선택
- 신청등록 완료 시 '봉안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봉안 증명서] 발급
 - ※ 관할지역 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화장시설·봉안시설이 있는 경우, '화장정보 가져오기', '봉안접수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접수정보를 선택하여 "신청정보등록" 화면의 사망자 및 신청자 항목 입력 가능

㉔ 자연장 신청정보 등록

- 자연장신청 등록 시 **사망자정보** 및 신고인 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자연장지 선택
- 신청처리 완료 시 '자연장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 증명서] 발급
 - ※ 관할지역 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화장시설·자연장지가 있는 경우, '화장정보 가져오기', '자연장접수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의 접수정보를 선택하여 "신청정보등록" 화면의 사망자 및 신청자 항목 입력 가능

㉕ 봉안·자연장 신청 현황 조회

장사시설 관리금 관리

- 지자체(시·군·구) 관할 장사시설에서 e하늘 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관리금 적립 금액 현황의 연 단위 조회 또는 접수한 관리금 적립 금액 내역의 등록 및 관리
 - ※ 방문 접수한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 장사업무 담당자가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등록 가능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등록
(e하늘 포털)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접수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사용 내역서
출력

㉓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등록

- 장사시설은 e하늘 포털을 통해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제출

㉔ 장사업무 담당자는 관할 행정구역 내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조회

㉕ 접수처리 완료 시 '사용내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 ※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대장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등록/폐지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관할 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폐지신고 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후 적법한 경우 폐지신고 등록 및 관리
- 관할 장사시설에서 e하늘 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관리·운영부의 연 단위 조회가 가능하며, 접수한 관리·운영부 내역의 등록 및 관리
 - ※ 방문 접수한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 장사업무 담당자가 관리·운영부 등록 가능

장사시설 설치(변경) 등록



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등록

㉓ 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등록

- 장사시설은 e하늘 포털을 통해 관리·운영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장사업무 담당자는 관할 장사시설에서 제출한 관리·운영부를 시설종류 (묘지, 봉안 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시설명, [신고연도](#) 등으로 지정하여 조회
- 제출된 관리·운영부를 확인하여 접수 구분을 [접수완료]로 변경하여 접수처리
- 접수처리 완료 시 '장사시설운영부'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 ※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상세내역첨부]를 통해 첨부

㉔ 장사시설 폐지신고 등록

- 관할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시설종류, 시설명, 신고기간 등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장사시설을 조회하고 해당 장사시설의 폐지신고 등록
 - ※ “가족·종중·문중·종교·법인묘지관리”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설치(조성)관리” 화면에서 장사시설을 선택하여 폐지신고 등록 가능

행정처분 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된 시설을 조회하거나 처분 내역을 등록 및 관리

행정처분내역 조회



행정처분내역 등록

- 행정처분된 시설 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분할 시설을 선택하여 행정처분내역 등록(처분일자,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
- 행정처분내역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대장관리 가능

관리대장

- 매장·화장·개장 신고/허가,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묘적부 등 관리대장 조회

신고/허가, 묘지, 분묘 현황



관리대장 및 묘적부 조회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별도 대장관리 가능

장례식장 관리(영업신고)

- 지자체(시·군·구)에서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및 검토 후 적법한 경우 영업(변경)신고 정보 등록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등록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서 및
신고 확인증 발급**㉓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등록**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영업, 변경, 폐업)을 선택하고 영업자(대표자), 관리인, 신고인 및 영업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신고내역 조회

㉔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처리 완료 후 '영업(변경) 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발급
- '신고 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확인증] 발급

장례식장 관리(관리·운영부 및 가격표)

- 지자체(시·군·구)에서 관할 장례식장의 관리·운영부 등록 및 전국 장례식장의 품목별 장례용품 가격 정보 조회

장례식장 관리·운영부 확인 및 접수



장례식장 가격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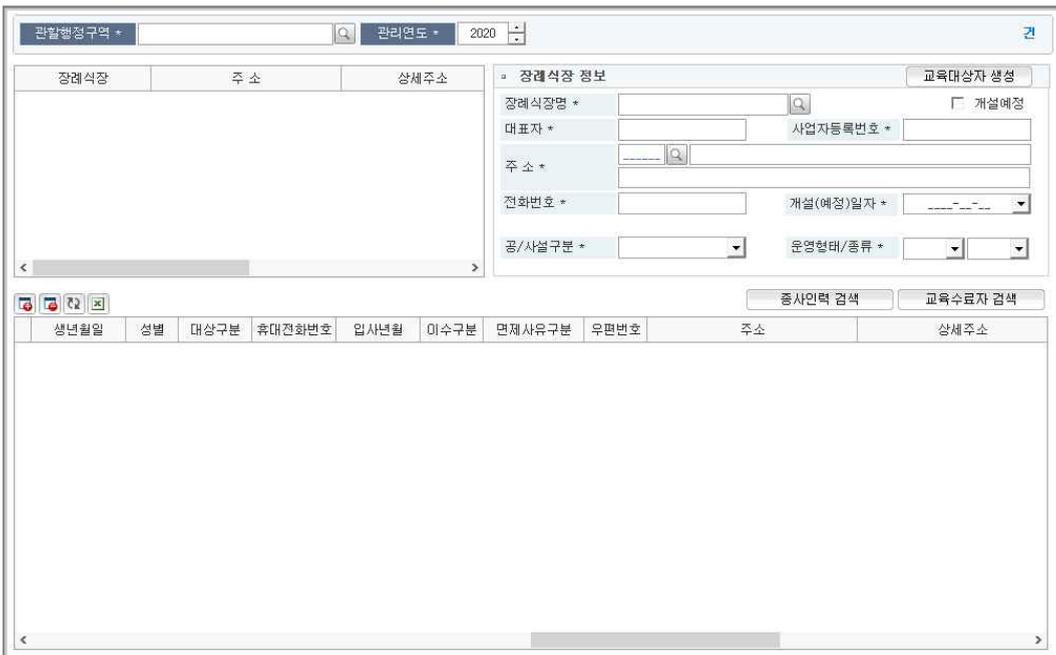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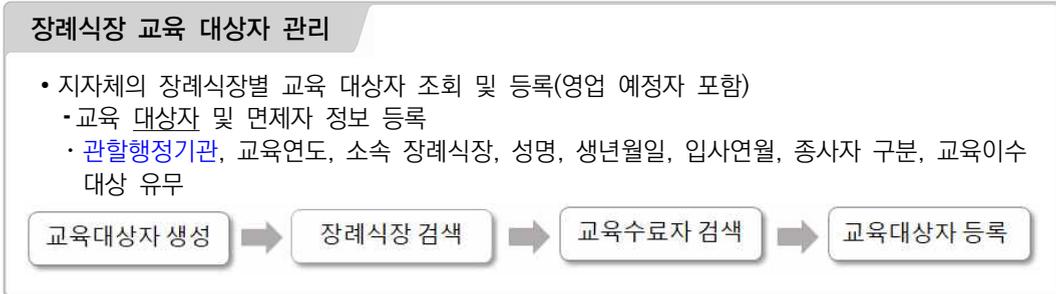
㉕ 장례식장 관리·운영부 등록

- 장례식장은 e하늘 포털을 통해 관리·운영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장사업무 담당자는 관할 장례식장에서 제출한 관리·운영부 현황 조회 ([신고연도](#), 시설명 등 선택)

- 장례식장 관리·운영부를 확인한 후 접수 구분을 [접수완료]로 변경하여 접수처리
- 접수처리 완료 시 '장례식장운영부'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 ※ 접수 구분을 [접수완료]로 변경하면 해당 장례식장 담당자는 e하늘 포털을 통한 수정 불가
 - ※ 염습·위생처리내역과 관련한 상세내역을 첨부하려는 경우 '염습·위생처리내역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 ※ 방문 접수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부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장사행정지원시스템에 직접 등록 가능

㉞ 장례식장 가격표 현황

- 전국 장례식장에서 e하늘 장사정보 포털을 통해 등록된 장례용품 가격 조회
- 장례식장 가격표 현황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대장관리 가능



㉓ 교육 대상자 생성(자동생성 기능)

- 관할 행정구역, 관리연도를 지정하고 [교육대상자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대상 시설(장례식장) 및 종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 ※ 단, 장사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된 시설(장례식장)과 종사인력 정보는 자동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교육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여야 함

㉔ 장례식장 검색 및 등록

- 관리연도를 지정하고 [장례식장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교육대상 장례식장을 선택하며, 선택된 장례식장의 정보는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됨
- 장례식장의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일반정보 확인 및 수정
 - ※ 설치·운영 예정자의 경우는 [영업예정] 항목을 선택하고 일반정보 입력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㉔ 교육 수료자 검색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수료자 현황을 검색하여 교육 대상자 등록
- 관할행정기관, 수료자명, 장례식장명, 교육기관명으로 검색
 - ※ 장사지원센터에서 교육실시기관의 수료자 명단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기능으로 교육결과 확인 및 대상자 등록에 활용

㉕ 교육 대상자 등록

- 교육대상 장례식장별로 대상자(영업자, 종사자, 영업 예정자) 정보 등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영업자, 종사자, 영업 예정자) 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록
 - ※ 이수 구분은 최초 교육대상 또는 교육면제를 선택하며, 교육면제를 선택하는 경우 면제사유를 선택하여야 함

장례식장 교육과정 관리

- 지자체의 자체 개설 과정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개설 교육과정 등 연간교육과정 정보 관리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등 개설 교육과정 소개 정보 등록

연간교육과정 생성 → 교육과정 정보 입력 → 교육과정 소개 입력 및 안내 첨부

관할행정구역 *		관리연도 * 2020		건	
교육년도	기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시작일자	교육종료일자
				교육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비
					관할행정기관
<p>▣ 교육과정 정보</p> 관리연도 * 교육기수 * 교육대상 *			<p>▣ 교육과정 소개</p>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	~	-----	교육시간	: :
신청기간 *	-----	~	-----	이수시간	: :
교육기관명 *			정원		
교육담당부서			교육비		
교육담당자					
문의/연락처					
연간교육과정 생성 교육과정안내장 첨부					

㉓ 연간교육과정 생성(자동생성 기능)

- 관할 행정 구역, 관리연도를 지정 하고 [연간교육과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과정(영업자, 종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 ※ 단, 자동생성된 과정정보가 지자체의 자체 개설 과정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개설 교육과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추가·변경 등록하여야 함

㉔ 교육과정 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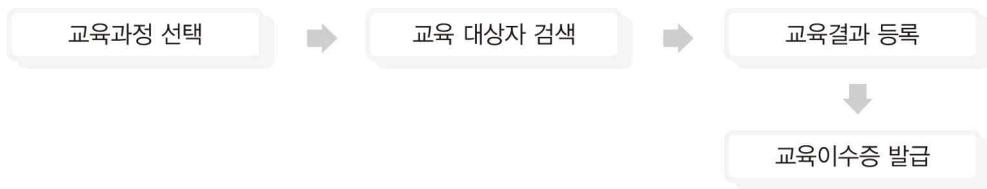
- 교육과정의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문의/연락처, 정원 등의 일반적인 정보 입력
 - ※ 소속 장례식장의 영업자·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한 교육실시기관의 과정 입력

㉕ 교육과정 소개 입력 및 안내 첨부

- 해당 교육과정 소개 정보 입력
- 지자체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안내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관리
 -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인 경우, 교육과정 소개는 과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술

장례식장 교육결과 관리

-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자의 교육결과 등록하고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과정 선택과 교육 대상자 검색을 통하여 이수정보 등록
 - 교육이수증 출력(인쇄) 및 파일 다운로드



㉖ 교육과정 선택

- 교육과정 관리에서 등록된 교육과정이 조회되면 이수자 등록을 위한 과정 선택

㉗ 교육 대상자 검색

- [교육 대상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조건(영업자, 종사자, 영업 예정자)과 성명으로 교육 대상자에 등록된 이수자를 검색하여 등록

㉘ 교육결과 등록

-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등 이수자의 인적사항과 이수여부(교육이수, 교육면제) 등록

㉔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결과의 [이수여부]가 교육이수로 등록된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 ※ 교육이수증의 발급번호는 자동으로 연번이 생성되며, 수정 불가

교육실시기관 교육 수료자 현황

-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전국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수료자 명단 조회
- 관할행정기관, 수료자명, 장례식장명, 교육기관명으로 수료자 현황 조회
 - ※ 장사지원센터에서 교육실시기관의 수료자 명단을 취합하여 제공

장례식장 직원(교육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e하늘」의 장사시설 정보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장례식장 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직원 인적사항 등록 가능
-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의 직원 인적사항 정보를 참조하여 매년 교육 대상자를 등록하여 확정
 - ※ 지자체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 확정 전에 장례식장에서 등록된 직원명단이 정확한지 지도·감독

자료관리

-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신고/허가 등 매·화장 관련 과거자료 등록 관리



- “과거자료실”에서 [자료등록] 버튼 클릭 후 보유하고 있는 신고/허가 등의 과거자료(파일) 등록
- [관할 행정구역](#) 및 유형별 조회 가능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가. 시스템 구성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사망자정보 등록 의무화에 따른 장사시설(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가능
- 사망자정보 유관기관 제공에 따른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업무 등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기여

다.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 장사시설에서 등록된 사망자정보 수집 관리
- 주요기능
 - 사망자정보 :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이용일자,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 유족 등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 ※ 사망자가 해당 시설로 최초 왔을 때 1번만 입력

사망자정보 등록

▶ 사망자 정보 입력 (* 필수입력)

시설선택	제천시영원한실터봉안당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시신 <input type="radio"/> 개장유골 <input type="radio"/> 무연고
국적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국내 <input type="radio"/> 해외	성별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input type="radio"/> 미확인
사망자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실명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실명인증안내"/>
사망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input type="button" value="도로명주소"/> 	봉안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고인주소와 동일"/>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input type="text"/>		

▶ 유족 등 정보 입력 (* 필수입력)

국적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국내 <input type="radio"/> 해외	성별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망자와의 관계	<input type="text"/>	전화번호	010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input type="button" value="도로명주소"/> <input type="button" value="고인주소와 동일"/> 		

라. 사망자정보 이력관리

- 사망자정보 등록내용 상세조회
- 주요기능 : 사망자정보 최초 등록일, 등록시설, 정보변경이력 현황 등 관리
※ 사망자정보 최종 등록시설 등 이력 추적관리 기능

사망자정보 이력

등록일자 2016-02-19 ~ 2016-02-22
사망 일자
사망관리번호
사망자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록자	등록일자

▶ 사망자 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구분
주소	
사망증명서발급기관	사망증명서 번호
매화장 구분	
매장지관할구역	
등록/수정자	등록/수정시설

▶ 연고자 이력

등록일	등록시설	등록자	국적	연고자	주민번호

▶ 사망정보 수정이력

사망일자	우편번호	주소	매화장구분	매장지관할구역	사망진단서발급기관	사망문서번호	등록/수정자	등록/수정 시설

마. 사망자정보 제공

- 장사시설에서 수집된 사망자정보 유관기관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現 사망자정보 제공 기관(10개 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통계청, 사회복지 통합망

7 민원지원시스템

가.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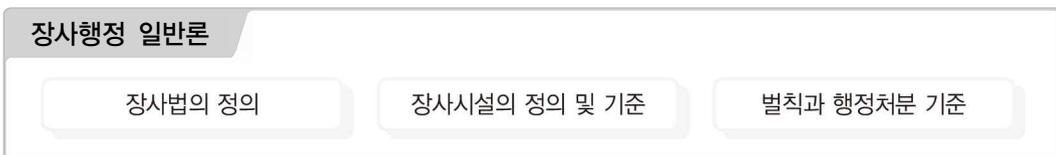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장사관련 표준 민원사례 관리
- 장사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공유
- 장사 민원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다. 민원지원시스템 이용방법

(1) 장사행정 일반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및 기준사항 정보 제공

(2) 민원사례 검색



- 민원사례 정보 통합검색
 - 검색유형 : 전체, 사실관계,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검색 가능

민원사례 검색

전체 다빈도 온나라 신문고 전체

전체 (300건)	매장/묘지 (92건)	화장 (15건)	개장 (71건)	봉안사실 (40건)	자연장(수목장) (46건)	무연고서신 (12건)	장례식장 (20건)	장례지도사 (0건)	행정처분 (0건)	기타 (4건)
-----------	-------------	----------	----------	------------	----------------	-------------	------------	------------	-----------	---------

총 (300건)

【 장례식장 】 【 시설-설비-안전기준 】

장례식장 시설 기준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16 | 유형 : 공개 | 원본출처 : 신문고

【 장례식장 】 【 장례식장 영입자 교육 】

장례식장 영입자 교육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29 | 유형 : 공개 | 원본출처 : 신문고

【 장례식장 】 【 공설장례식장 】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7 | 유형 : 공개 | 원본출처 : 신문고

(3) 장사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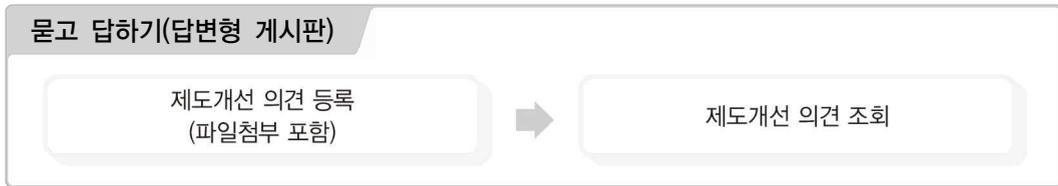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행정업무 관련 법령 바로가기(Link) 서비스

장사관련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농지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학교보건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건축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부동산등기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민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

- ※ 장사업무 관련법률 바로가기(Link) 서비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 ※ 관련법률 추가 시 1577-4129로 요청

(4) 제도개선 의견(게시판)



제도개선 의견 게시판

제목	<input type="text"/>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100px;"></div>
첨부파일(최대 3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

- 민원업무 행정처리 사례(유권해석 등) 및 제도개선 의견 등록

8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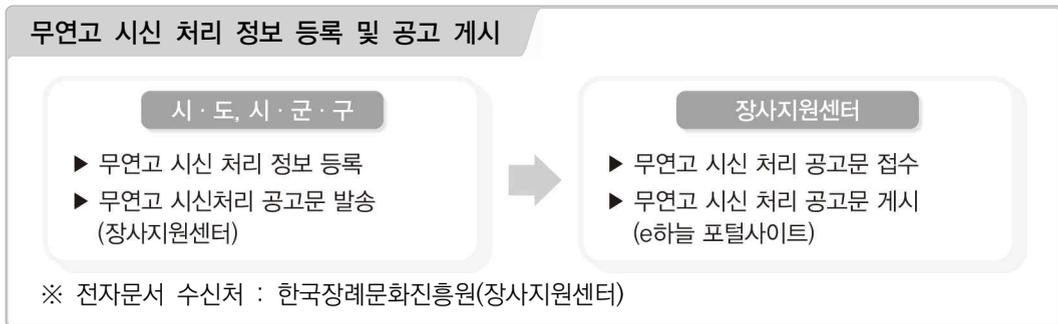
가. 시스템 구성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지자체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통합 관리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게시(e하늘 포털사이트)

다.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및 공고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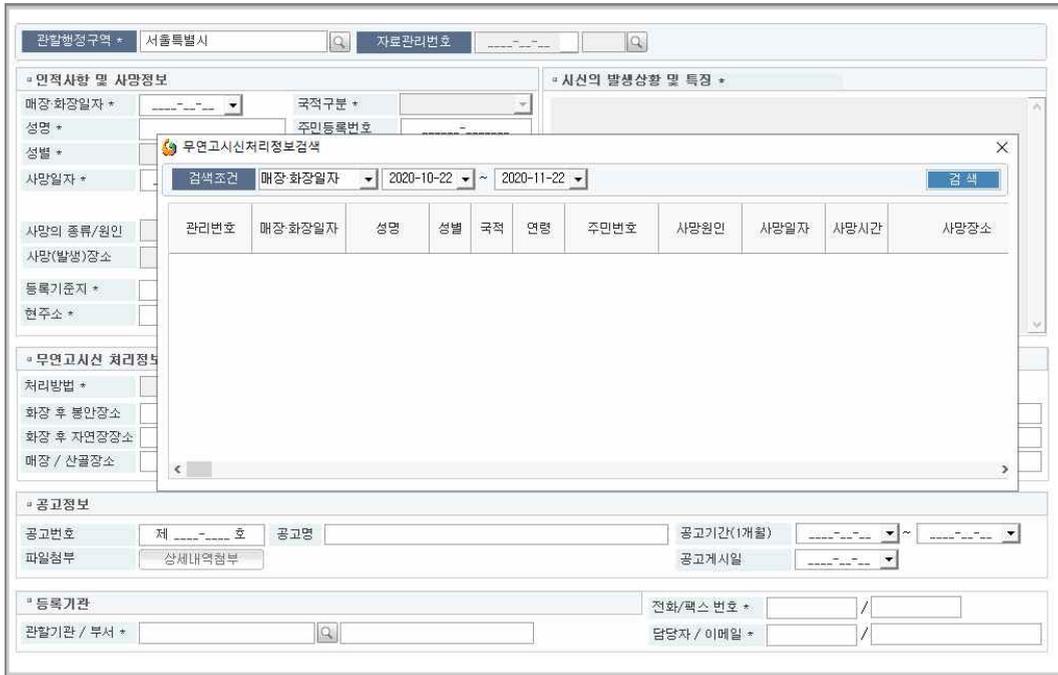
(1)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 인적사항 및 사망정보,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공고내용, 등록기관을 등록
 ☞ [장사행정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 ⇨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 무연고 시신 처리 통계 등록(상반기는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①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등록을 위하여 신규  버튼을 클릭
- ② 인적사항 및 사망자정보 등록
 - **매·화장일자**, 국적구분(내국인/외국인/미상), 성명, 주민등록번호(알 수 없는 경우 미등록), 성별(남자, 여자, 미상), 연령(10대 미만~미상), 등록기준지(주소 검색), 현주소(주소 검색), 사망일자(연월일), 사망시간(시, 분), 무연고 시신 구분(연고자 없음, 연고자 알 수 없음, 인수거부/기피), 사망원인, 사망(발생)장소(주소 검색, 수기 등록), 시신의 발생상황 및 특징(수기 등록)
 - ※ **매·화장일자** :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기준일자로서 화장, 매장 등 장례처리 일자를 입력함 (단, 과거자료 등록 시 자료 부존재인 경우 사망일자로 입력)
 - ※ 진단서상에 사망일자가 미상인 경우 시신 발견일자로 입력
- ③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 처리방법(봉안·자연장·매장·산골), 기간(5년 단위 자동 계산 가능), 처리방법(화장 후 봉안, 화장 후 자연장, 매장, 산골), 전화번호/팩스
- ④ 공고정보
 - 공고번호, 공고명, 공고게시일(연월일), 공고기간(1개월 단위 자동 계산), 공고문 파일 첨부(HWP 한글파일)
- ⑤ 등록기관
 - 관할기관/부서(행정구역/부서), 전화번호/팩스, 담당자, 이메일
- ⑥ 저장 

(2)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조회/수정

- 기 등록된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는 [자료관리번호] 조회 기능을 통해 조회한 후 내용 수정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게시 의뢰 : 공고문 등 전자문서(“수신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발송



- ①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조회를 위하여 버튼을 클릭
- ②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검색
 - 검색조건(매·화장일자, 사망자명, 사망일자, 공고번호, 공고기간)



- ③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 인적사항 및 사망자정보(시신의 발생상황 및 특징 등), 무연고 시신 처리정보, 공고정보, 등록기관
- ④ 수정

(3)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게시

- e하늘 포털사이트(www.ehaneul.go.kr)의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에 게시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게시 의뢰 : 공고문 등 전자문서(“수신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발송

← 새소식
무연고게시
FAQ →

전체
▼
내용포함

검색

전체 227건, 현재 페이지 1/23
공고번호 | 공고일자

번호	공고명	관할행정기관	공고번호	공고일자	첨부	조회수
227	경기도 연천군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경기도 연천군	제2019-9호	2019.07.19		16
226	경기도 연천군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경기도 연천군	제2019-9호	2019.07.19		12
225	전라북도 군산시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전라북도 군산시	제2019-9호	2019.02.12		38
224	경기도 연천군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경기도 연천군	제2019-9호	2019.07.19		10
223	충청북도 보은군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충청북도 보은군	제2019-99호	2019.07.19		20
222	경기도 기흥구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제2019-99호	2019.11.15		14
2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2019-99호	2019.09.25		12
2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2019-99호	2019.09.11		9
219	전라북도 군산시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전라북도 군산시	제2019-99호	2019.05.15		25
218	부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제2019-99호	2019.08.29		38

※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및 공고 게시 관련 문의 1577-4129

(4)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조회

- 검색조건(매장·화장일자, 사망자명, 사망일자, 공고번호, 공고기간)을 입력하여 조회

▶ ESKY>장사행정지원>무연고시신처리관리>무연고시신처리정보조회 [GM_W_WithoutFamilyMgmtList]

관리행정구역 서울특별시 검색조건 매장·화장일자 2020-10-15 ~ 2020-11-22 1 건

관리번호	매장·화장일자	무연고시신구분	성명	성별	국적	사망일자	주민번호	사망원인	사망일자	사망시간	사망장소	
202010200018	2020-10-16	연고자 없음		남자	내국인	62	80세~64세		파열중	2020-10-09	15:02	복십자요양병원(금천구 시화

(5)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현황

● 매·화장일자 기간을 지정하여 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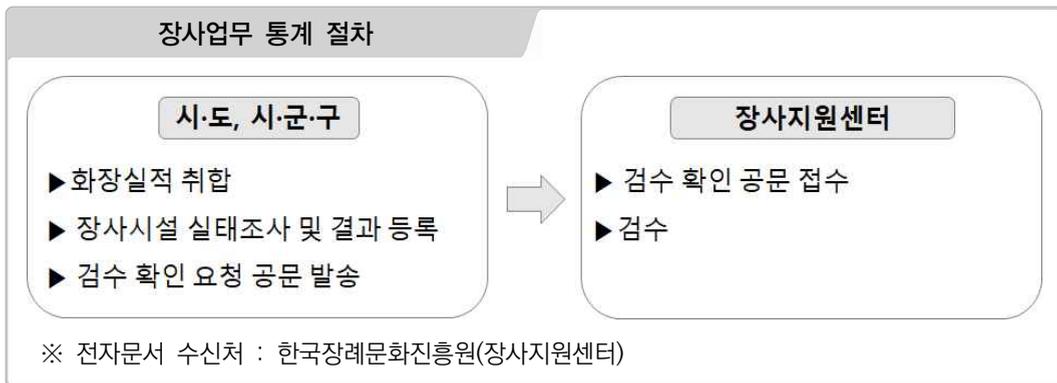
관할행정구역 + 서울특별시		매장·화장일자 + 2020-10-01 ~ 2020-10-22		총 계																26 건
순번	시도	시군구	남				여				미상 및 기타				전체합계					
			①	②	③	계	①	②	③	계	①	②	③	계	①	②	③	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1		1										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1			1			1	1					1		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 등록 및 공고 게시 관련 문의 1577-4129

9 장사업무 통계(화장 및 장사시설)

가. 장사업무 통계 기초자료(화장시설 실적, 장사시설 실태) 등록 절차 안내

- 화장시설 실적자료 및 장사시설 현황자료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장사행정지원 → 보고자료 작성”에 등록하고,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확인 공문 시행



나.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화장 등 장사관련 기초정보 통합관리·활용

다. 장사업무 담당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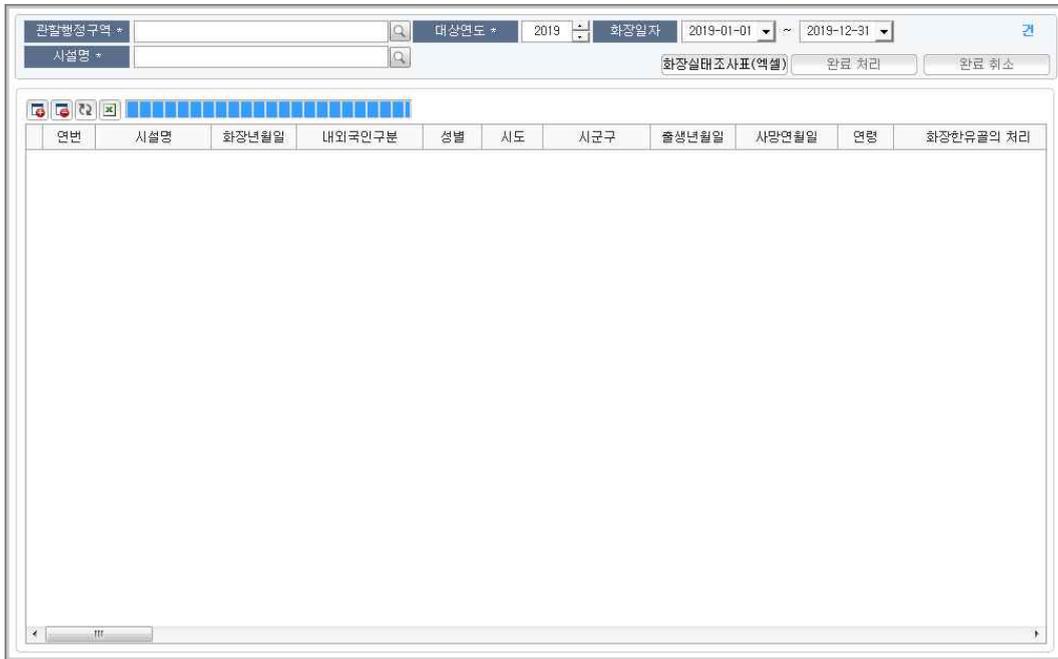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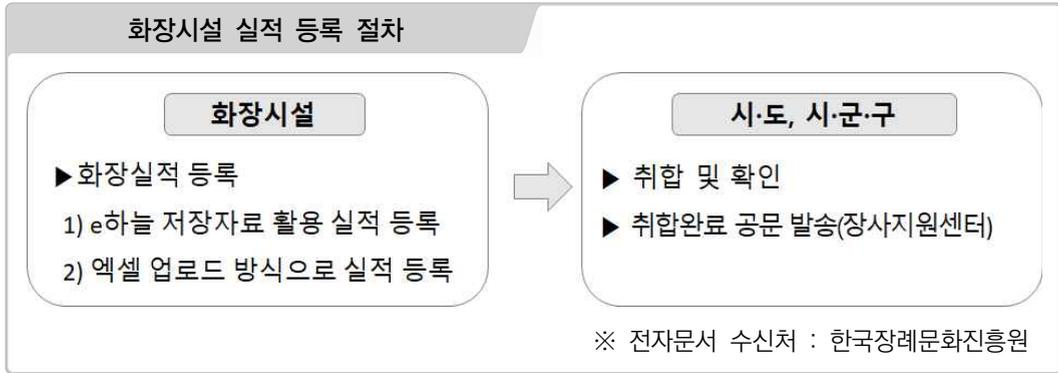
- [대상연도\(2020년\)](#)를 지정하여 해당 시·군·구의 [현재\(2021년 등록시점\)](#) 장사업무 담당자 정보(부서, 성명, 연락처 등) 등록



- ① 대상연도(2020년) 지정 [조회] 클릭
 - ② 관할 행정구역(해당 시·군·구)의 장사업무 담당자 정보만 등록, 관리할 수 있고, 버튼을 이용하여 자료의 추가, 삭제
 - ③ 저장
- ※ **전국 장사담당자 현황** 을 클릭하여 전국 장사담당자 현황 확인 가능

라. 화장시설 실적자료(화장실태 조사표) 등록

- 화장시설 실적 등록(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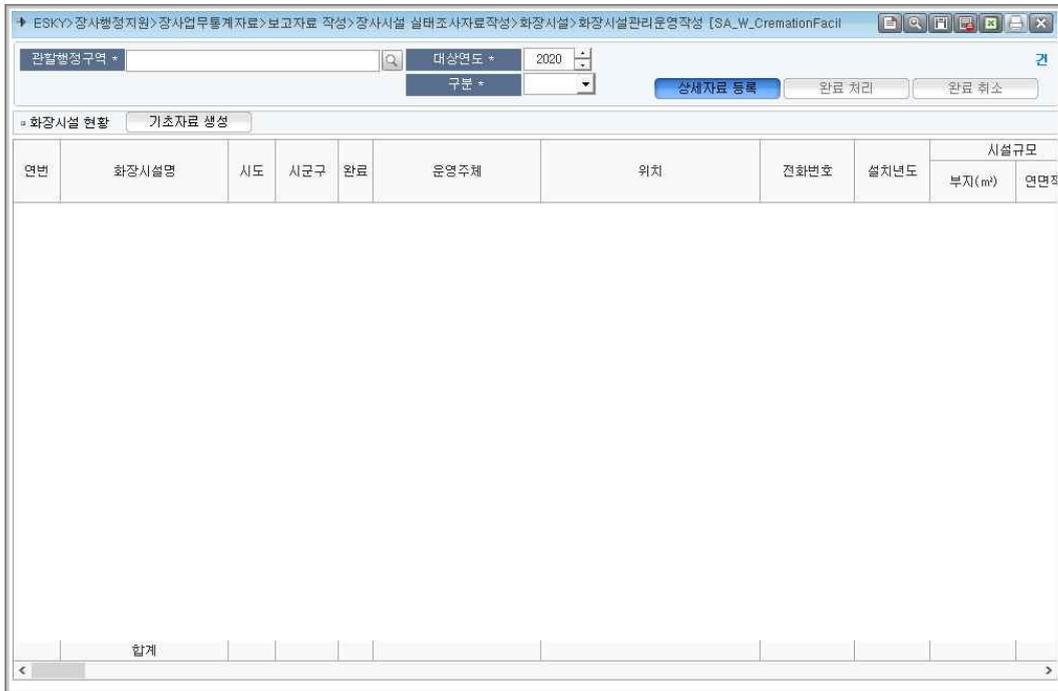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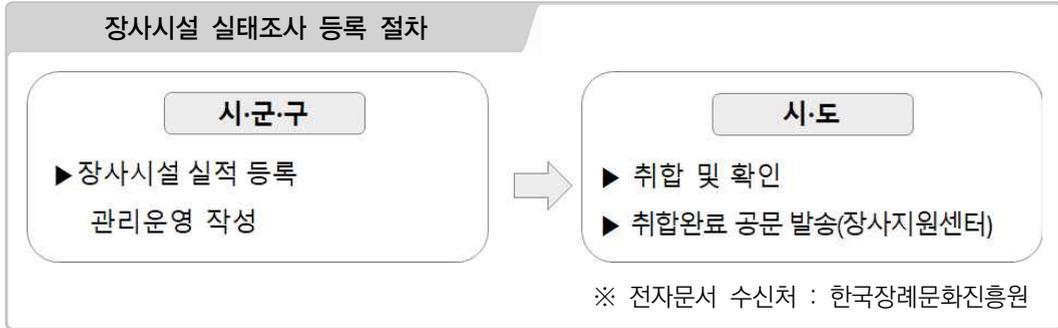
- ① 화장시설 담당자가 실적을 등록
- ② **관할** 행정구역(해당 시·군·구)의 **장사업무 담당자**가 취합 및 시·도 제출
 - ※ 취합 및 확인 절차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장사지원센터)
- ③ 단, 자체 시스템에서 화장정보를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엑셀조사표” 등록
 - 화장대상(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별 **2020** 화장실태 조사표 Upload 엑셀자료를 참조하여 실적자료 등록(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용인, 서남권, 창원상북, 구미, **함안, 원주, 남해** 등)

● 등록 시 주의사항

- <화장시설 입력번호> 시트를 참고하여 해당 화장시설의 입력번호를 정확하게 입력(2020년 화장 실태 조사표의 입력번호 참고)
 - 내/외국인 구분에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 국적불명 등의 미상은 9로 입력
 -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 성별미상은 9로 입력
 - <시신> 주소 입력 시 화장신고서를 참고하여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입력번호 입력(2020년 화장실태 조사표의 입력번호 참고)
 - 연령별 화장률 산출을 위하여 만 나이 필요. 출생연월일과 사망연월일을 각각 8자리로 입력
예) 1958년 1월 1일 출생한 경우 : 19580101
2010년 12월 1일 출생한 경우 : 20101201
2012년 6월 1일 사망한 경우 : 20120601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미상인 경우 : 9
 - 연령 셀(16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생연월일과 사망연월일 입력 시 자동으로 만 나이가 계산됨 (17)셀부터는 (16)셀의 수식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됨
※ 출생연월일과 사망연월일 둘 중 하나라도 미상일 경우, 연령에 999 입력
-

마. 장사시설 실태조사 자료(장사시설 실태조사표) 등록

- 장사시설 실태조사 등록(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장례식장) 절차



- ① **관할** 행정구역(해당 시·군·구)의 **장사업무 담당자**가 취합 및 시·도 제출

※ 취합 및 확인 절차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장사지원센터)

NO	시설구분	메뉴명	특이사항
1	화장시설	화장시설 관리운영 작성	· 시설구분(공설, 사설) 선택
2	묘지	공설묘지 관리운영 작성	· 관리비, 사용료 참조는 과거자료 조회용 항목 (작성 불필요)
3		법인묘지 관리운영 작성	
4		개인묘지 관리운영 작성	
5	가족/종중묘지 관리운영 작성	가족/종중묘지 관리운영 작성	· 시설구분(가족, 종중) 선택 · 개소수, 면적, 기매장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매장구수는 '20년 매장건수
6		공설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	· 기봉안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봉안실적은 '20년 봉안건수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 관내, 관외 참조는 과거자료 조회용 항목 (작성 불필요)
7		법인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	· 기봉안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봉안실적은 '20년 봉안건수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 사용료, 관리비 참조는 과거자료 조회용 항목 (작성 불필요)
8	봉안시설	종교단체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	· 기봉안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봉안실적은 '20년 봉안건수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9		개인, 가족, 종중·문중봉안시설 관리운영 작성	· 기봉안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봉안실적은 '20년 봉안건수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10	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관리운영 작성	· 자연장지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 기자연장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자연장 실적은 '20년 자연장 건수 · 관내, 관외 참조는 과거자료 조회용 항목 (작성 불필요)
11		사설자연장지 관리운영 작성	· 자연장지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 기자연장구수는 '20년 포함 누적 수치 · 자연장 실적은 '20년 자연장 건수
12	장례식장	장례식장 관리운영 작성	· 명칭 : e하늘에 등록된 장례식장 명칭 예) ○○○병원장례식장 · 위치 : 시군구 생략 없이 도로명주소 전체 · 임대료 : 일반빈소 기준 · 임대료, 안치료 참조는 과거자료 조회용 항목 (작성 불필요)
13	공동묘지	공동묘지 현황	· 개소수 : 마을 또는 지역별로 집단으로 조성된 공동묘지의 수 · 추정면적 : 대략적인 면적

● 등록 시 주의사항

- 데이터 입력 시 숫자의 앞 또는 뒤에 스페이스바(공백), 콤마(.) 등 입력 금지
- 데이터 입력 시 위 행과 동일표시 [~] 입력 금지
- 전화번호 입력서식 : 031-440-9618
- 날짜 입력서식 : 2001-01-01
- [설치연도](#) 등 [연도](#)만 입력하는 셀에 월, 일 입력 금지
- 위치, 주소 등은 반드시 읍면 이하 주소만 기재(시군구명 생략)
- 시도(경기, 충남), 시군구(김포시, 화성시, 유성구) 형식으로 입력
- 장사업무 관련 용어에 맞게 작성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의 단위 : 개소
- 시설물(분묘, 봉안묘(탑,담)) 단위 : 기
- 유골, 시신의 단위 : 구

• [개인, 가족, 종중묘지는 개별신고\(허가\)내역이 아닌 시군구별 총계만 작성](#)

- 자연장지 유형 : ‘수목장림’과 ‘수목형 자연장지’ 구분에 주의
 ※ 수목장림 : 산지일시사용 신고여부 확인, 지목(임야) 확인 등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1	화장시설	- 화장로 수는 2020년 말 현재 화장로가 설치된 현황임 ※ 운영화로와 예비화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형 시신 화장 을 위한 별도의 화장로나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가 있는 경우 오른쪽 비고란에 관련사항 기재 - 2021년 증감 계획에는 2021년 3월 현재 공사 진행 중이거나 2021년도 증축(설) 또는 폐쇄 계획을 간략히 기재 - 산골장소 제공 여부에는 제공할 경우 “여”,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 기재 - 관리인원 : 비공무원(기간제, 상근, 무기계약, 일시사역, 민간인 등), 이하동일 - 최근 산증축 연도 : 최초 설치 이후 이전신축 또는 대규모 증개축 연도
2	공설묘지	- 관리비는 관내 기준, 1년 단위로 환산한 기준
3	법인묘지	- 관리비는 관내 기준, 1년 단위로 환산한 기준
4	개인묘지	- 시군구별 총계만 작성
5	가족묘지	- 시군구별 총계만 작성
6	종중묘지	- 시군구별 총계만 작성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7	공설 봉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u>부과기준 기재 (눈높이단 기준)</u> 예) 사용료가 15년 기준으로 책정되면 '사용료15' 기재, 관리비가 5년 기준으로 책정되면 '관리비5' 기재 - 최대이용기간(년) : 연장기간 모두 포함하여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기재 예) 최대 60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60' 기재 - 감면혜택 기재 예) 기초생활수급자 50%, 국가유공자 50% - 이용조건 기재 예) 관내만 가능, 국가유공자만 가능
8	법인 봉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u>부과기준 기재 (눈높이단 기준)</u> 예) 사용료가 15년 기준으로 책정되면 '사용료15' 기재, 관리비가 5년 기준으로 책정되면 '관리비5' 기재 - 최대이용기간(년) : 연장기간 모두 포함하여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기재 예) 최대 60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60' 기재,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영구' 기재
9	종교단체 봉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 부과기준(년) : 이용요금(사용료, 관리비)의 <u>부과기준 기재 (눈높이단 기준)</u> 예) 사용료가 15년 기준으로 책정되면 '사용료15' 기재, 관리비가 5년 기준으로 책정되면 '관리비5' 기재 - 최대이용기간(년) : 연장기간 모두 포함하여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기재 예) 최대 60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60' 기재,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영구' 기재
10	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중 선택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시트 번호	시트명	주의사항
11	공설 자연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중 선택 ※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수목형 자연장'과 '수목장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수목장림 : 산지일시사용 신고여부 확인, 지목(임야) 확인 등 - 관리비 기준은 1년 단위로 환산 - 감면혜택 기재 예) 기초생활수급자 50%, 국가유공자 50% - 이용조건 기재 예) 관내만 가능, 국가유공자만 가능
12	사설 자연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중 선택 ※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수목형 자연장'과 '수목장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수목장림 : 산지일시사용 신고여부 확인, 지목(임야) 확인 등 - 조성주체 : 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 가족, 개인 중 선택 - 이용요금 : 종교단체와 법인에 한함
13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장례식장은 1개의 행에 모두 기재 (1개의 장례식장을 여러 개 행에 입력 금지) - 부지면적 : 장례식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의 부지면적 - 연면적 : 다른 시설과 공동 사용 시 장례식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연면적 - 이용료 : 임대료 및 안치료 이용요금은 일반빈소/1일 기준(단위:천원)
14	공동(집단) 묘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말 기준 - 면적은 추정치 기재 (대략적인 면적)
15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기재 -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등 항목별 해당내용 입력

10 기타

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방법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시설은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사용자 ID로 시스템 접속
- 시설별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 시설 정보를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용 신청” 공문에 첨부하여 장사지원센터로 송부
- 장사지원센터는 신청내역을 검토 후 시설ID, 관리자ID 등을 발급함
- 시설 관리자는 발급받은 ID로 시설 기초정보 등을 등록 후 시스템 사용
 - ※ 자세한 시스템 사용 신청 및 기초정보 등록 절차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문의

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화장관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 화장예약정보 수집·전국 화장시설에 제공 - 실명인증신청정보 수집·승인 관리 - e하늘 이용상담 정보 등록·이력관리 -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여부 확인(e하나로 민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열람)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 이용현황,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접속이용현황 분석	1) 화장예약정보 • 필수항목 - 신청자 :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인증 정보, 주소 - 연고자 :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신청자 : 이메일, SMS 여부 2) 실명인증신청정보 • 필수항목 - 신청자 :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인증정보 - 연고자 :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신청자 : SMS 여부 - 연고자 : 전화번호 3) 화장접수정보 • 필수항목 - 신청자 :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인증 정보, 주소	준영구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고자 :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선택항목 ·신청자 : 이메일, SMS 여부 4) e하늘 이용상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유선상담 : 시설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온라인상담 : 신청구분, 성명, 휴대폰번호, 상담희망일자, 상담희망시간, 상담제목, 내용, 본인인증정보 ·자동수집 항목 ·IP주소, 접속 및 입력일시 5) 장사시설 회원 가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2	장사행정 지원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관리	1) 매장 및 화장 신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신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선택항목 ·신고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 분묘 설치 연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선택항목 ·신청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개장 신고 및 허가 신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신고인, 허가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선택항목 ·신고인, 허가신청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4) 봉안 및 자연장 신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선택항목 ·신청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5) 개인묘지 설치관리	준영구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관리 • 필수항목 -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 시설 설치관리(화장시설/봉안시설) • 필수항목 -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선택항목 -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8) 시설 설치관리(자연장지) • 필수항목 -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9) 장사시설 폐지관리 • 필수항목 - 설치자, 조성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설치자, 조성자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0) 장례식장 영업관리 • 필수항목 - 영업자, 관리인,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선택항목 - 영업자, 관리인, 신고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1) 장례식장 교육대상자 이수 후 등록, 조회 • 필수항목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시설운영 관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 시설내부 운영 관리	1) 매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전화번호, 이메일 봉안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전화번호, 이메일 자연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전화번호, 이메일 산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 :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4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정보주체의 동의 -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1년 (수신 거부시 까지)

※ 보유기간 책정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

CHAPTER

제 10 편

행정사항

제1장 행정사항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제1장 행정사항

1 감사 및 지도감독

종류	대상	주기	실시기관
정기지도감독	장례식장	연 1회 이상	시·군·구청장
수시지도점검	장사시설	필요시	시·군·구청장
특별지도감독	장사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 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2 장사업무 보완사항

가. 장사업무 관련 용어 정립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의 단위 : 개소
- 화장한 유골 및 분묘, 봉안묘(탑, 담)의 단위 : 기
※ 개소, 위, 묘 등은 잘못된 표현
- 유골, 시신의 단위 : 구
※ 기, 위 등은 잘못된 표현

나.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2조)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묘지·화장시설 또는 봉안 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개인묘지 등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장사시설인 경우에는 설치·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법 시행일('08.5.26) 이전인 경우로 보아야 함

- 가족묘지 등 사전신고(허가) 사항인 경우 “설치·조성 중”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행 통지가 완료된 시설을 말하며, 단순히 신고(허가신청)서만 접수된 경우에는 설치·조성 중인 시설로 볼 수 없음

다. 자연장지 조성신고(허가신청) 접수 시 주의사항

-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얻어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불특정 다수인의 자연장지로 분양·임대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라.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법 제15조제6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봉안묘(탑, 담)와 가족 또는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이때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설치예정지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묘지 설치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마. 묘지 면적 계산방법

- 법 제18조에 따른 분묘 등의 점유면적은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 이하
 - 개인묘지는 30㎡ 이하
- 동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바.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계산

(1) 사용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 묘지 사용자가 분묘 및 시설물 설치 등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점유 면적(이하 “전용면적”)에 대하여 징수
- 사용료 계산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등 총 비용을 조성된 묘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m²당 사용료에 분양된 전용면적을 곱하여 계산

(2) 관리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 묘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면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
- 관리비 :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 전용면적 : 전용면적의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징수
 - 공용면적 : 공용면적 관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조성된 묘지로 나누어 산출한 m²당 관리비에 분할된 묘지를 곱한 금액 징수

사. 법인묘지 안의 묘지·봉안시설 설치 신고

- 법인묘지(공설묘지 포함) 안에 묘지·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구비서류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만 징수

아. 신고(청)서식 기재요령

(1) 대상서식

-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7호서식)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2) 기재요령

- “신청(고)인”란의 신청(고)인은 신청(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는 자의 인적 사항 기재
- “서명(또는 인)”란의 신청(고)인의 경우
 - 개인(가족)은 설치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설치자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은 해당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단체에서 대표로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

자. 장사시설 설치·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

- ①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
- ②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 ③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요소인 성당·교회·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목사·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

차. 시설봉안시설 설치 시 재단법인 설립 관련

- 유골 500구 이상의 봉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교단체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정함. 이는 수익 목적이 아닌 신도를 위한 장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종교단체가 5천구 이상의 봉안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장사 관련 재단법인(보건복지부 소관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설치 가능하고, 천주교는 대부분 재단법인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장사업무 통계보고

- 매년 3월 31일까지 아래 현황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 상세 등록절차는 [p.295~302](#) 참조

가. 공설묘지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 공설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묘지명	위치	관리주체	전화번호	묘지 설치현황					
						설치 연월일	허가 면적 (㎡)	묘역 면적 (㎡)	총 매장 능력 (구)	매장 구수 ('20년 포함)	향후 매장 가능 구수
<u>이용요금(천원, 년)</u>		<u>관리인원(명)</u>			<u>2020년 운영실적</u>				<u>비고</u>		
<u>사용료 (관내)</u>	<u>관리비 (관내)</u>	<u>공무원</u>	<u>비공무원</u>	<u>매장</u>	<u>개장</u>						

※ 향후 매장가능 구수 = 총 매장능력(구수) - 기 매장구수('20년 포함)

나. 사설묘지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 법인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묘지명	위치	관리주체	전화번호	묘지 설치현황					
						설치 연월일	허가 면적 (㎡)	묘역 면적 (㎡)	총 매장 능력 (구)	매장 구수 ('20년 포함)	향후 매장 가능 구수
<u>이용요금(천원, 년)</u>		<u>관리인원(명)</u>			<u>2020년 운영실적</u>				<u>비고</u>		
<u>사용료</u>	<u>관리비</u>	<u>공무원</u>	<u>비공무원</u>	<u>매장</u>	<u>개장</u>						

※ 향후 매장가능 구수 = 총 매장능력(구수) - 기 매장구수('20년 포함)

■ 개인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신고(허가)개소수 (‘20년 포함 누계)	신고(허가)면적(㎡) (‘20년 포함 누계)	기매장구수 (‘20년 포함)	‘20년 매장구수	비고
계						

■ 가족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신고(허가) 개소수 (‘20년 포함 누계)	신고(허가) 면적(㎡) (‘20년 포함 누계)	총매장 가능 구수	기매장구수 (‘20년 포함)	향후매장 가능구수	‘20년 매장구수	비고
계								

※ 향후 매장가능 구수 = 총 매장능력(구수) - 기 매장구수(20년 포함)

■ 종중·문중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신고(허가) 개소수 (‘20년 포함 누계)	신고(허가) 면적(㎡) (‘20년 포함 누계)	총매장 가능 구수	기매장구수 (‘20년 포함)	향후매장 가능구수	‘20년 매장구수	비고
계								

※ 향후 매장가능 구수 = 총 매장능력(구수) - 기 매장구수(20년 포함)

다. 공설화장시설 관리운영 현황 및 화장실적('20. 12. 31. 현재)

▣ 화장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화장 시설명	운영 주체	위치	전화 번호	설치 연도	시설규모		화장로수				
							부지 (㎡)	연면적 (㎡)	계	운영 화로	예비 화로	2021년 증감계획	
이용요금(천원)			산골 장소 여부	관리인원(명)		2020년 화장실적				최근 신·증축 연도	비고		
시신	죽은 태아	개장 유골		공무원	비 공무원	계	시신	죽은 태아	개장 유골				

▣ 화장실적

● 시신 화장실적

화장시설명	화장연월일	내외국인 구분	성별	주소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화장한 유골의 처리

● 죽은 태아 화장실적

화장시설명	화장연월일	성별	임신주수	사망연월	신고인 주소	화장한 유골의 처리

● 개장유골 화장실적

화장시설명	화장연월일	성별	사망년도	현존지 (개장신고지)	화장한 달	화장한 유골의 처리

라. 공설봉안시설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 공설봉안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 군 구	봉안 시설 구분	명칭	위치	관리 주체	전화 번호	설치 연도	시설규모		봉안현황		
								부지 (㎡)	연면적 (㎡)	총 봉안 능력(구)	기봉안 구수 ('20년 포함)	향후 봉안 가능 구수
이용요금(천원, 년/ 일반, 개인단, 눈높이단)								관리인원		2020년 봉안실적	최근 신·증축 연도	비고
관내	관외	부과기준 (년)	최대 이용기간 (년)	감면 혜택	이용 조건	공무원	비 공무원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 향후 봉안가능 구수 = 총 봉안능력(구) - 기 봉안구수('20년 포함)

마. 사설봉안시설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 법인봉안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 군 구	봉안 시설 구분	명칭	위치	관리 주체	전화 번호	설치 연도	시설규모		봉안현황		
								부지 (㎡)	연면적 (㎡)	총 봉안 능력(구)	기봉안 구수 ('20년 포함)	향후 봉안 가능 구수
이용요금(천원, 년/ 일반, 개인단, 눈높이단)								2020년 봉안실적		비고		
사용료	관리비	부과기준 (년)	최대 이용기간(년)									

※ 봉안시설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중 선택

※ 향후 봉안가능 구수 = 총 봉안능력(구) - 기 봉안구수('20년 포함)

■ 종교단체방안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방안시설구분	명칭	위치	관리주체	전화번호	설치연도	시설규모		방안현황		
								부지(㎡)	연면적(㎡)	총방안능력(구)	기방안구수('20년 포함)	향후방안가능구수
이용요금(천원, 년/ 일반, 개인단, 눈높이단)								2020년방안실적		비고		
사용료		관리비	부과기준(년)	최대이용기간(년)								

※ 방안시설 구분 : 방안당, 방안묘, 방안탑, 방안담 중 선택

※ 향후 방안가능 구수 = 총 방안능력(구) - 기 방안구수('20년 포함)

■ 개인, 가족, 종중·문중방안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방안시설구분	신고(허가)개소수('20년 포함 누계)	신고(허가)면적(㎡)('20년 포함 누계)	총방안능력(구)	기방안구수('20년 포함)	2020년방안실적(구)	비고

※ 운영주체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중 선택

※ 방안시설 구분 : 방안당, 방안묘, 방안탑, 방안담 중 선택

※ 향후 방안가능 구수 = 총 방안능력(구) - 기 방안구수('20년 포함)

바. 공설자연장지(수목장림)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 공설자연장지 조성현황

시도	시군구	명칭	유형	조성 형태	위치	조성자	전화 번호	조성 연월일	조성 면적 (㎡)	자연장 현황		
										총 자연장 능력(구)	기자연장 구수 ('20년 포함)	향후 자연장 가능 구수
이용요금									2020년 자연장 실적 (구)	관리인원		비고
관내 사용료	관내 관리비	관외 사용료	관외 관리비	감면 혜택	이용 조건	공무원	비공무원					

※ 유형 : 자연장, 수목장림 중 선택

※ 조성형태 :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중 선택

사. 사설자연장지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 사설자연장지 조성현황

시도	시군구	조성 주체	명칭	유형	조성 형태	위치	조성자	전화 번호	조성 연월일	조성 면적 (㎡)
자연장 현황							2020년 자연장 실적	이용요금		비고
총 자연장 능력(구)	기자연장 구수 ('20년 포함)	향후 자연장 가능 구수	사용료	관리비						

※ 조성주체 : 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 가족, 개인 중 선택

※ 유형 : 자연장지, 수목장림 중 선택

※ 조성형태 :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중 선택

아. 장례식장 관리운영 현황('20. 12. 31. 현재)

장례식장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공설 사설 구분	종류	명칭	위치	운영 형태	대표자	전화 번호	영업 개시 연월일	부지 (㎡)	건평 (㎡)	빈소 수 (개소)	안치 능력 (구)	임대료	안치료

※ 종류 : 전문, 병원 중 선택

※ 운영형태 : 직영, 임대 중 선택

자. 장사업무 담당 현황

시도	시군구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메일	전담여부	담당기간 (월)

차. 묘지관리 현황

묘적부 관리실태

시도	시군구	묘적부 등록된 분묘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비고

행정처분 실태(중복표기 가능)

시도	시군구	처분건수 (합계)	신고의무 위반	설치기준 위반	시설물 설치 위반	설치금지 구역 위반	비고

카. 공설장사시설 운영개선 내용 및 주요예산내역

■ 공설화장시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화장시설 운영개선 내용 및 주요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총예산	인건비	시설 등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예산내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반영 현황	운영개선내용

- 2020년 화장시설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화장 시설명	화로 번호	설치 일자	개/보수 일자	구분	공사 일수	공사 금액	국고 금액	개/보수 내용
						전체/버너/ 화로/배기				

■ 공설봉안시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봉안시설 운영개선 내용 및 주요예산내역

총예산	인건비	시설 등 기능보강비	2018년~2020년 국고보조예산내역	2018년~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반영 현황	운영개선 내용	비고

- 운영개선 내용(배수로·도로·축대 등 시설개선, 조정, 유족대기실(난방/냉방/ 기타) 등)

■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운영 주요예산 내역

총예산	인건비	시설 등 기능보강비 등	2018년~2020년 국고보조예산 내역	2018년~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반영 현황	향후계획 (이전계획안 등)	비고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적

-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 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 지원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3 2021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기준

(1) 일반사항

- 화장시설·봉안당(담) 신축,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은 각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
- 각 사업별 예산지원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

(2) 사업별 지원기준단가

- 화장시설 신·증축 : m²당 1,500천원(화장시설 건축물 신·증축공사비에 한정)
- 화장로 신·증설 및 교체 : 기당 360,000천원(신·증설은 화장시설 신·증축에 수반되는 신·증설 화장로 설비 비용)
- 자연장지 조성 : m²당 100천원(수목장림의 경우에는 m²당 10천원)
-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 m²당 100천원
- 봉안당(담) 신축 : m²당 1,500천원(봉안담 m²당 1,050천원)
- 화장로 개·보수 : 기당 220,000천원
- ※ 화장로 연료 교체는 개·보수에 해당됨

(3)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2호)
 -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서식 제3호)
 - (화장시설 신증축인 경우) 부지 선정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실적이나 자문(추진)결과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 검토의견서는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함
 - ※ 1/4분기 내 교부신청 완료

다. 국고보조금 집행

- 시·군·구는 국고보조금 수령 후 집행 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장사시설 설치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고 지원액(본 건물 공사비)에서 설계용역비 집행 가능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7.31.까지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7.31.까지 사업포기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 장사시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실적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 장사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등
 - ※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등 활용(쪽)

5. 사업수행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제3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사업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 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사항

4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가. 예산요구

- 시·도(시·군·구)는 장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구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예산신청 총괄표([서식 제4호]) 및 예산신청서([서식 제5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 중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지역 내 장사시설 현황, 지방비 확보 현황, 사업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예산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함
-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 협의 시 각 시·도(시·군·구)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예산요구 및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기한 : 2021. 3. 31.

다. 예산지원사업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및 교체,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

라. 2022년 국고지원 기본방향

- 신청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용역비 등 지방비부담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 지원
- 장사법 외 개별법에 따른 사전절차(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 도시계획시설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실시계획,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이행, 집단민원 해소 등 제반여건이 완료되어 당해 연도에 사업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전 일정기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의무사항)

- 사업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사업 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 대상 주민 범위를 해당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접 행정구역도 포함하여 집단민원을 해소
 - ☞ 지역주민 대표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실적과 자문 추진결과 제출
- 지자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다만, 지자체간 공동 시설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 광역, 특별시·도, 인근 지자체 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부 장사시설만 설치한 지자체가 종합 장사시설로 구축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집행성과와 연계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
 - 최근 5년간 국고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 반영
 - 예산집행실적 등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관할 시·도에서 사전 검토 후 '22년 예산에 편성할지 여부 판단
- 신축인 경우에는 총 국비지원액에 대하여 2개 연도 이상으로 나누어 국비 신청계획을 수립하고, 1차 연도에는 5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 단, 연내 완공 가능한 시설은 100% 지원
- 국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및 설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민 참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전 실시 필요
 - ※ 자체 실시 및 장사지원센터 교육(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등 활용
 - ☞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이 장사시설을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거부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 필요
- 기타(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지역수요, 화장률 등 감안)
- 국고지원 우선순위
 - 장사시설 설치 계속사업
 - 화장시설 확충사업(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교체 및 개보수 등)
 - 자연장지 조성사업(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우선)
 - 봉안당(담) 신축사업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지원기준

- 연간 화장로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 계산방법 : <연간 화장실적> / <(전체 화장로 기수 - 예비 화장로 1기) × 1일 3회 × 360일> × 100
 - ※ 연간 화장실적 산출 시 죽은 태아와 개장유골 화장은 제외
 - ※ 예비 화장로 : 고장 등에 대비하여 최소 1기씩 필요
 - ※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 처리건수 : 시신 화장은 1일 3회, 죽은 태아와 개장유골 화장을 포함하면 1일 4회
- 3년마다 화장로 주요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동률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2년 후 교체도 지원
- 화장로 가동에 필수적인 구성품(내화벽돌, 필터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1년마다 교체하는 소모품은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별도 검토

[서식 제4호] 2022년 예산신청 총괄표

〈○○○○도〉 2022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예산신청서

1. 예산신청 총괄표

(단위 : 천원)

우선 순위	시·군·구	세부 사업명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예산액				보조율 (%)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계											
1											
2											
3											

2. 자체 점검표

사업구분	시·군·구	사업량	산출내역	적합여부
화장시설 신·증축 (㎡당 1,500천원)				
화장로 신·증설 및 교체 (기당 360,000천원)				
화장로 개·보수 (기당 220,000천원)				
자연장지 조성 (㎡당 100천원)		예시) 5,000㎡	5,000㎡ × 100,000원 =500,000천원	적합
자연장지 조성(수목장림) (㎡당 10천원)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당 100천원)				
봉안당 신축 (㎡당 1,500천원)				
봉안담 신축 (㎡당 1,050천원)				

※ 지원단가에 맞게 사업예산을 요구하는지 자체 점검 후 제출

[서식 제5호] 2022년 예산신청서

〈000시〉 2022년 ○ ○ ○사업 예산신청서

(* 신규 또는 계속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16~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요구액		
	국비보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담당자	0000과 시설(행정/보건/사회복지 등)0급 김00 (사무실 000-000-0000, 이메일@korea.kr)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을 기술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량 :
- 사업비 :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소요물량 및 적용단가 산출기준(근거) 등 기술
- 주요시설 :
- 사업수행주체(지자체, 산하공공기관 등)
- 사업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형식으로 기술

(다)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반영 여부
-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
- 사업추진 현황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 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진행 상황 등
 - 환경영향 평가 및 도시계획 인가 등 절차완료 여부
 - 집단민원 및 보상절차 완료 여부 등
- 재원확보상황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비·시(군)비 구분) 금액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비율(%)	비 고
		도 비	시 비		

- 연차별 투자계획(표 등의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국 비	지방비	
총사업비			
'19까지			
2020			
2021			- 화장시설 신축(예시) (국비) 1,500,000원×3,500㎡×70% =
2022			
2023			
2024			

●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재 원 별				산출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용지매입 및 보상비	사업부지, 도로부지					
화장시설	면적, 공사비, 화장로					
화장로 개·보수	화장로, 교체기기 내역					
방안시설 신축	면적, 건축비, 안치구수 등					
자연장지 조성	사업량, 공간조성비, 조경공사비 등					
부대시설	건축비 등					
설계 및 감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기타						

(라) 사업지역 현황

- 사업지역 소재지
- 입지조건 및 입지선정기준(사유)
 - 광역입지여건
 - 대상지 입지여건
 - 입지선정 기준(사유)
- 화장수요 추이('16~'20)

(단위 : 명, %)

년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총인구						
사망	계					
	매장					
	화장					
	화장틀					

-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화장시설(봉안당·묘지)의 화장(봉안·매장) 현황('16~'20)
- 당해 시(군)의 화장시설(봉안당·묘지) 이용실태
 - 화장시설(봉안당·묘지) 이용권역
 - 화장시설(봉안당·묘지) 설치 시 이용가능지역
 - 예상 이용 건수 및 수급전망
-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민원 발생시기	민원내용	처리상황	비고
〈주민 동향 및 진행상황〉			

- 자문회의 등 활동실적 및 자문 결과 현황
- 주민 참여 및 장사시설 인식 개선 교육·홍보 실시 현황

연월일	건명	대상	인원	주요내용	비고
				(예)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마) 사업 기대효과

- 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 환경·국토이용, 경제성·수익성, 주민수혜도 등 측면에서 비교
-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그 예측치를 기술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 직·간접 기대효과 망라
-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제시
 - 보고서 작성자(작성기관), 작성일 명시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기술

(바) 축소 또는 폐지대상사업

- 동 사업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기존 사업을 제시
 - 기존 봉안시설의 폐지 및 기존 시설의 사업현황

(사) 기 타

- 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2022년 예산요구

(가) 사업추진방향

-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예산확보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자료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건 변화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정책방향
- 민영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계획

(나) 주요 검토 요구사항

- 우리 부 예산심의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 예산증감 요인(규모, 단가 등)
 - 예산지원조건 및 방식 변경(보조율 인상, 정액·정율, 항목 신설 등)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다) 연차별 투자 및 요구개요

(라) 국고보조예산 집행현황 및 2022년 예산요구

- 예산반영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	'17	'18	'19	'20
■ 사업명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16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 연도별로 사업명이 다른 경우 사업별로 칸을 추가하여 모두 작성
- 불용액, 이월액 내역 및 사유 포함
- () 안에 지방비 집행실적을 기재
- 2022년 요구내용 및 산출내역
 -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2022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개조식으로 기술(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
 - 국고지원 필요성, 사업 우선순위, 타 시군구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마) 기 타

-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관련 부처별 조치상황
- 국내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계획보고서,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 각종 계획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청취(열람) 시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2020년 연간 화장로 가동률 산출표(화장로 개보수 신청 시 작성)

시설명	화장로 수	화장로 수- 예비화장로 1기 (A)	연간 화장 가능 구 수* (B)	2020년 화장실적** (C)	화장로 가동률 (C/B×100)
					%

* 연간 화장 가능 구 수(B) = (A) × 3회 × 360일

** 2020년 화장실적(C) 산출 시 죽은 태아와 개장유골 화장은 제외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가. 2021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도 장사사업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을 2021. 8. 30.까지 보고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다. 사업집행 실적보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2021년도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출연금 포함)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021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국고보조금 이월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서식 제8호])
 - 재이월은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이월한 보조금은 또 이월할 수 없음
 - ※ 국고보조금 이월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 전액 국고반납 조치

[서식 제6호]

2021년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1. 사업실적

사업별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도(%)	비고

※ 사업진도 80% 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산			실적			집행잔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향후 추진계획

[서식 제7호]

2021년 국고보조예산 집행실적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 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 전, 공사진행, 완공 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증명서 관계서류 첨부

[서식 제8호]

()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 보조사업 개요

회계·기금	일반회계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보조사업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규모) (규모 예시) 면적, 봉안(자연장) 기수, 화장로 수 등		
보조사업자	기관명	○○시·군·구청장	
	담당자(연락처)	부서 직급 성명	
	(사무실)	(핸드폰)	

2. 보조사업 추진 현황(2021. 00월 말 기준)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원)

교부연도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월 요청액

- 사업추진 상황(사업 시작 시점부터 단계별로 상세하게 작성)
 - (예시) 2020.00.00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0.00.00 : 기존 공동묘지 분묘 일제조사 완료
 - 2020.00.00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00.00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00.0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20.00.00 : 군계획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00.0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00.00 : 기존묘지 이전 완료(총 000기)
 - 2021.00.00 : 공사 발주

- 2021.00.00 : 공사 착공
- 2021. 11월 현재 : 토공 및 구조물공 시행 중(공정률 00%)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애로사항(문제점) 및 조치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

3. 이월 요청사항 : 명사이월(또는 계속 비이월) 또는 사고 이월

- 이월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종료시한
 - (예시) 2021.00.00 : 000천원 집행예정(기성금, 준공금 등)
 - 2021.00.00 : 준공(예정)
- 이월 사유(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증빙자료 첨부)

참고 : 재이월 요청 시 주의사항

- 이월사업의 재이월은 아래 경우에만 가능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재이월 해당 사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이월 불승인)

참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1. 추진 배경

- 2014.12.4. 정부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개혁 방안 추진
-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년부터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가.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 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나. 업무 효율화

-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가. 지자체보조사업

- 지자체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e-호조를 통한 지출 내역이 e나라도움에 자동적으로 연계

나. 민간보조사업

-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상위보조 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 정산 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위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참고 4)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위탁기관에 예치
 - (현재 모습)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 일괄 이체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출행위로 집행, 사후 정산
 - (미래 모습)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가. (1단계) 사전 검증

- 수급자 자격 검증,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세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나.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다. (3단계) 집행·사후 검증

-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 이중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자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6.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을 활용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7. 협조사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콜센터(1670-9595) 적극 활용

참고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균특회계 생활·제주·세종계정)

<p>사업유형</p>	<p>공설수목장림 조성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p>
<p>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수목장림 조성 지원
<p>사업개요</p>	<p>【시행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목 선정,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재해 예방시설 등 수목장림 조성 <p>【지원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p>유의사항</p>	<p>【요구 및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가 사전 이행되어야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수목장림 설치 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 ▪ 수목장림 구역 면적이 가급적 10ha 이상이어야 함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함 <p>【기준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당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목장림 규모에 따라 증감 * 공립 수목장림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3년 이내 조성 원칙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장림 부지 미확보 및 민원 발생 우려 대상지 제외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1 목적

- 자연장을 중심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고, 허례허식을 배제하여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를 활성화하며,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안내

- 대상 : [전국민](#)
- 장소 : 지자체 강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등
- 교육 구분 : 현장교육, 교육영상 제공으로 구분

교육 구분	교육 안내	비 고
현장교육(대면 교육)	- 예산에 따라 교육 인원 및 횟수 조정	
교육영상 제공(비대면 교육)	- 대면 교육 개최가 어려운 지자체에 제공(신청 필수)	

- 교육내용 :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구 분	내 용
현장교육	- 친자연적 장례문화 필요성 및 자연장 안내 - 건전 장례 및 장사시설 인식 개선 등 강의식(40분) 교육 - 현장견학 실시(요청 시, 공설자연장지) - 교재 및 중식(간식), 배상책임보험 및 차량(현장견학 시) 제공
교육영상 제공	- 강사 지원 없이, 강의 영상으로 대체 - 영상(강의·자연장 홍보), 교육자료(리플릿·홍보포스터· 이별준비노트) 제공

- [주최](#) : 시·군·구

· [법적 근거](#) : 장사법 제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주관 : [장사지원센터](#)
 - [장사지원센터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수행 기능\(장사법 제33조의4제1항제5호\)](#)
- 방법 : [시·군·구가 교육 인원, 장소를 지정하여 장사지원센터로 교육 요청](#)
 - * 장사지원센터에서 대관료, 여행자 보험, 기념품, 교재, 중식 등 제공
 - * 생활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여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협조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석 불가
- 문의 : [장사지원센터 사업운영부\(전화 02-6930-9322, 팩스 02-6930-9393\)](#)
- 교육계획(일정) 수립 및 신청
 - '21. 2. 26.(금)까지 제출 요함

시도	시군구	읍면동	교육 구분		교육일정					
			대면	비대면	월/주	장소	인원	담당자	연락처	

● 참고사진



CHAPTER

제11편

부록

제1장 친환경 화장품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제2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제1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1 목적

-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화장시설은 환경적 관련성이 높은 장사시설로서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용 관**, 부속용품에서 배출될 개연성이 있는 유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음
-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자·종사자, 관계공무원은 유족들이 화장용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화장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및 홍보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가. 재질

- 화장 시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도록 함
- 관 안정성을 위해 흔들림이나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견고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보편화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예 : 오동나무)로 구성되어야 함
-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관 도장재료는 천연도료이어야 함

나. 크기

- 관의 크기(외경)는 길이 1,850mm, 넓이 482mm, 높이 360mm 내외로 함
- 관의 두께는 30.3mm 이하로 함

다. 형태

- 시신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도록 밀폐되어야 함
- 누출이나 옆질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관 규격 내에서 다양한 형태(디자인)로 구성될 수 있음
- 관 외부에 투명한 도장을 할 수 있음. 단, 도장재료는 천연재료여야 함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가. 용어의 정의

- 화장용 부속용품이란 화장하기 위하여 입관 전후에 필요한 부속용품을 말함
- 화장용 부속용품의 종류로는 화장용 수의, 화장용 관보, 화장용 명정, 화장용 보공, 화장용 결관 등이 있음

나. 재질

- 화장하기 쉽고 가연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물질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다. 형태 및 디자인

- 화장용 부속용품의 용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함
- 전통적,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가. 오염(매연, 유해가스, 악취)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

- 비닐제품(핸드백, 구두, 장난감 등)
- 화학합성섬유제품(의류, 침구, 직물 등)
- 발포스티로폼제품(베개, 완충재, 포장재 등)
- 그 밖에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골프공 등)

나. 기연물질이지만 연소에 방해가 되어 잘 타지 않는 것

- 과일(수박, 메론 등의 과일류)
- 서적(사전, 앨범 등의 서적류)
- 섬유제품(이불, 의류, 인형 등)

다. 화장로 설비의 고장원인이 되는 것

- 스프레이통, 전지, 탄소제품(낚시도구, 골프채, 지팡이, 라켓 등) 등
- 금속제품(동전, 휴대폰, CD플레이어, 귀금속, 불상 등)
- 폭발물(캔음료, 화장품 스프레이통,ライター 등)

라. 유골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

- 유리제품(안경, 병, 식기 등)
- 페이스메이커 등 체내 장치의료품으로서 화로 내에서 폭발하여 유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그 밖에 연소과정에서 위험한 것

제2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가.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이면서 비선호시설이다.

- 장사시설 설치 대한 지역공동체의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주민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반대측에게 장사 시설은 편의시설이라는 당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타협 및 우수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필요
- 장사시설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추진측과 반대측이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인 동시에 비선호시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출발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입지선정에 관한 모든 쟁점에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나. 입지선정은 절차가 더 중요하다.

- 입지선정 과정이 기술적·과학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절차적 원칙을 소홀히 할 경우 불신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주민들은 시설입지에 따른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비이성적이므로 충족될 수 없다) 반대하게 된다.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충실해져 사업계획의 품질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 장사시설을 비선호시설로 인식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선택권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형식의 선택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와 종류, 위치,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선택권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참여 절차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과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반대주민들을 설득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리더십은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민주적인 리더십이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바꾸고 비선호시설 입지의 동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차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소극적인 반대로 완화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있다.

마. 서두를수록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다.

- 사업시행자가 일을 서두르면 이해관계자와 협의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상호 협력적인 신뢰관계에서 문제해결 시한의 설정은 합의를 앞당기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적대적인 불신관계에서 시간에 쫓기는 협상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가. 경주시 하늘마루(주민 반대극복 조성사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시립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08년~2011년
- 주요규모 : 부지 43,000㎡, 건축 10,550㎡(화장로 10기(8,400㎡), 봉안시설(2,000㎡))
- 사업비 : 370억원
- 주요 추진 성과
 - 남비현상의 대표 시설인 화장시설 신축 추진 시 전국 최초로 부지 공모제를 도입 하여 주민참여형 선제행정 추진
 - 공모제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주민반대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 주민화합을 달성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 상호협력·상생 달성
 - 파격적인 지역개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

(2) 갈등 해소 추진사항

(가) 주민참여형 부지공모제 도입으로 사전 갈등예방

- 사업착수 단계부터 주민반대 최소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부지공모제를 도입, 선제적 갈등 예방행정 추진
- 기피시설 유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반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지 공모제를 도입하고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
- 주민설명회,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적 일방행정이 아닌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동반하는 공감행정 추진

(나) 남비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

- 부지공모 시 선정지역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시

-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당초 인센티브 보다 대폭 확대된 경제적 지원을 약속
- 선정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지원을 약속하면서 보다 폭넓은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피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에 성공
- 경주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면서 지역과 동반성장 계기

(다) 주민협의체와 행정신뢰 형성

- 주민협의체와 유기적 관계 형성하여 협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점검
- 열린 행정으로 행정신뢰도 확보하여 주민협의체를 주민의견수렴의 창구로 지속 활용

나. 갈등 처리 흐름도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가.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상이 중요하다.

- ‘주민들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민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추모공원전립협의회” 통해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와 같이 소수 전문가와 공무원들에 의한 DAD(결정·발표·방어) 방식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갈등요인이 ‘공론화 노력의 부족, 일방통행의 의사소통과 빈곤한 설득, 공론화의 부재와 일방적 추진, 대표성의 부족, 행정편의적 접근’ 등 이해관계자와 협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입지갈등 해결에 성공한 경우는 지속적인 주민대화, 개별설득, 주민의견 존중, 폭설 피해 축산농가 복구지원을 계기로 주민과 인간적인 유대감 형성, 화장시설 공사는 주민협의체와 협정서 체결 후 착공, 주민 명예감독 임명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갈등 해결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나. 협상은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 입지선정을 위한 협상은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자, 주민,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특히 환경, 교통,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정치인 등의 반대측 이해관계자들은 참여해야 한다.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지선정은 결정에 불복하고 반대할 명분을 제공한다.

다. 이해관계자와 협상은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필요하다.

-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은 사업계획의 입안 또는 타당성을 검토할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선호시설의 필요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종류와 규모, 위치, 환경·재산피해 예방대책, 이해관계자들의 수용 가능성 등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협상인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후에 보상 등 시설의 입지조건에 관한 협상인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협상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이해관계자들은 단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상 과정에서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전부를 취소할 가능성까지 약속해도 이해관계자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입지선정 후의 협상제외가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참여의 조건으로 먼저 입지결정의 백지화,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라. 공모절차를 활용하면 입지선정이 용이하다.

- 선정기준과 항목별 순위 등 평가체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의 입지를 최적입지로 선정하는 방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모든 입지를 후보지로 고려하고 그 중 하나를 적정입지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최적입지 선정방식과 적정입지 선정방식을 결합하여 지역공동체의 수용 가능성을 토대로 제2, 제3의 입지를 고려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공모, 협상,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마. 정보공개는 신뢰형성의 지름길이다.

- 입지선정에 관한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때가 되면 알게 될 텐데 미리 알려서 굵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업시행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 협상 시점이 입지선정 후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입안단계 또는 타당성 검토단계라면 관련 정보도 미리 공개하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보공개는 사업시행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바람직하다. 입지조건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환경·교통·재산피해 등의 우선순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대책과 불가피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유다. 정보공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촉진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바. 공동 사실조사는 정보공유의 필요조건이다.

- 공동 사실조사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환경단체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부정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계획의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 공동 사실조사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가치관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는 상호학습 과정이다. 정보공유는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소극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시행자와 대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전문가 고용 등의 조사연구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기능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유다. 국내외 선진 화장시설의 견학도 고려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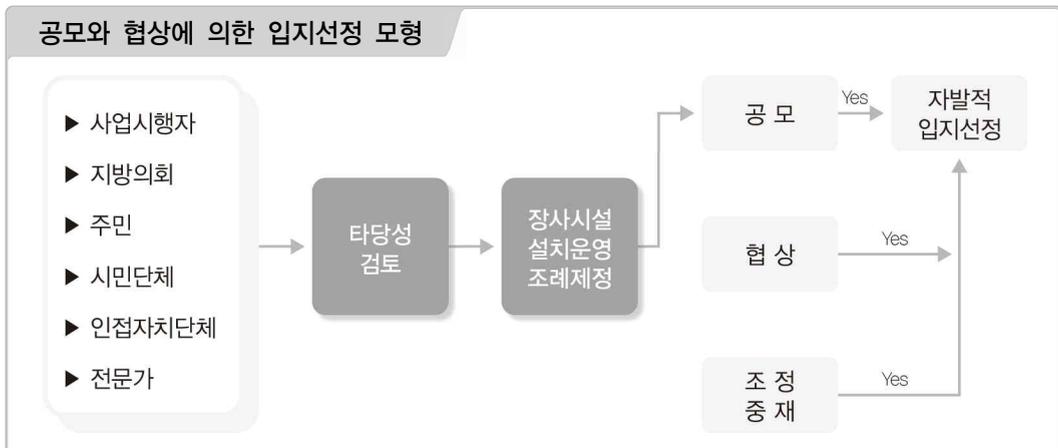
사. 중립적인 조정자는 협상의 윤활유다.

-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또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조정 능력과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조정자는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심사를 거쳐 합의로 선정한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을 찾아가는 직접·개별 면담방식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양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들을 확인하고 쟁점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미리 탐색하고,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협상 참여자,

의제, 기간, 장소 등 협상의 기본규칙을 설계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조정자 역할은 조정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조정역할이 가능하다.

아. 모든 쟁점에 합의하는 것만이 협상의 목표는 아니다.

-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모든 쟁점에 대한 완전한 합의만이 협상의 목표는 아니다. 완전한 합의가 어려우면 부분적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유와 공동 사실조사, 협상과 조정 등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상호신뢰가 형성된다면, 그래서 각자의 입장 때문에 합의는 어려워도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추진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 그것만으로도 협상은 충분히 시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예상할 수 있는 협상결과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합의서에 서명하는 갈등종결 둘째, 합의서에 서명은 못하지만 반대하지는 않는 소극적 찬성의 갈등완화 셋째,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 소극적 반대의 갈등잠복 넷째, 시위와 소송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갈등심화 등이다. 최선의 협상결과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갈등의 종결이지만, 최선이 어려우면 소극적 찬성의 갈등완화 또는 소극적 반대의 갈등잠복 등의 차선으로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시위나 소송 등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협상과 조정에 의한 상호신뢰의 회복이 입지갈등 해결에 더 유용한 수단이다.



4 타당성 검토 강화

가. 시설장사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장사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특정시설의 특정지역 설치를 전제로 검토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다양한 대안개발의 가능성이 봉쇄된다. 장사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안들 중에는 사설 장사시설의 공급을 지원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나. 소규모 분산설치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장례식장을 집단지화, 공원화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사시설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추석, 설날, 한식 등 특정일에 성묘객 집중으로 인한 교통피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 할 수 있다. 유족과 성묘객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 부정적인 지역이미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분리하거나 소규모로 분산하여 지역별로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묘지공원 내 입지선정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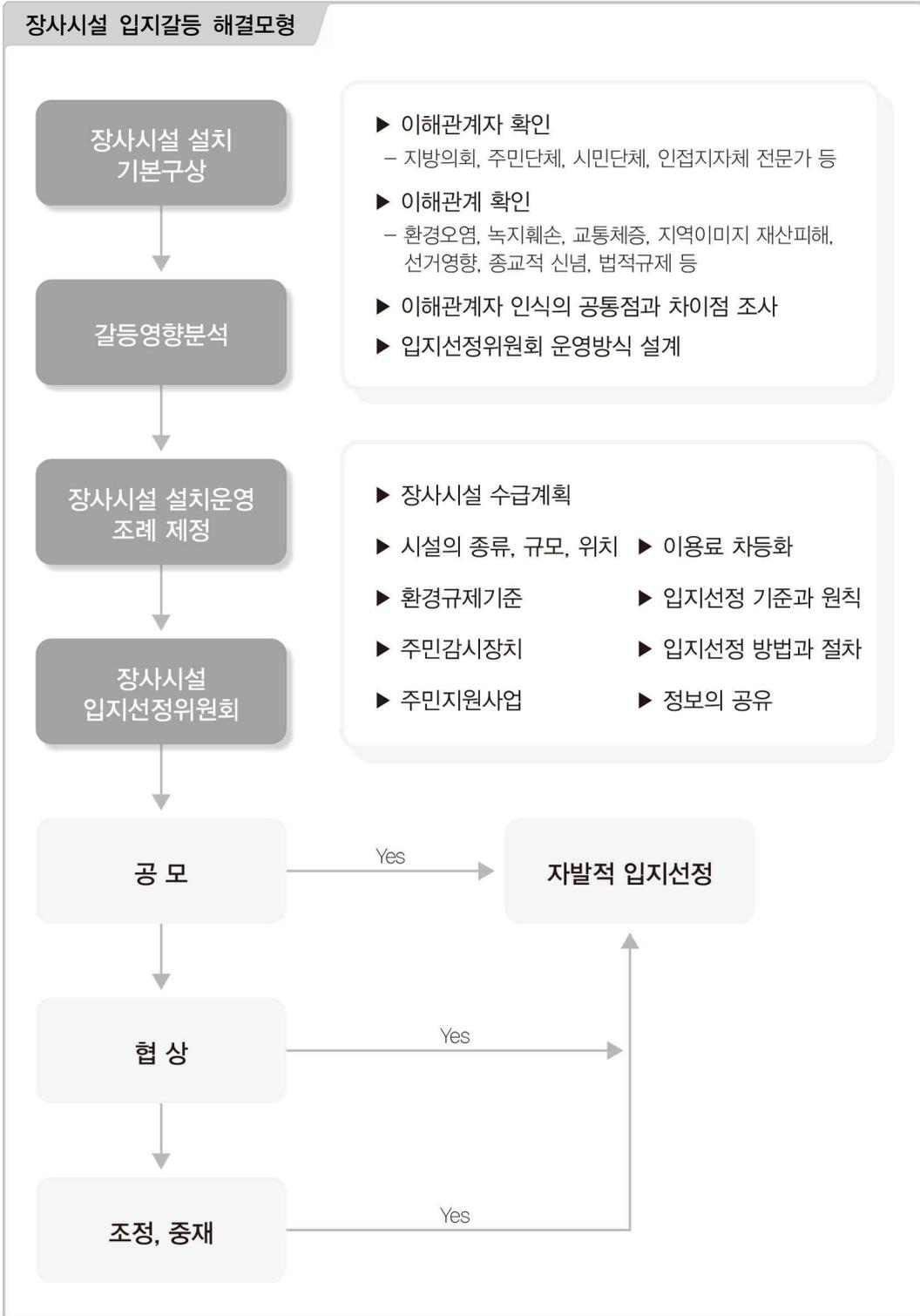
-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에 성공한 자치단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원묘지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장례식장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다.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장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지만 반대의 정도는 이미 장사시설이 입지하여 운영 중인 지역보다 신설지역의 반대가 더 크기 때문에 운영 중인 공원묘지 안의 장사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장사시설의 입지 대상지역에 현재 운영 중인 공원묘지와 화장시설도 포함하여 낡은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고, 아름다운 설계와 조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방하며, 개발이익의 손실 보상방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타당성과 형평성,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도심지 내 입지선정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는 시청 옆의 종합 운동장 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입지갈등을 해결했다. 장사시설의 입지를 시청 옆에 선정하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운영 과정의 환경피해와 교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인한 재산피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으며, 행정 경계지역의 입지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마. 광역시설 설치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수요에 맞게 장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화장 시설의 경우는 3~4개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각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시·도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29	02-2133-0720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051-888-3275	051-888-3269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053-803-3959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3	032-440-8655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	062-613-3093	062-613-3079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042-270-4747	042-270-4719
울산광역시	어르신복지과	052-229-4822	052-229-48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044-300-3817	044-300-3829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4328	031-8008-3378
	북부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63	031-8030-3159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033-249-2676	033-249-4078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043-220-3103	043-220-3069
충청남도	노인복지과	041-635-4217	041-635-3059
전라북도	노인복지과	063-280-2513	063-280-2519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061-286-5843	061-286-4777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054-880-3747	054-880-3759
경상남도	노인복지과	055-211-4873	055-211-486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064-710-6621	064-710-2829